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Ⅰ)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국 회 운 영 위 원 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개 관 ····· 3

1. 예산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5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

Ⅱ. 사업별 검토 ····· 7

【일반회계】

<세 출> ····· 7

1.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면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필요 ····· 7

❖ 대통령경호처

Ⅰ. 개 관 ····· 10

1. 예산안 개요 ····· 1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

Ⅱ. 사업별 검토 ····· 14

【총 괄】

1. 청와대 복귀 관련: 대통령실 소재지에 연계되는 사업은 청와대 복귀 후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4

【일반회계】

<세 출> ····· 17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공무직 인원 충원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7

❖ 국 회

Ⅰ. 개 관 ····· 20

1. 예산안 개요 ····· 2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3

Ⅱ. 사업별 검토 ····· 24

【일반회계】

<세 출> ····· 24

1.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사업: 연간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24
2.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개최 사업(신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각국 의회도서관과 실질적 협력 강화 필요 ····· 27
3.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 정책연구예산의 이월 규모 최소화 필요 ····· 30
4.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 보고서 실적관리 강화 필요 ····· 32

❖ 국가인권위원회

Ⅰ. 개 관 ····· 35

1. 예산안 개요 ····· 3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7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7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8

Ⅱ. 사업별 검토 ····· 39

【일반회계】

<세 출> ····· 39

1.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39

2.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45
3.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사업: 정기적 분담금 확보를 통한 운영비 전액 부담 구조 개선 및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 4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법 무 부

Ⅰ. 개 관 ····· 55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5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8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59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0

Ⅱ. 사업별 검토 ····· 61

【일반회계】

<세 입> ····· 61

1. 면허료 및 수수료: 교육 참여자 증가 추이를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 61

<세 출> ····· 65

2.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미지급액 발생의 최소화 필요 ····· 65
3.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69
4.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사업(신규): 기존 도입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구입 수량 조정 검토 필요 ····· 72

5.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75
6. 출입국감시정 운영사업: 감시정 건조 일정을 고려한 연간 예산 편성 비율 조정 검토 필요 ····· 7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 입> ····· 82
7.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 전입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에 대한 정산방안 마련 필요 ····· 82

<지 출> ····· 84
8. 민간경호 지원 사업: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84

❖ 법 제 처

Ⅰ. 개 관 ····· 87
1. 예산안 개요 ····· 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88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89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89

Ⅱ. 사업별 검토 ····· 90

【일반회계】

<세 출> ····· 90

1. 법제교육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셔틀버스 임차료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90
2.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클라우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93

❖ 감 사 원

Ⅰ. 개 관 ····· 96

1. 예산안 개요 ····· 9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98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99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9

Ⅱ. 사업별 검토 ····· 100

【일반회계】

<세 입> ····· 100

1.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3~5년간 평균 수납액을 고려한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100

<세 출> ····· 103

2.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다년도 계약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한 관리용역비 절감 필요 ····· 103
3.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산장비(GPU 서버) 구입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필요 ····· 105
4. 감사활동경비 사업: 일반연구용역 추진 시 경쟁입찰 확대 필요 ····· 1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개 관 ····· 111

1. 예산안 개요 ····· 11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1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13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3

Ⅱ. 사업별 검토 ····· 114

【일반회계】

<세 출> ····· 114

1.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신규): 법무부 등 형사사법 처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 필요 ····· 114
2.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사업(신규): 신고시스템 운영 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해 철저한 관리 필요 ····· 117

❖ 헌법재판소

Ⅰ. 개 관 ····· 119

1. 예산안 개요 ····· 11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2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2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2

Ⅱ. 사업별 검토 ····· 123

【일반회계】

<세 출> ····· 123

1.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신규): 기관 특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필요 ····· 123

2.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사업(신규): 조사결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세부이용계획 수립 필요 ····· 126

❖ 대 법 원

Ⅰ. 개 관 ····· 12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2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31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33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4

Ⅱ. 사업별 검토 ····· 135

【일반회계】

<세 출> ····· 135

1. 정책연구원 인건비 사업(신규): 정책연구원의 인력운영에 유의할 필요 ····· 135

2.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필요 ····· 138

【등기특별회계】

<세 출> ····· 141

3.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기존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유지보수비 조정 검토 필요 ····· 14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 입> ····· 145

4. 민간출연금: 법원보관금 출연금의 면밀한 산정 필요 ····· 145

<지 출> ····· 148

5.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미지급 이월금 일시 지급 등 급격한 지출 증가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148

정 무 위 원 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개 관 ····· 153

1. 예산안 개요 ····· 15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56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58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9

Ⅱ. 사업별 검토 ····· 160

【총 괄】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PBS 폐지 및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60

【일반회계】

<세 출> ····· 168

2.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신규): 구체적 사업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168
3.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 172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사례금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 177

5.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 세부사업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181
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184
7.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신규): 연구센터 운영 과정에서 기관 간 연구 사업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189
8. K-토론나라 운영 사업(신규):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타 세부사업으로 편성 검토 필요 ····· 193

❖ 국가보훈부

Ⅰ. 개 관 ····· 196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9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99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01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02

Ⅱ. 사업별 검토 ····· 203

【일반회계】

<세 출> ····· 203

1. 생계지원금 사업: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된 예산액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203
2.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전공의 공백에 따른 검진 실적 부진 해소 필요 ····· 206
3. 보훈단체복지지원 사업(신규):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210

4.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미지급 문제 해결 필요 ····· 212
5.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 216
6.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공사비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219
7.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 223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 비목 간 예산액 조정을 통한 연례적 세목조정 방지 필요 ····· 226
9.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 실적 저조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28
10.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 231
11.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235
12. 송무지원 사업: 패소사건 최소화 노력 필요 ····· 240
13. 청년인턴 운영 사업: 청년인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43

【보훈기금】

<지 출> ····· 245

14.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일반수용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245
15.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신규): 근거 규정 마련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 248

❖ 공정거래위원회

Ⅰ. 개 관 ····· 251

1. 예산안 개요 ····· 25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53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54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55

Ⅱ. 사업별 검토 ····· 256

【일반회계】

<세 출> ····· 256

1.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신규): 법률 시행일 도래 이전 전자심의시스템의 적기 구축 필요 ····· 256
2.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신규): 디지털포렌식 인원 증원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및 감액 조정 필요 ····· 261
3. 포렌식 교육 사업: 교육 후 부적정한 인력배치 및 교육 수요부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64

❖ 금융위원회

Ⅰ. 개 관 ····· 26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6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71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73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4

Ⅱ. 사업별 검토 ····· 276

【일반회계】

<세 입> ····· 276

1.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추가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276

<세 출> ····· 280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원활한 전환 유도 등 ····· 280
3. 청년미래적금 사업(신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287
4.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신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약화 및 정부재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296
5.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펀드 결성 투자 촉진 필요 ····· 304
6. 국민성장펀드 사업(신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 ····· 310
7.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22

【신용보증기금】

<수 입> ····· 325

8.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허용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 325

<지 출> ····· 331

9. 업무용 건물 사업: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및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 33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 입> ····· 336

10. 재고자산매각대: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매각 병행을 통한 조기상환 검토 필요 등 ····· 336

❖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관 ····· 343

1. 예산안 개요 ····· 34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4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46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6

Ⅱ. 사업별 검토 ····· 347

【총 괄】

1.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이용률 제고 노력 필요 등 ····· 347

【일반회계】

<세 출> ····· 351

2.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민원 전화번호 110 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콜센터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 351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35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개 관 ····· 359

1. 예산안 개요 ····· 35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6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6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63

Ⅱ. 사업별 검토 ····· 364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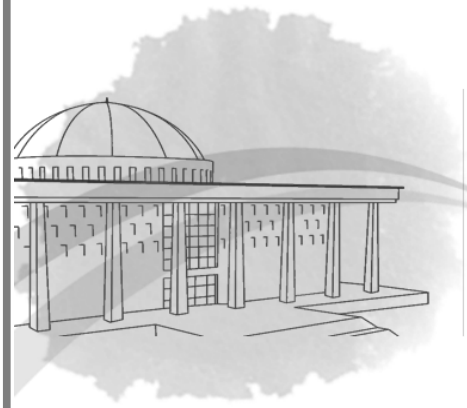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세 입> ····· 364

1.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과징금 부과처분을 고려한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364

<세 출> ····· 369

2.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 사업: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활성화 및 협업체계 마련 필요 ····· 369
3.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증액에 상응하는 추가적 과제내용 구체화 및 과제관리 철저 필요 ····· 377
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신규): 개인정보보호 기술표준의 조속한 국제 인증 확보 노력 필요 ····· 38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은 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7.7%) 감소함.[1)]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97	2.74	△0.23	△7.7
총수입	2.97	2.74	△0.23	△7.7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은 1,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9.9%) 증가함.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956	997	1,051	95	9.9
총지출	956	997	1,051	95	9.9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7.7%) 감소함.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97	2.74	△0.23	△7.7
총수입	2.97	2.74	△0.23	△7.7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9.9%) 증가함.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56	997	1,051	95	9.9
합 계	956	997	1,051	95	9.9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2]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업무지원비’ 사업 1개임.[3]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업무지원비	9,177	16,560	7,383	80.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5억원(9.9%) 증가한 1,051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억원(3.5%) 증가한 448억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억원(2.6%) 증가한 223억원,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74억원(24.3%) 증가한 38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업무지원비’ 사업(전년 대비 73억 8,300만원 증액, 80.5%)이 있음.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현재 청와대 이전을 위한 시설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6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은 전체적인 정비작업이 완료된 후의 구체적인 시설관리 소요 등을 토대로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면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100만원(△27.3%) 감액된 4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시설관리 및 개선	6,594	6,594	4,793	△1,801	△27.3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운영비 : 청사 시설·기계·전기·통신설비 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2,211 백만원
- 세부내역(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060), 관리용역비(151)

○ 건설비 : 노후 설비 교체 등 2,582 백만원
- 세부내역(백만원) : **설계비(65)**, **공사비(2,517)**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 일반회계-시설관리 및 개선(1131-303)(관리비서관실)

나. 검토의견

2025년 10월 현재 청와대 이전을 위한 시설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6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은 전체적인 정비작업이 완료된 후의 구체적인 시설관리 소요 등을 토대로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시설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2년 47억 9,300만원에서 매년 증액되어 2025년 65억 9,400만원에 이르렀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7.3% 감액되어 2022년과 동일한 4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2026년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예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2022		2023		2024		2025.7.				2026(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본예산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시설관리 및 개선	4,793	4,595	5,171	5,014	6,502	5,943	6,594	16,158	22,752	415	4,793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1,000	1,000	-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060	2,085	2,060	2,088	2,543	2,469	2,601	-	2,601	143	2,060
관리용역비 (210-15)	151	21	151	93	151	123	151	-	151	4	15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88	88	40	-
실시설계비 (420-02)	65	16	40	133	106	106	70	351	421	228	65
공사비 (420-03)	2,517	2,472	2,890	2,686	3,671	3,231	3,760	13,516	17,276	-	2,517
감리비 (420-04)	-	-	30	13	31	14	12	188	200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25	25	-	-
자산취득비 (430-01)	-	-	-	-	-	-	-	990	990	-	-

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 본예산과 예산현액이 다른 경우는 없으나, 2022년·2023년 시설장비유지비 처럼 세부사업 내 비목 변경을 통해 집행된 경우가 있음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는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설관리 예산을 종래 청와대 시절인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임.

정부는 2025년 6월 이 사업에 예비비 161억 5,800만원을 배정하여 청와대 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청와대 복귀 일정이나 시설활용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될 수도 있어 보임.

일례로, 2026년도 예산안에 설계비(420-02) 6,500만원과 공사비(420-03) 25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면서도 감리비(420-04)는 계상하지 않았는 바, 향후 감리가 필요한 보수공사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처가 곤란할 수 있음.[5)6)]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시설 정비작업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비작업이 완료된 후의 구체적인 시설관리 소요를 파악하고, 시설관리 예산이 이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5)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p.282	26. 공사비(420-03목) □ 공사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
p.283~	27.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감리, 시설부대비 요율은 본 지침의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단,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의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공사감리는 비상주 감리를 의미함)

6)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 예산안에는 매년 감리비(420-04)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2024년에는 실제 집행되었었음.

대통령경호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은 5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1.1%) 증가함.[1)]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47	5.47	5.53	0.06	1.1
총수입	5.47	5.47	5.53	0.06	1.1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은 1,319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800만원(△5.1%) 감소함.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390.48	1,390.48	1,319.2	△71.28	△5.1
총지출	1,390.48	1,390.48	1,319.2	△71.28	△5.1

문의 : 예산결산조사관 고정철 gojc31@assembly.go.kr (02-6788-571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 예산안은 5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1.1%) 증가함.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47	5.47	5.53	0.06	1.1
합 계	5.47	5.47	5.53	0.06	1.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1,319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800만원(△5.1%) 감소함.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390.48	1,390.48	1,319.2	△71.28	△5.1
합 계	1,390.48	1,390.48	1,319.2	△71.28	△5.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경호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12억 8,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신규사업으로는 2026년 9월 서울에서 한국 및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활동 지원을 위해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사업에 12억 8,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1,288
총지출		1,288

대통령경호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요 증액사업[3)]이 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억원(△5.1%) 감액된 1,319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75억원(11.8%) 증액된 반면,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는 각각 전년 대비 3.6억원(△2.0%), 142억원(△24.8%) 감액되었음.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재지의 영향을 받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통령경호처는 제반 업무에 필요한 공무직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청와대 복귀 관련: 대통령실 소재지에 연계되는 사업은 청와대 복귀 후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6월 10일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97억 5,9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 개방으로 보안이 취약해진 청와대 경호경비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집행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경호처의 2026년 건설비(420목) 예산과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은 각각 46억 7,000만원과 121억 9,400만원으로 최근 예산집행실적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2년~2026년 대통령경호처 건설비(420목)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말)		2026년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안)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0	0	0	0	650	333	836	59	0
경호장비시설개선	4,892	4,762	14,559	8,373	16,185	11,901	10,294	1,802	4,083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96	86	508	267	641	492	463	401	460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 인프라구축	0	0	0	0	0	0	1,337	0	0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0	0	0	0	0	0	0	0	127
계	4,988	4,848	15,067	8,640	17,476	12,726	12,930	2,262	4,67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2년~2026년 대통령경호처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말)		2026년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0	198	581	521	359	358	572	107	618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2,933	2,911	2,364	2,324	3,196	3,068	5,191	4,497	3,251
경호장비시설개선	3,034	2,869	9,654	8,348	7,848	7,639	5,311	2,302	4,336
경호업무정보화	2,261	2,241	1,794	1,756	2,585	2,408	1,273	1,113	3,350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381	377	251	207	451	450	342	63	447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 인프라구축	0	0	0	0	0	0	5,911	1,757	0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0	0	0	0	0	0	0	0	192
계	8,809	8,596	14,644	13,156	14,439	13,923	18,600	9,839	12,194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재지의 영향을 받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청와대 복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025년에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아 집행중인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 인프라 구축' 사업을 2026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음.

다만 2026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소재할 때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일부 발견됨.

예를 들어 2026년 토지대여료 세입예산안으로 2025년과 동일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종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후 청와대 인근 부지를 종로구청에 대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경우 대통령경호처에서 해당 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종래와 같은 대여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토지대여료(51-511목) 2022~2025년 결산내역 및 2026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률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4	14	14	15	15	107.1	100	0	0
2023	0	0	0	396	396	순증	순증	0	0
2024	456	456	456	422	422	92.5	100	0	0
2025.7.	456	456	456	442	442	96.9	100	0	0
2026(안)	456	456	-	-	-	-	-	-	-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통해 조성된 용산 소재 (구)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임차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24년 13억 1,400만원, 2025년 1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도 1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청와대에 공식 복귀하더라도 장비 및 시설의 이전 및 보관 문제 등으로 2026년에도 일정 기간 사용이 필요하여 2025년과 유사한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국직 용산병영 BTL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임대료	운영비	임대료	운영비	임대료	운영비	임대료	운영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국직 용산병영 BTL 사업)	0	0	1,116	198	1,165	211	1,166	215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영향을 받는 예산사업의 경우 청와대 복귀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겠으나,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 해당 사업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종래처럼 집행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일반회계】

<세 출>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공무직 인원 충원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2.6%) 증액된 6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582	6,582	6,754	172	2.6
인건비	3,879	3,879	3,978	99	2.6
민간이전	699	699	774	75	10.7

내역사업인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인 상용임금과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00만원(2.6%) 증액된 39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이전’**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부담금 등을 위한 고용부담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500만원(10.7%) 증액된 7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일반회계-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기획관리실)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는 제반 업무에 필요한 공무직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은 환경미화, 조리, 시설물관리, 운전, 조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호처 공무직 인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최근 공무직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되지 않으면서 매년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상용임금 집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0.5%에 그쳤으며, 2025년 9월말 기준 집행률이 51.2%로서 단순 추계할 경우 2025년 연말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음.

[대통령경호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상용임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2	3,248	3,140	94	96.7
2023	3,612	3,226	387	89.3
2024	3,712	2,989	681	80.5
2025.9.	3,829	1,960	-	51.2

자료: 대통령경호처

고용부담금 집행률 역시 2023년 82.3%, 2024년 75.1%에 불과하며, 2025년에도 최종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5]이 있어 보임.

[대통령경호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고용부담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2	623	551	72	88.4
2023	705	580	125	82.3
2024	727	546	181	75.1
2025.9.	699	206	-	29.5

자료: 대통령경호처

5) 2025년 9월말 상용임금 집행액 19억 6,000만원을 기초로 단순 추계시 연말 집행액은 26억 1,333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액(29억 8,900만원)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됨. 고용부담금 실적은 상용임금에 비례하므로 2025년 고용부담금 집행액도 전년도 집행액(5억 4,600만원)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2025년 예산(6억 9,9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타 기관에 비해 공무직 인원의 근무강도가 높은 편이고, 면접, 신원조회 등 채용절차가 까다로워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각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 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46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00만원(3.1%) 증가함.[1)]

[2026년도 국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5.18	46.57	1.39	3.1
총수입	45.18	46.57	1.39	3.1

2026년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8,00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8,100만원 (3.2%) 증가함.

[2026년도 국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761.35	8,009.16	247.81	3.2
총지출	7,761.35	8,009.16	247.81	3.2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6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00만원(3.1%) 증가함.

[2026년도 국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5.18	46.57	1.39	3.1
총수입	45.18	46.57	1.39	3.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8,00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8,100만원(3.2%) 증가함.

[2026년도 국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761.35	8,009.16	247.81	3.2
총지출	7,761.35	8,009.16	247.81	3.2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2]이 편성되지 않았음.

한편,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정감사및조사’ 사업, ‘특별위운영지원’ 사업, ‘열린국회행사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임.[3]

[2026년도 국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정감사및조사	1,065	1,493	428	40.2
2	특별위운영지원	1,133	4,745	3,612	318.8
3	열린국회행사지원	1,461	2,254	793	54.3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247억 8,100만원(3.2%) 증가한 8,009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9억 3,400만원(3.5%) 증가한 4,364억 6,000만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억 9,200만원(1.9%) 증가한 366억 7,600만원,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91억 5,500만원(2.9%) 증가한 3,27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특별위운영지원' 사업(전년 대비 36억 1,200만원 증액, 318.8%), '국정감사및조사' 사업(전년 대비 4억 2,800만원 증액, 40.2%) 등이 있음.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사무처는 어린이국회 개최 횟수가 연 2회로 확대될 경우 이 사실을 교육청과 참여 학교에 조속히 홍보하는 한편, 어린이국회 활동이 초등학교 학기 중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상하반기 행사 개최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국회도서관은 2026년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가 각국 의회도서관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사업: 연간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사업은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행사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법률제정과정 체험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교육하고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62.9%) 증액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열린국회행사지원	1,461	1,461	2,254	793	54.3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210	210	342	132	62.9

나. 검토의견

국회사무처는 어린이국회 개최 횟수가 연 2회로 확대될 경우 이 사실을 교육청과 참여 학교에 조속히 홍보하는 한편, 어린이국회 활동이 초등학교 학기 중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상하반기 행사 개최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일반회계-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문화소통기획관실・의정연수원)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여 법률안 및 질문서 작성활동을 한 후 국회에 모여 법률안 발표·토론, 대정부 질문, 투표 등 역할학습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 이후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일정 (2025년)]

구 분	내 용
1~2월	- 개최계획 수립 및 홍보(홍보용 리플렛·포스터·동영상 제작 및 게시)
3월	- 전국 초등학교 대상 참가신청 접수
4월~5월	- 참가학교별 어린이국회연구회 구성 및 활동 (법률안 및 질문서 제출)
6월	- 법률안(질문서) 사전심사 (우수법률안 및 질문서 선정) - 우수 안건 선정 통보(각 학교) 및 질문서에 대한 정부 답변 요청
7월	- 참석 학교·대표 어린이의원 명단 접수
	-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7.25.) · 상임위원회(오전) : 우수 법률안 제안설명, 토론 및 투표(본회의 부의 법률안 선정) · 본회의(오후) : 법률안 발표·표결, 대정부질문·답변 · 시상식 (우수법률안 및 질문서)

자료: 국회사무처

2025년 참여 학교 수는 154개교, 참여 인원은 1,10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31% 늘어나면서, 법률안·질문서 제출 및 어린이의원 참석자 수가 전년 대비 25%~88% 증가하였는바, 어린이국회 참여실적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2021~2025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실적]

회별 (연도)	연구회 구성학교 (개교)	연구회 회원 (인)	제출건수 (건)		개최일	어린이의원 참석자수 (인)		위원회 장소	본회의 장소
			법률안	질문서		상임위	본회의		
17회 (2021)	54	462	51	32	10. 7.	어린이 및 지도교사 총 196명 온라인 참석		온라인	
18회 (2022)	90	743	86	37	9. 23.	어린이 및 지도교사 등 - 온라인(234명) - 시상식(52명)		온라인	
19회 (2023)	99	826	91	46	7. 21.	56	62	의정관 강의실	예결위 회의장
20회 (2024)	117	845	103	61	7. 26.	59	60	의정관 강의실	예결위 회의장
21회 (2025)	154	1,104	140	76	7. 25.	114	113	도서관, 의정관	예결위 회의장

자료: 국회사무처

한편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62.9% 증액된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어린이국회 개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6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추진계획(안)]

개최계획 수립 및 행사홍보		→	대상학교 신청접수 및 선정	→	어린이연구회 활동	→	우수법률안 및 우수질문서 심사	→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상반기	1월~2월		3월		4월~5월		6월		7월
하반기	7월~8월		8월~9월		9월~10월		11월		12월

자료: 국회사무처

최근 어린이국회 참여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회 체험과 역할학습을 통해 민주사회 시민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하는 이 행사의 취지에 초등교육 현장에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연간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국회사무처는 어린이국회 개최 횟수가 연 2회로 확대될 경우 이 사실을 교육청과 참여학교에 조속히 홍보하는 한편, 어린이국회 활동이 초등학교 학기 중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상하반기 행사 개최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개최 사업(신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각국 의회도서관과 실질적 협력 강화 필요

가. 개 요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개최’ 사업은 2026년 세계의회도서관총회 의회분과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6년도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개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도서관운영관리	11,764	11,764	11,969	205	1.7
도서관기획및운영	1,061	1,061	1,230	169	15.9
기타 도서관 운영경비 등	572	572	761	189	33.0
세계의회도서관총회 (IFLA 의회분과회의) 개최	-	-	180	180	순증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개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10-01): (‘26)30백만원(신규)
- 주제발표, 토론자 등 각종 사례비: 10백만원
- 행사 준비위원회 운영 등 기타 부대경비: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6)150백만원(신규)
- 초청장, 홍보리플렛 등 제작비: 20백만원
-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 방송중계시설비: 30백만원
- 통역 부스 및 차량 등 임차료: 40백만원
- 개회식 리셉션, 외빈환영 만찬 등: 50백만원
- 행사 운영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 10백만원

자료: 국회도서관

5) 일반회계-도서관운영관리(3031-300)(국회도서관)

나. 검토의견

국회도서관은 2026년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가 각국 의회도서관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회도서관이 2026년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는 매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개최국의 의회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동 분과회의에 매년 참석[6]하고 있는데, 2026년 WLIC 개최지가 부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개최국 의회도서관으로서 '제40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임.

□ **2026년 제90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기간/장소: 2026. 8. 10 ~ 8. 13 (4일) / 부산 벡스코(BEXCO)
- 규모: 세계 150개국, 약 5,000명 참석(예상)
- 주요내용: IFLA 분과회의, 학술발표, 전시회 등
  ☞ IFLA 의회분과는 IFLA 분과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최시 매년 회의 개최 분과로 선정됨
  ☞ 한국도서관협회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직위원회 구성 예정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 Institutions: IFLA)**
- 설립 : 192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 목적 : 전 세계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 회원 : 전 세계 150여 개국, 1,500여개 기관 및 개인회원

※ 한국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공공도서관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가입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006년 이후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의회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6) 최근 세계의회도서관총회(IFLA 의회분과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회도서관은 2021년~2025년 회의에 모두 참가하였으며, 2023년 회의에서는 발표를 한 바 있음.

연도	개최지	주제
2021	온라인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향후 10년을 위한 아젠다
2022	아일랜드	의회정보 - 도서관 및 조사서비스가 의회, 의원, 시민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가?
2023	네덜란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를 위하여
2024	카자흐스탄	연결, 협력, 창조: 직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 협회 및 파트너십 발전
2025	카자흐스탄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에서의 협력과 혁신: 연결된 미래를 위한 역량강화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각국 의회도서관과 구체적·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회도서관은 각국 의회도서관 등과 협정을 맺고 상대국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우리 자료를 제공하는 국제자료교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자료교환 실적이 매년 감소[7]하고 있는바, 이 행사를 각국 의회도서관과 자료교환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7) 최근 국제자료교환 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외국으로부터 받은 책수	8,776	7,765	7,707	6,686	5,900	5,529
외국으로 보낸 책수	11,809	11,420	13,807	12,087	9,882	5,051

주) 국회도서관은 2025년 9월 기준 47개국 182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자료교환을 하고 있음
자료: 국회도서관

3.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 정책연구예산의 이월 규모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정책처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4.0%) 증액된 3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예산정책처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산정책처운영관리	3,287	3,287	3,419	132	4.0

나. 검토의견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망·경제전망 모형 고도화 등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연초에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연구예산의 과다한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비 예산은 2023년 5억 7,800만원, 2024년 6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이 3억 8,000만원으로 감액되었었는데, 2026년 편성 예산 5억 8,000만원은 예년 집행액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 추계모형, 사회보험 추계모형 등 재정전망 모형과 장래가구·내외국인인구 추계모형이나 분배국민소득 전망모형 등 경제전망 모형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책연구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42개의 재정전망 모형과 22개의 경제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모형에 대해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분석을 통해 체계적 오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고,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복잡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임.

8) 일반회계-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모형 및 경제전망 모형 현황]

재정전망 모형		경제전망 모형	
분 류	현황(개)	분 류	현황(개)
공적 연금 수입·지출 전망 모형	4	거시 경제(환율, 금리, 잠재GDP 성장률 등) 전망 모형	10
사회보험 수입·지출 전망 모형	4	산업별 전망 모형	5
의무지출·재량지출 및 국가채무 전망모형	19	인구추계 및 전망 모형	7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추계·전망모형	15	-	-
합 계	42	합 계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 6억 6,200만원 중 36.7%인 2억 4,300만원을 이월하는 등 매년 정책연구비 예산 이월이 반복되어 왔는데, 과다한 예산 이월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2026년에는 고도화 대상 모형 등 정책연구계획을 연초에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9)]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비(260-02목)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이월액 (B)	비율 (B/A)	
2022	732	701	257	-	957	838	112	15.3	8
2023	707	707	112	-	819	578	187	26.4	53
2024	662	662	187	-	849	605	243	36.7	1
2025.10.	380	380	243	7	630	497	-	-	-

9)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시로 발생하는 대내외 재정·경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정책연구비를 하반기에 집행함에 따라 예산이 일부 이월되는 측면도 있으나,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연말연초에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를 통해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연내 집행률이 9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함.

4.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 보고서 실적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은 입법조사처 기관 운영과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600만원(10.1%) 증액된 2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입법조사처운영관리	2,441	2,441	2,687	246	10.1

[입법조사처운영관리 사업 예산안의 세부내역]

○ 조사분석 및 기관운영 지원 RA : 386백만원
○ 총무, 기획 업무 등 기관운영 : 651백만원
○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 808백만원
○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 576백만원
○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 : 266백만원

나. 검토의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신 분석자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고서 실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예산 5억 7,600만원,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예산 2억 6,6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보고서 발간이나 세미나 개최 또는 연구용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10) 일반회계-입법조사처운영관리(5031-300)(국회입법조사처)

이 중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보고서를 총 280건 발간할 계획[11]이었으나 실제로는 243건(86.8%)에 그치는 등 최근 매년 보고서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5년의 경우 9월말 기준 보고서 실적은 계획 대비 58.5%인 166건임.

[2021~2025년도 입법조사처 보고서 계획 대비 발간실적]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계 획	268	273	261	280	284
실 적	227 (84.7%)	215 (78.8%)	251 (96.2%)	243 (86.8%)	166 (58.5%)

주) 학술지, 국회입법조사처보, 연차보고서를 제외한 보고서 발간실적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한편 보고서 발간시점을 살펴보면, 2024년 연간 실적 243건의 21.4%인 52건이 국회 정기회가 종료된 12월에 집중 발간되는 등 매년 12월 발간 보고서가 전체의 20% 내외에 이르고 있고, 심층적인 분석내용이 담긴 'NARS 입법·정책'이나 'NARS 현안분석'의 경우 12월 발간 비중이 각각 51.1%, 30.6% (2021~2024년 평균)에 이르고 있음.

[2021~2024년도 입법조사처 보고서 분기별 및 12월 발간실적]

(단위: 건)

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	계
2021	29	58	41	99	47 (20.7%)	227
2022	31	50	44	90	53 (24.7%)	215
2023	47	55	64	85	45 (17.9%)	251
2024	66	49	39	89	52 (21.4%)	243
계	171	212	188	360	197 (21.2%)	931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11)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12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보고서 발간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를 기초로 보고서 종류별 발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고서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음.

[2021~2024년도 NARS 입법·정책 및 NARS 현안분석 발간실적]

(단위: 건)

년도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연간 발간	12월 발간(비율)	연간 발간	12월 발간(비율)
2021	27	11 (40.7%)	53	15 (28.3%)
2022	24	12 (50.0%)	42	16 (38.1%)
2023	23	14 (60.9%)	32	6 (18.8%)
2024	14	8 (57.1%)	33	12 (36.3%)
계	88	45 (51.1%)	160	49 (30.6%)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그러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12월에 보고서가 집중 발간될 경우에는 보고서 내용이 법률안이나 예결산 심사 또는 국정감사 등에 적시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 대비 보고서 실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최신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고서 실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111.1%) 증가함.[1)]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0.27	0.27	0.57	0.3	111.1
총수입	0.27	0.27	0.57	0.3	111.1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3.3%) 증가함.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24	424	438	14	3.3
총지출	424	424	438	14	3.3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111.1%) 증가함.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0.27	0.27	0.57	0.3	111.1
합 계	0.27	0.27	0.57	0.3	111.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3.3%) 증가함.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24	424	438	14	3.3
합 계	424	424	438	14	3.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은 없으며,[2]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인권 문화 확산’ 사업 1개임.[3]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지역인권문화 확산	234	583	349	149.1

주) 2026년 예산안 5억 8,300만원 중 4억 500만원은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1032-301)에서 이관한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예산임. 이관 소요를 제외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23.9%) 감소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예정으로 인권교육 수요 증가로 인한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및 운영 준비에 집중 투자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은 교육생의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나, 교육원의 위치 및 대중교통 노선, 대상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은 6개 지역에 설치된 인권이음터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은 2026년 상반기 개원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2,200만원(123.9%) 증액된 1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2,667	2,667	3,366	699	26.2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744	744	1,666	922	123.9

국가인권교육원은 경기도 용인시 서울세관(舊통관센터)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총사업비 138억 9,500만원, 연면적 4,877㎡ 규모로 건립 중으로, 2025년 12월 건축물 준공 후 2026년 4월 개원할 예정임.[5)]

이 사업은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사무실, 강의실 등 각 실별 설비공사 및 기자재 등 물품 구매, 교육원 개원식 및 홍보, 셔틀버스 구입 및 운전원 채용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것임.

---

4) 일반회계-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정책교육국)

5) 인권교육원 건축공사 추진 현황: 사업부지 확보(2021년) → 기본설계(2021년) → 실시설계(2022년) → 건축공사 착공(2024년 3월) → 건축물 준공(2025년 12월) → 교육원 개원(2026년 4월 예정)

국가인권교육원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인권교육가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임.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상용임금(110-03) : 32,344천원 - **셔틀버스 운전원(공무직): 32,344,000원×1명 = 32,34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6,900천원 - 내외부 안내판 제작: 31,900,000원×1식 = 31,900천원 - 인권교육원 홍보콘텐츠 제작: 25,000,000원×1식 = 2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28천원 - **셔틀버스 운전원(공무직): 428,000원×1명 = 42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3,670천원 - 이전비: 13,670,000원×1식 = 13,670천원 - 개원식: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 방송장비구축: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361천원 - **셔틀버스 운전원(공무직): 7,361,000원×1명 = 7,361천원** ○ 공사비(420-03) : 90,177천원 - 전기・통신・방송 설비공사: 90,177,000원×1식 = 90,17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05,396천원 - 사무집기류: 484,020,000원×1식 = 484,020천원 - 정보통신류: 213,488,000원×1식 = 213,488천원 - 방송설비류: 408,625,000원×1식 = 408,625천원 - 주차관제설비: 49,262,790원×1식 = 49,263천원 - **셔틀버스: 250,000,000원×1대 = 250,000천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검토의견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은 교육생의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나, 교육원의 위치 및 대중교통 노선, 대상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원(이하 “교육원”) 교육생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셔틀버스 구입비 2억 5,000만원 및 버스운전원 1명의

9개월분 상용임금·고용부담금 4,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셔틀버스는 교육원을 기점으로 하여 수서역/동탄역에서 구성역, 기흥역을 거쳐 다시 교육원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1일 4회 왕복 운행하는 한편, 교육원에서 식당 또는 숙소로의 이동 시 활용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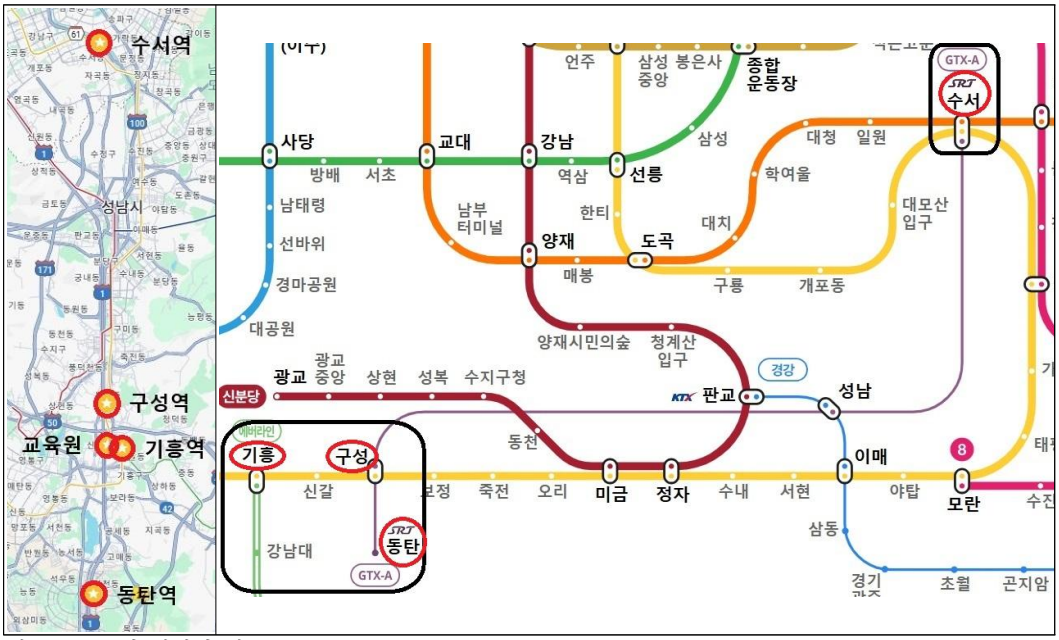
[셔틀버스 노선 및 운영 일정(안)]

① 교육원 ↔ SRT, GTX,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 / 1일 4회 왕복 - 노선 : 교육원 → 수서역/동탄역(SRT, GTX역) → 구성역(GTX, 전철역) → 기흥역(전철역, 시외버스터미널) → 교육원 ② 교육원 ↔ 식당, 숙소 / 1일 2회 왕복 - 교육원 내 숙소 및 식당이 부재하여 인근 식당 또는 숙소로의 이동 시 활용 검토 ※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 업체에 효과적인 노선 등 자문의뢰 후 확정 예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수서역 또는 동탄역을 이용하는 교육생의 경우 GTX 또는 지하철로 구성역 및 기흥역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어 굳이 기차역 외부의 셔틀버스를 찾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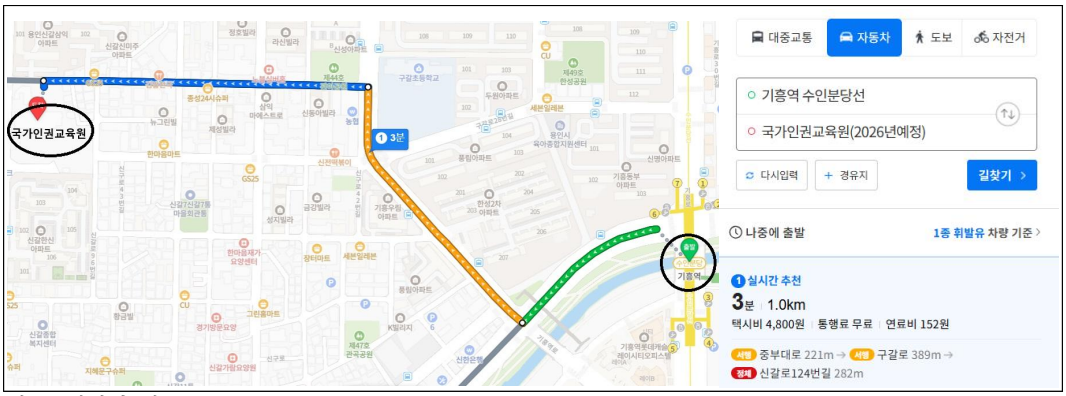
[셔틀버스 노선 위치 및 지하철 노선도]



자료: 구글 및 네이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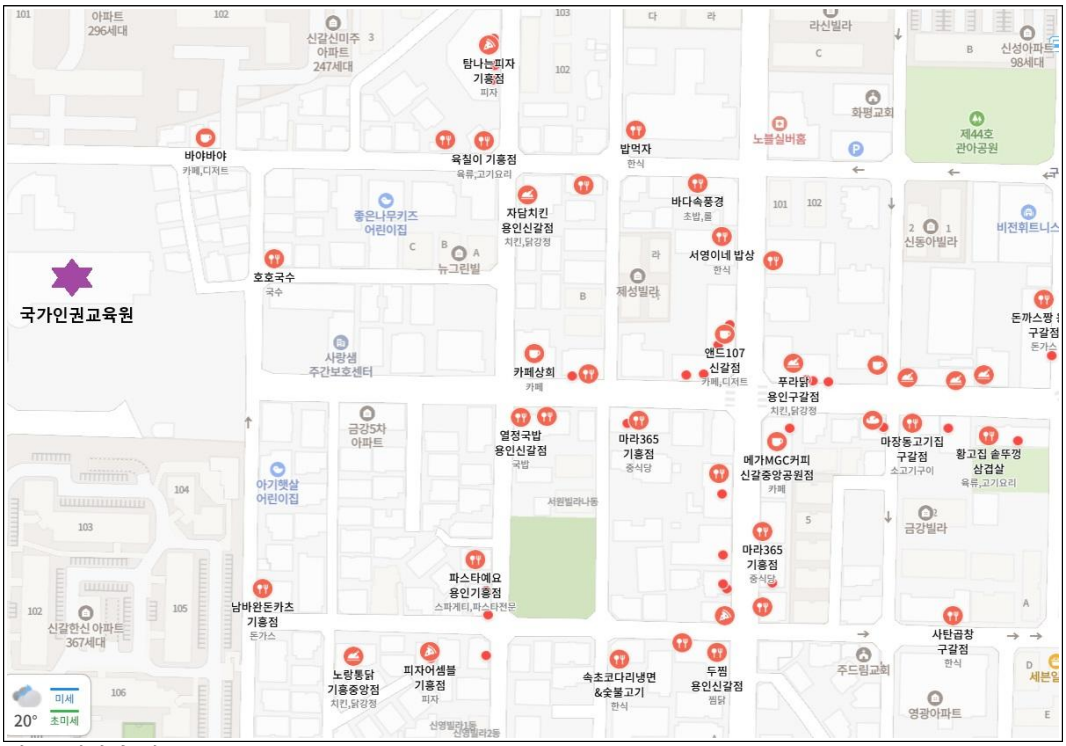
또한 기흥역에서 교육원까지의 거리는 1㎞로, 차량으로 약 3분, 성인 기준 도보로는 약 15분이 소요되어 충분히 택시 또는 도보 이동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원 인근에 식당이 다수 존재하여 인근 식당으로의 이동 시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한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음.

[기흥역에서 국가인권교육원까지의 거리 및 이동경로]



자료: 네이버 지도

[국가인권교육원 주변 식당 현황]



자료: 네이버 지도

무엇보다 교육원에서 진행하게 될 대상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인권교육가 등으로, 교육기간도 대부분 1~3일에 불과하여 교육원에서 숙소 또는 식당으로의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대상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권리더십 과정			
1	지방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지방의회 의원	1일
2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인권리더십 과정	지역인권기구 인권위원	2일
3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지자체 인권업무 관리자	2일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 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관리자	2일
5	경찰 간부 인권리더십 과정	경찰 간부급 이상	1일
6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인권리더십 과정	유·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등	3일
7	사회복지시설장 인권리더십 과정	사회복지시설장, 기관장	2일
8	스포츠인권전문가 인권리더십 과정	스포츠인권전문가	2일
9	학교 관리자(교육행정) 인권리더십 과정	유·초·중등학교 행정실장 등	3일
10	대학인권센터 인권리더십 과정	대학인권센터 관리자	1일
인권직무 과정			
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실무자 인권역량강화 과정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2일
12	지방자치단체 인권조사관 인권역량강화 과정	지자체(교육청 포함) 인권조사 업무 담당자	3일
13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 인권역량강화 과정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2일
14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관 대상 인권역량강화 과정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지역 경찰 수사관	2일
15	학교 교사 인권역량강화 과정	사회·노동인권 담당교사, 학교인권강사 등	3일
16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강화 과정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2일
17	대학인권센터 조사관학교 과정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2일
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 인권역량강화 과정	공공기관 임직원	2일
19	2차 피해 방지(수사관 및 상담관 대상) 인권역량강화 과정	군대 내 수사관, 상담관 등	2일
인권교육가 과정			
20	사회복지 인권교육가 인권역량강화 과정	관련기관 의무교육 강사 및 인권강사	2일
21	경찰 인권 심화과정	경찰청 소속 경찰, 경찰행정일반직	5일
22	경찰 내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경찰청 소속 경찰, 경찰행정일반직	10일
23	경찰 내부 인권강사 인권역량강화 과정	경찰청 내부 인권강사	5일
24	군인권교관 심화 과정	군인권교관	5일
25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과정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활동가	2일
26	인권교육활동가 인권역량강화 과정	인권교육단체 인권교육활동가	1~3일
인권감수성 과정			
27	국군장교 등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국군장교, 부사관, 군무원	2일
28	시민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일반시민	1일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교육원의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6)]

6) 우선 개원 초기에는 셔틀버스 운행 없이 교육원 운영을 시작해 보고, 실제 교육생의 이용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추후에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은 6개 지역 인권사무소가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과 협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상시적 인권 거점 공간인 인권이음터(舊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인권문화 확산	234	234	583	349	149.1
인권이음터 운영	-	-	405	405	순증

이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1-301)’ 내 ‘인권교육센터 운영’ 사업 중에서 지역 인권사무소 소관 예산을 이 세부사업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으로 이관하면서 사업 명칭을 ‘인권이음터 운영’으로 변경한 것임.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10-01): 6,182천원**
- **임차료(210-07): 383,577천원**
  - 부산인권사무소 53,773천원, 광주인권사무소 75,450천원, 대구인권사무소 89,404천원, 대전인권사무소 64,588천원, 강원인권사무소 45,448천원, 제주출장소 54,91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7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5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10,000천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7) 일반회계-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인권사무소)

나. 검토의견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은 6개 지역에 설치된 인권이음터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서울 및 6개 지역 인권사무소에 인권이음터(기존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정기 협의체 운영 및 대관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5년 8월말 기준 6개 지역 인권사무소의 인권이음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연간 임차료는 2억 1,700만원이고, 연간 관리비는 1억 5,400만원으로, 임차료 소요액만 총 3억 7,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2025년 지역 인권이음터 임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위치	사용면적 (수용인원)	연간 임차료			계약기간	설치 연도
			임차료	관리비	계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142.76㎡ (40명)	24.6	29.1	53.7	'25.3.1.~'27.2.28.	2015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빌딩 5층	215.86㎡ (50명)	38.1	35.8	73.9	'23.7.25.~'26.7.24.	2015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SHL동성빌딩 지하1층	178.20㎡ (50명)	47	42.4	89.4	'25.5.6.~'27.5.5.	2015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층	152.67㎡ (40명)	29.6	30.8	60.4	'24.1.1.~'25.12.31.	201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73(무실동) 대원신협 2층	138.55㎡ (30명)	33.5	8	41.5	'25.5.4.~'27.5.3.	201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마루 2층	203.67㎡ (50명)	44.2	8	52.2	'24.9.1.~'29.8.31.	2019
합계			217	154.1	371.1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최근 인권이음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월 평균 4회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2025년 8월말 연도별 인권이음터 운영 실적]

(단위: 횟수)

구분		운영 실적				
		교육과정	교육 외	대관	소계	월 평균
부산	2022년	26	22	9	57	4.8
	2023년	15	24	14	53	4.4
	2024년	9	20	29	58	4.8
	2025년 8월말	4	11	12	27	3.4
광주	2022년	9	19	2	30	2.5
	2023년	12	28	1	41	3.4
	2024년	7	36	6	49	4.1
	2025년 8월말	8	21	6	35	4.4
대구	2022년	30	30	29	89	7.4
	2023년	23	23	47	93	7.8
	2024년	14	15	36	65	5.4
	2025년 8월말	11	12	25	48	6
대전	2022년	38	3	3	44	3.7
	2023년	18	9	5	32	2.7
	2024년	11	32	12	55	4.6
	2025년 8월말	11	14	4	29	3.6
강원	2022년	7	4	3	14	1.2
	2023년	15	8	3	26	2.2
	2024년	11	8	1	20	1.7
	2025년 8월말	10	32	0	42	5.3
제주	2022년	11	21	17	49	4.1
	2023년	16	14	11	41	3.4
	2024년	7	10	28	45	3.8
	2025년 8월말	6	5	20	31	3.9
합계	2022년	121	99	63	283	3.9
	2023년	99	106	81	286	4.0
	2024년	59	121	112	292	4.1
	2025년 8월말	50	95	67	212	4.4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교육 활성화, 2026년 상반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조정 등으로 집합 교육과정은 감소하였으나, 토론회, 협의회 운영, 대관 등의 교육과정 외 운영 실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매월 적지 않은 인권이음터 임차료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인권이음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사업: 정기적 분담금 확보를 통한 운영비 전액 부담 구조 개선 및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6월 설립된 아셈(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교류협력	1,240	1,240	1,169	△71	△5.7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686	686	686	-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3억 400만원 ○ 운영비: 2억 2,500만원 ○ 사업비: 1억 5,700만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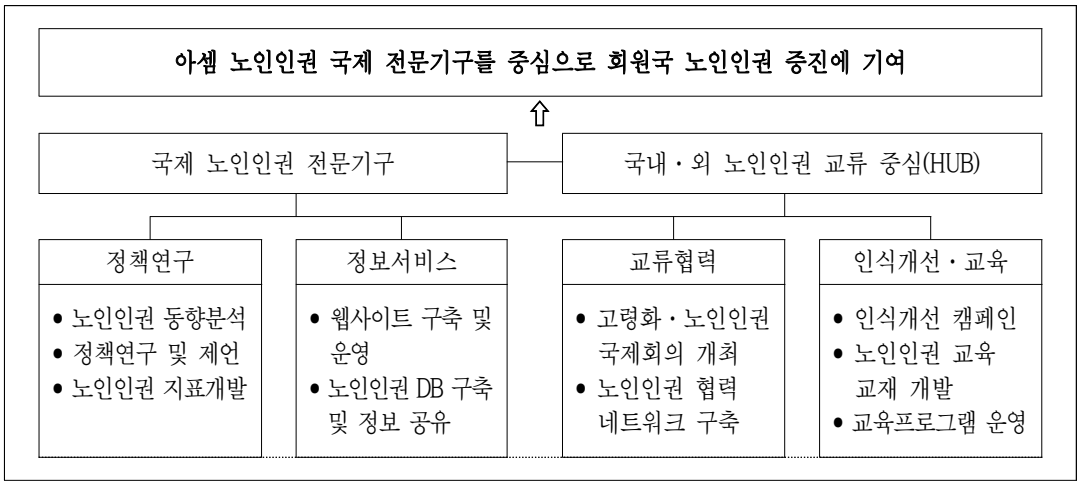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센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센터의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원국의 참여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셈 회원국의 정기적인 분담금 납부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이하 “센터”)는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제전문

8) 일반회계-국제교류협력(1036-300)(정책교육국)

기구로, 「제11차 아셈 정상회의(2016. 7.)」에서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의 대한민국 개소를 승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을 주도하여 2018년 6월 개소하였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주요사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는 센터 설립을 제안한 주도국으로서 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센터는 노인인권 및 노령화 관련 아셈 회원국의 현지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소·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2024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주요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명	연구 주제 등 2024년 사업 내용
정책연구	아셈 회원국 노인인권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연 1회)	- 자살과 노인인권
	노인인권 정책동향 보고서 발간(연 3회)	- 기후변화와 노인인권 - 한국의 노인인권기본법: 필요성과 시안(영문) - 이주와 노인인권
교류협력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 개최(연 1회)	- (주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 - (개최일) 2024.7.16. - (개최지) 서울(로얄호텔)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진행	- 1회 대담 및 3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 아셈 회원국 내 현지 전문가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구분	사업명	연구 주제 등 2024년 사업 내용
인식개선·교육	아셈 회원국 노인당사자 인권교육 교재 개발	-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노인(노인인권 인식개선 안내서) 발간
정보 서비스	주요 연구동향·통계 및 뉴스 등 최신 동향 공유	- 국내·외 주요 연구동향·통계 및 뉴스 등 최신 동향 공유 -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홍보 지속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센터 설립 후 현재까지 회원국 등으로부터의 재정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및 2021년에 아시아유럽재단(ASEF) 등으로부터의 일회성 지원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매년 유럽연합(EU)에서 7~8백만원을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면 센터 재정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정기적인 분담금 납부 없이 우리나라가 센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오고 있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협력기관 지원 현황]

지원일자	사업명	협력기관	협력기관 지원액
2019.10.1.	제4차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2019.10월 개최)	유럽연합(EU)	약 30백만원
2019.10.17.	G20보건부장관회의 부대행사 (2019.10월 개최)	일본 외무성, 후생성, 유엔인구기금 등	약 80백만원
2019.11.26.	디지털사회와 노인인권 국제세미나 (2019.11월 개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약 13백만원
2021.2.22.	아셈인권세미나 (2021.2월 개최)	아시아유럽재단(ASEF)	약 285백만원
2021.10.29.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후속사업 - ASEF 노인인권 위탁교육 (2021.10~11월)	아시아유럽재단(ASEF)	약 42백만원
2021.11.8.	**제1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1.10월 개최)	**유럽연합(EU)**	**약 7백만원**
2022.10.20.	**제2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2.9월 개최)	**유럽연합(EU)**	**약 7백만원**
2023.8.4.	**제3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3.7월 개최)	**유럽연합(EU)**	**약 7백만원**
2024.7.26.	**제4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4.7월 개최)	**유럽연합(EU)**	**약 7백만원**
2025.9.	**제5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5.8월 개최)	**유럽연합(EU)**	**약 8백만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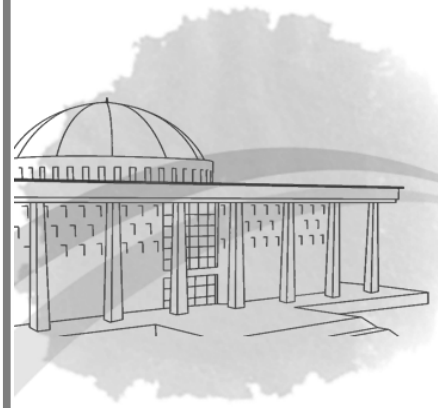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센터는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해 정책연구·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이를 위해 센터는 우리

나라의 지원을 기반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기보다 회원국·유관기관 등과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2023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중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EU 보조금, 국제기구 기금, 지역협력 재원 등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제기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운영 재원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기적인 분담금 납부가 전제되어야 회원국들의 참여 및 협력 의지가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로서의 위상도 제고되고 대외 영향력 또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담금 확보 등 회원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1조 6,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원(1.8%) 증가함. 예산은 1조 6,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원(1.7%) 증가하고, 기금은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6.0%) 증가함.[1)]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6,082	16,082	16,362	280	1.7
기 금	56	56	59	3	6.0
총수입	16,138	16,138	16,421	283	1.8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0억원(6.3%) 증가함. 예산은 4조 5,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1억원(6.3%) 증가하고, 기금은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8.4%) 증가함.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3,227	43,774	45,948	2,721	6.3
기 금	946	946	1,025	79	8.4
총지출	44,173	44,720	46,973	2,800	6.3

나. 예산안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1조 6,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억원(1.9%) 증가함.

[2026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5,437	15,437	15,688	251	1.6
교도작업특별회계	1,237	1,237	1,303	66	5.3
합 계	16,674	16,674	16,991	317	1.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4조 7,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7억원(6.1%) 증가함.

[2026년도 법무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3,404	43,951	46,075	2,671	6.2
교도작업특별회계	1,237	1,237	1,303	66	5.3
합 계	44,641	45,188	47,378	2,737	6.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법무부 소관 1개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0.2%) 증가함.

[2026년도 법무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8	1,448	1,451	3	0.2
합 계	1,448	1,448	1,451	3	0.2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법무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사업은 없으며,[2]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형사부 등 수사지원’,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등 총 18개임.[3]

[2026년도 법무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186,920	1,232,837	45,917	3.9
2	형사부 등 수사지원	47,838	88,940	41,102	85.9
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856,312	883,665	27,353	3.2
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0,751	47,917	27,166	130.9
5	국가배상금 지급	131,765	144,835	13,070	9.9
6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총액)	172,906	185,120	12,214	7.1
7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90,348	302,342	11,994	4.1
8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410	41,015	10,605	34.9
9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9,187	29,538	10,351	53.9
10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9,918	15,726	5,808	58.6
11	마약수사	7,823	10,591	2,768	35.4
12	공공수사	1,346	3,238	1,892	140.6
13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2,595	4,456	1,861	71.7
1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2,760	3,787	1,027	37.2
15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2,000	3,000	1,000	50
16	공판활동지원	1,265	1,928	663	52.4
17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50	216	66	44
[교도작업특별회계]					
18	시설보완	3,897	7,570	3,673	94.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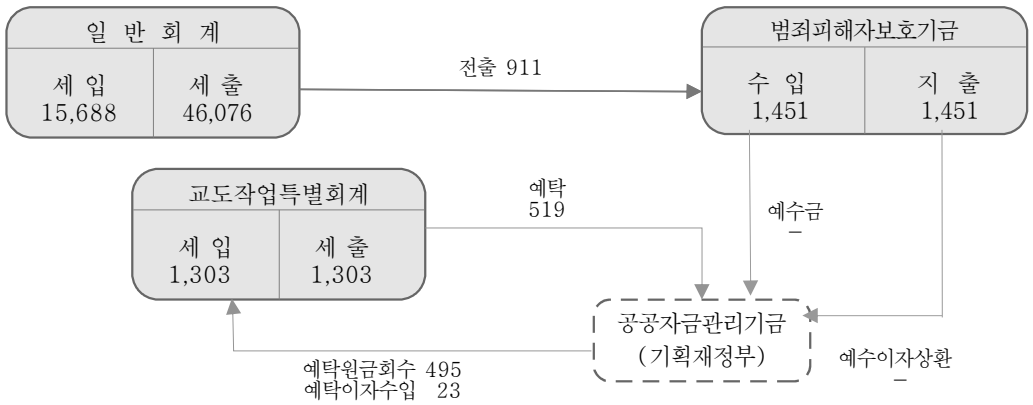
법무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911억원이 전출됨.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19억원을 예탁하며, 예탁원금 회수 495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23억원을 받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911억원이 전입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완료하여 2026년도 계획은 편성하지 않음.

[법무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는 2025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 수가 2026년 세입 예산안의 산출근거로 적용한 2024년 교육 참여자 수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고려하여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세입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실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최근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실제 소요액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교육 참여자 증가 추이를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20만원),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5만원), 각종 출입국허가증 발급 민원수수료(전자여행허가제(K-ETA) 1만원 등)의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54억 9,200만원(47.8%)이 증가한 479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면허료 및 수수료	32,427	32,427	47,919	15,492	47.8

4)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기획조정실)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산출 근거
법조시험응시, 자격승인심사	792	・최근 3년 수납 평균
검찰・교정 민원 및 정보공개 등	285	・최근 3년 수납 평균
출입전자민원	12,220	・최근 3년 수납 평균
한미자동심사	22	・최근 3년 수납 평균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30,400**	**・2026년 수수료 한시 면제 폐지로 인한 수납액 증가 예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신규)	**4,200**	**・2024년 참여자 수 6만명×10만원×70%**
합 계	47,919	

자료: 법무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부터 일부 국가(23개국)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의 목적이 훼손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시 면제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조사하여 일몰제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예산안(304억원)은 '한국 방문의 해'(2023. 4. ~ 2025. 12.) 기간 동안 일부 국가(23개국)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한시 면제[5] 시행을 종료하고 모든 무사증 국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1만원) 부과를 전제로, 2025년 예산 208억 1,400만원 보다 95억 8,600만원 증액된 304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인 2025년 9월 정부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을 2026년 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6]

따라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종료를 전제로 편성된 2026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예산 편성액은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의 재연장 방침에

5) 법무부는 '한국방문의 해' 지정과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112개국 무사증 입국자 중 23개국(미국・대만 및 일본 등) 입국자에 대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3. 4. 1. ~ 2024. 12. 31.까지 시행함

6) 법무부는 '25년말 K-ETA 한시면제 종료를 전제로 '26년도 예산안을 산정하였으나,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광 활성화를 사유로 한시면제 1년 추가 연장을 요구하였고,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면제 기간을 '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함('25.9.25.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따라 최근 실제 세입 결산액, 무사증 국가 입국자 수 추이 및 예측치 등을 바탕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전자여행허가제(K-ETA)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2022~2026년(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7.		2026(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전자여행허가제 (K-ETA)	**12,800**	**19,417**	**44,660**	**22,471**	**16,598**	**9,643**	**20,814**	**5,388**	**30,400**

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는 2023. 4. 1.부터 시행됨
자료: 법무부

다만, 2023년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의 목적[7]이 훼손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법무부는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로 인한 방한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 등 정책 효과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효과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반복적인 한시 면제 조치의 연장 남용을 방지하는 일몰제 적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 수가 2026년 세입 예산안의 산출 근거로 적용한 2024년 교육 참여자 수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고려하여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세입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정주형 이민자(외국인력, 재외동포, 유학생 등)의 증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요가 확대되고,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과 학습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외국인에 대한 교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8]

7)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도입 목적은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에 대한 사전 신원·목적 심사를 통해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국 심사 간소화와 국민 및 관광산업 편의 제고를 함께 실현하는데 있음.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입 예산안(42억원)은 2024년 교육 참여자 수(월 평균 5,000명, 연간 60,000명)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데 2025년 8월 말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40,487명(월 평균 5,060명 이상, 연간 60,720명 이상)으로 이미 2024년 교육 참여자 수 대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세입 예산안 산출근거]

■ 산출근거 : (물량) 60,000명❶ × (단가) 10만원❷ × [1-(수수료 감면비율❸ 30%)] = 42억원

❶ 202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수 : 60,000명
❷ 교육원가(2022년 법무부 연구용역) 500,000원의 20% 수준
❸ 감면대상: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산재・질병・사고치료자 등 사회적 약자
(1/2감경) 성실참여자, 학습태도 우수자

자료: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2025. 1. ~ 8.]

구분	참가자 (과정 종료자)	전액 납부	감면자 현황		미수납	기 타 (이수정지 등)
			전액 면제	1/2 감경		
인원 (명)	40,487	24,631	103	14,897 ・강사추천 265 ・성실참여(참여율 100%) 14,632	479	377

자료: 법무부

[2025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수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수납액	2,019	87,079	616,259	576,028	217,373	269,753	1,102,583	2,871,098

주) 수수료 수납방식은 후납으로 2025년 2월부터 수납됨
자료: 법무부

따라서 2025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024년 참여자 수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고려하여,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예산안을 수입 전망과 수납 실적을 반영하여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8)「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세 출>

2.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미지급액 발생의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다야니 2차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만원(0.1%) 증액된 4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4,717	4,717	4,723	6	0.1

2026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에 편성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및 다야니 2차 사건 등 4개 사건임.

- 론스타 사건: 2012년 11월 론스타는 금융위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5.8조 원(46.8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였고, 2022. 8. 31. 판정 선고가 있었으며, 2023. 7.~9.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임.
- 쉰들러 사건: 2018년 10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해태로 인해 최소 약 2,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에 따라 사건 대응 수행, 현재 중재절차 진행 중임.

9)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국제법무국)

- 민봉진 사건: 2020년 7월 중국투자자인 민봉진은 본인 소유 국내 회사(백익 인베스트먼트)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위법한 수용 및 대한민국 법원의 관련 민형사 재판의 절차적 하자 및 부당한 판단 등이 사법 거부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를 위반, 약 2,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중 BIT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에 따라 사건 대응을 수행 중임(2024. 5. 정부측 전부승소, 2024. 9. 민봉진 측 취소신청 제기하여 현재 취소 절차 진행 중).
- 다야니 2차 사건: 2015년 9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약 578억원) 반환 등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하여 승소(금융위 대응)하였으나 미국 대이란 제재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배상금(약 1억 달러)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중재 제기, 현재 중재절차 진행 중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론스타 사건: 19억 8,500만원
- 법률자문비용 19억 5,500만원, 중재절차참여 2,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② 쉰들러 사건: 12억 2,700만원
- 법률자문비용 12억 2,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③ 민봉진 사건: 8억 4,500만원
- 법률자문비용 8억 4,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④ 다야니2차 사건: 4억 4,100만원
- 법률자문비용 4억 3,6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⑤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7,100만원
- 법률자문비용 및 예방교육 등 4,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간담회 등 운영비 200만원

⑥ 국제법 전문위원(2명) 보수: 1억 5,400만원
- 상용임금 1억 2,80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고용부담금 2,500만원

자료: 법무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대응하여 국제투자 분쟁 대응에 있어 법률자문비용 등에 대한 미지급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투자 분쟁 중재 및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재인 보수, 중재기관 비용 및 당사자 비용(법률자문비용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당사자 비용인 법률자문비용, 통·번역 내부 인건비 등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함.

2026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의 예산안은 론스타를 포함한 4개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비용, 중재절차참여 비용 및 국외여비 등으로 47억 2,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 국제투자분쟁 사건별 추진 현황]

분쟁사건	2025년 주요일정	2026년 이후 주요일정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총 집행액 (2025년 예산액 포함)
론스타	취소절차 구술심리 참석(2025. 1)	취소절차 등 진행	-법률자문비용 등 19억 5,500만원 -국외업무여비 2,500만원 -사업추진비 500만원	488억원
쉰들러	추가 서면공방 등 중재절차 진행	판정선고 예정 및 후속절차 진행	-법률자문비용 등 12억 2,200만원 -사업추진비 500만원	95억원
민봉진	취소절차 및 판정금 집행 절차 진행 등	취소절차 및 판정금 집행 절차 진행 등	-법률자문비용 등 8억 4,000만원 -사업추진비 500만원	49.7억원
다야니 2차	서면 공방 진행	판정선고 예정 및 후속절차 진행	-법률자문비용 등 4억 3,600만원 -사업추진비 500만원	43.7억원
합 계			44억 9,800만원	676억원

자료: 법무부

분쟁해결 절차(ISDS) 사건의 특성상 상대측의 공세 수준(청구취지 추가, 증거 및 증인 신청, 서면 및 출석 요구 등)에 따라 법률자문료, 중재행정 및 국외 출장 비용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비용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법무부는 2024년에 정부대리로펌이 요구한 미지급 채무 지급으로 인하여 68억원을 타 사업에서 이·전용하여 지급한 바 있으므로, 법률자문비용 미지급금[10]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쟁 사건별로 재정소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자문비용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0) 법무부는 미지급금 발생, 지급, 미지급 잔액 등 구체적 금액은 재판 진행 중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3.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보호기간(통상 10일 내외) 중 한국 전통문화 체험, 전통예절 및 한국어 강습, 이·미용 봉사, 운동을 통한 정서순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7,639	17,639	19,509	1,870	10.6
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	14,262	14,262	14,319	57	0.4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66	66	66	-	-

이 사업은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장기 또는 단기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보호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원활한 출국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4기관(화성·청주·여주·울산 외국인보호소)×1,387,000원×12월= 6,600만원

    사물놀이 공연: 10명×50,000원×12회×3개소=1,800만원
    한국어 강습: 강사 3명×100,000원×12회×3개소=1,080만원
    전통예절 강습: 강사 3명×100,000원×12회×3개소=1,080만원
    이·미용사 출장: 미용사 9명×50,000원×12회×3개소=1,620만원
    요가 강습: 강사 3명×100,000원×12회×3개소=1,080만원

자료: 법무부

11) 일반회계 -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 검토의견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실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023년 7,400만원에서 2024년과 2025년은 6,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2023년 86,000원, 2024년 14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거의 전액 불용되고 있음.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결산 현황: 2023~2025.7.]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7.			2026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74	0.09	0.1	66	0.14	0.2	66	-	-	66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는데도 법무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2026년에도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6,600만원)한 것으로 보임.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사유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등 상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평균 보호외국인이 2023년 1,216명, 2024년 1,315명 및 2025년 7월 기준 1,338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에 행정력이 집중되어 동감 프로그램 운영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임.

그리고 보호외국인은 교정기관 수용자와 달리 보호소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10일로서 짧은 기간동안 정보를 숙지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임.

[보호외국인 현황: 2023~2025.7.]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7.
보호외국인 (일평균)	1,216	1,315	1,338

자료: 법무부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심리적인 안정 및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감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고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예산 실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사업(신규): 기존 도입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구입 수량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사업은 마약사범의 수고비, 매매대금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10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마약수사	7,823	9,584	10,591	2,768	35.4
마약사범 수사지원	7,416	9,177	10,192	2,776	37.4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	-	1,050	1,050	순증

이 사업은 마약류 밀반입 등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적 및 분석하는 프로그램 계정 10개를 도입하여 밀수 및 위장거래 수사에 사용하는 사업임.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가상자산추적 도구 도입(10계정): 10억 5,000만원
  - 1억 500만원[1)]× 10계정((7개청[2)])
    1) 미국 체이널리시스 견적가
    2) 7개청 : 서울중앙(2계정), 인천(2계정), 수원, 부산(2계정), 광주, 대구, 대전

자료: 법무부

12)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검찰국)

나. 검토의견

기존에 도입된 가상자산 추적 도구(24계정)의 활용 실적을 면밀히 파악한 후 수사청별 신규 도입 계정의 수를 활용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수고비, 매매대금 등이 가상화폐로 거래될 때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추적을 통해 본범은 물론 상선과 공범 등까지도 특정하여 조직 자체를 단속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추적 도구 계정(10개)에 대한 도입 예산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신규 도입될 가상자산 추적 도구는 밀수 및 위장거래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청에 배정할 계획으로, 밀수 수사를 전담하는 7개청(서울 중앙・인천・수원・대구・대전・부산・광주지검)과 위장거래 수사를 전담하는 3개청(서울 중앙・인천・수원지검)에 각각 1계정을 배정할 계획임.

[2026년 가상자산추적도구 배정(안)]

구분	배정 계정수(안)	비고
서울중앙지검	2 계정	밀수, 위장거래 수사
인천지검	2 계정	밀수, 위장거래 수사
수원지검	2 계정	밀수, 위장거래 수사
대구지검	1 계정	밀수 수사
대전지검	1 계정	밀수 수사
부산지검	1 계정	밀수 수사
광주지검	1 계정	밀수 수사
합 계	10 계정	

자료: 법무부

한편,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관련 수사 소요 등에 따라 가상자산 추적 도구를 도입하여 2025년 9월 현재 대검찰청 10계정, 서울동부지검 6계정 및 서울남부지검 8계정 등 총 24계정을 운용 중임.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 현황]

(단위: 개)

구분	추적 도구	계정	비고
대검찰청	Chainalysis Reactor Platinum	5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4), 대검찰청 마약과(1)
	Chainalysis Reactor Silver	2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총괄 관리
	Chainalysis Storyline	1	
	TRM Forensics	1	
	BIG Qlue	1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Chainalysis Reactor Platinum	2	사이버범죄수사부
	Chainalysis Reactor Silver	2	
	TRM Forensics	1	
	BIG Qlue	1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Chainalysis Reactor Platinum	3	가상자산범죄 합수부(3)
	Chainalysis Reactor Silver	5	가상자산범죄 합수부(2) 금융조사제1부(1) 금융조사제2부(1) 금융·증권범죄 합수부(1)
합계		24	

자료: 법무부

2026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인 가상자산 추적도구(10계정)의 도입 효과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도구(24계정)의 활용에 대한 통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법무부는 기존에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도구(24계정)의 활용 통계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13)]

따라서 2026년 가상자산 추적도구의 도입에 있어서 기존에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의 플랫폼(Chainalysis, TRM, 및 BIG Qlue)별 활용 통계 등을 파악한 후 가상자산 추적도구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도입 물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의 활용 통계 등에 대한 자료는 작성·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등 관련 부서에서 가상자산의 출처 및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가상자산 추적도구 제조 업체 기본 계약에 따라 가상자산 추적도구 계정의 공유·배포·양도 등이 제한되며, 1개 계정에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마약 대량 밀수 등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은 수사상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형사부 등 수사지원	47,838	85,664	88,940	41,102	85.9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305	305	305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4,858	6,124	6,158	1,300	26.8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90	90	90	-	-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16,079	16,079	16,164	85	0.5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5	5	5	-	-

이 사업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특정인에게 수사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15]을 지급하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실제 소요액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4)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1335-306), 검찰청운영기본경비(7818-252)(검찰국)

15) 통보 비용은 우편의 경우 건당 2,000원, 모바일은 건당 500원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16]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법무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비용은 3개 세부사업(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으나, 3개 사업 중 2개 사업(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과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통보 비용의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023년 7,500만원에서 2024년과 2025년 45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불용되었음.

또한 형사부 등 수사지원사업에서도 2023년 예산액 4억 3,5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2024년에는 예산액 3억 500만원 중 9,200만원만 집행(집행률 30.3%)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7.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형사부 등 수사지원	**435**	**-**	**-**	**305**	**92**	**30.3**	**305**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200	169	84.7	140	66	47.1	90	84	93.3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75**	**-**	**-**	**4.5**	**-**	**-**	**4.5**	**-**	**-**
합 계	710	169	23.8	450	158	35.2	400	84	21.0

자료: 법무부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집행실적의 저조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실제 통보 건수는 2023년 10만 6,695건, 2024년 8만 548건 등 연간 약 10만건 내외이나, 예산은 실제 통보 건수의 2~3배 수준인 2023년 36만건, 2024년 23만건 및 2025년 20만건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실제 통보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예산편성 건수 대비 실제 통보건수]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7.	2026
예산(안) 편성기준	367,550	225,550	200,750	200,750
실제 통보	106,695	80,548	37,541	-

자료: 법무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우편 및 모바일 통보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7.
우편 통보건수	62,798	98,167	73,462	32,889
모바일 통보건수	4,544	8,528	7,086	4,652
전체 통보건수	67,342	106,695	80,548	37,541주)

주) 은행 지연 통보 건수 등으로 수치는 변동 가능함
자료: 법무부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예산안은 최근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실제 소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 감시정 건조 일정을 고려한 연간 예산 편성 비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은 선박 등 입·출항 시 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 검색을 위하여 감시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3,400만원(△39.4%) 감액된 26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55,163	55,163	63,354	8,191	14.9
소속관서 운영경비	33,572	33,572	32,550	△1,022	△3.0
출입국감시정 운영	4,402	4,402	2,668	△1,734	△39.4

출입국감시정은 항만 등 해상에서 출입국 관리, 밀입국·밀수 적발, 해상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용 감시 및 단속 선박으로서, 2026~2027년 동안 감시정 1척을 신규 건조할 계획임.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출입국감시정 운영 : 2억 8,300만원(신규 1척, 기존 2척)
·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등): 7,500만원(3척×2,5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부품 교체 등), 안전검사 등: 2억 800만원(기존 2척×1억 400만원)
- 출입국감시정 건조: 24억 6,000만원(1척×40톤×1억 300만원×1년차 60%)
· 공사비 24억 2,500만원, 감리비 3,500만원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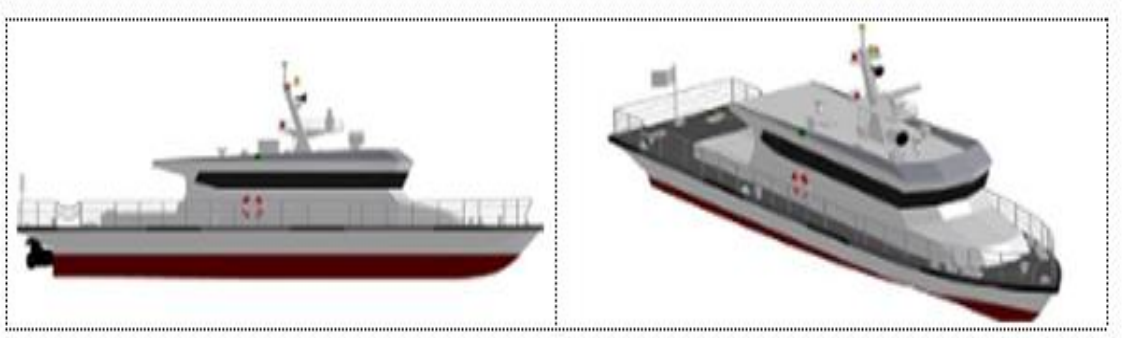
17) 일반회계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2027년 건조대상 감시정 제원]

선종	선질	예상 선박제원						운항특성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주기관 출력	최대 속력	운항구역	승선인원	
감시정	알루미늄 합금	40톤	24.7m	5.4m	2.8m	3,000kW (2,012HP×2)	35Knots	연해 구역	12명	미세먼지 저감 장치(DFP) 적용

자료: 법무부

[2026~2027년 건조 감시정 외형]



나. 검토의견

출입국감시정 건조에 있어 주요 부품 조달 및 설치 후 선박안전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5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감시정 건조 예산안의 연간 편성 비율 조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5년 단년도 감시정(1척) 신규 건조사업에 이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다년도(2년) 감시정(1척) 신규 건조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감시정 1척에 대한 건조 예산 41억 2,000만원 중 2026년에 24억 6,000만원(60%)을 편성하고, 2027년에는 잔여분 16억 6,000만원(40%)을 편성할 계획임.

2026년부터 건조하는 감시정은 2025년에 건조 중인 감시정 재원(총톤수 40톤)과 동일하여, 2025년 감시정 건조 공정과정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감시정 건조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출입국 감시정 공사 대금은 계약(2025. 1.) 후 선금 11억 4,000만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1차 기성금(지급일 2025. 6.) 4억 300만원 등 15억 4,3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총 계약액 38억 5,800만원 대비 40%를 차지함.

[2025년 9월 기준 출입국 감시정 공사 대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금액	2025년 지급금액			
	선금(1.20.)	제1회 기성금(6.26.)	합계	계약액 대비 지급률
3,858	1,140	403	1,543	**40.0%**

자료: 법무부

특히, 감시정 건조 시에는 주요 부품(엔진, 발전기 등)의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장비의 설치에 있어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등 정밀 기술시험을 거쳐야 하고 인증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25년의 경우 엔진 설치를 위한 주문에서 검사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됨.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2027년 감시정 건조사업의 일정은 2026년(1차연도)에는 설계 검토, 디젤엔진 등 핵심장비 조달 및 선체 착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안의 60%인 24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주요 부품인 엔진의 조달에서도 사전에 주문 요청을 후 실제 엔진을 선박에 설치하고 설치된 엔진의 성능 등 관련 검사를 통과하여야 해당 엔진의 잔금이 지급되므로 1차 연도에 주요 부품(엔진 등)에 대한 성능검사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6년에 건조하는 감시정은 친환경 선박[18]으로서,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기자재(전기 추진, 하이브리드 및 저배출 엔진 등)와 관련 환경 성능 인증[19]이 추가되어 기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18) 친환경 선박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하이브리드(휘발유 등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 선박 및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 선박 등이 있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9) 친환경선박 인증은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본인증(인도단계)으로 구분되며, 소요기간은 예비인증(건조 전에 실시)과 본인증(건조 완료 뒤 실시)은 각각 2~3개월 소요됨.

따라서 출입국감시정 건조에 있어 첫해인 2026년도에 감시정 공사 계약을 수행하고 주요 부품 조달 및 설치 후 선박안전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약 5개월)을 고려할 때, 2026~2027년(2년) 동안 건조하는 출입국감시정 건조 예산안 편성 비율을 현행 1차 연도(2026년)와 2차 연도(2027년) 비율(6:4)에서 조정하는 방안(예를 들면, 5:5)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 입>

7.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 전입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에 대한 정산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 전입금’ 은「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4조[20] 및「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21]에 따라 벌금 수납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수납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당초 계획액보다 23억 8,400만원(2.7%) 증액된 91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일반회계 전입금	88,762	88,762	91,146	2,384	2.7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나. 검토의견

법정 전입금(벌금 수납액에 8% 적용한 금액)과 실제 수납액 간 누적된 차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정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조성)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1)「법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2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인권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일반회계에 수납된 벌금 수납액의 8%를 기금 수입으로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 전입금의 기준일(벌금 수납 시기)과 실제 기금 전입 절차에 시차가 존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수납액과 법정 전입금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일반회계 전입금의 실제 수납액과 법정 전입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29억 4,900만원의 초과 수납이 이루어졌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각각 52억 2,500만원과 98억 9,200만원의 과소 수납이 이루어지는 등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차액 규모는 총 625억 8,000만원(초과 수납)으로 나타남.

[2017~2024년 벌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벌금	수납액(A)	1,290,209	1,162,450	1,083,496	1,143,747	1,020,899	1,064,874	1,242,814	1,200,165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액(B)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86,121
	수납액(C)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86,121
	법정전입금액 (D=A×법정 전입비율)	77,413 (A×6%)	69,747 (A×6%)	65,010 (A×6%)	68,625 (A×6%)	81,672 (A×8%)	85,190 (A×8%)	99,425 (A×8%)	96,013 (A×8%)
	법정전입금과 수납액의 차액 (C-D)	**2,697**	**10,363**	**17,430**	**13,815**	**24,382**	**9,010**	**△5,225**	**△9,892**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법정전입금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금 수입 규모가 왜곡되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만약 일시에 정산하기 위해 총 625억 8,000만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기금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누적된 법정전입금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액에 대하여 정산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연간 정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 출>

8. 민간경호 지원 사업: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지속 위반 등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검거 등 조치 시까지 민간경비업체의 밀착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과 동일하게 2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민간경호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5,540	5,540	5,400	△140	△2.5
	민간경호 지원	2,450	2,450	2,450	-	-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2023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에 경찰청 예산(일반회계) 7억원(수도권 지역, 지원인원 100명)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2025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민간경호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민간경호 지원(민간경상보조) : 24억 5,000만원

· 350명 × 500,000원× 14일 = 24억 5,000만원
(전국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350명 지원)

자료: 경찰청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경찰청)

나. 검토의견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2025년 8월 기준 지원 대상자 급증으로 인하여 이미 당초 계획한 지원 대상자의 95%를 지원하여 하반기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5년과 동일하게 계획된 2026년 민간경호 사업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스토킹 등 집착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2023년 시범운영[24]과 2024년 경찰청 일반회계 사업[25]으로 실시하여 각각 98명, 156명을 지원하였음.

민간경호 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은 경찰이 경호 지원 요청에 대한 위험도 판단 후 고위험으로 판단될 시에는 1회 14일(1회 연장 가능)을 기준으로 2인의 경호 인력(인당 25만원/일)을 지원하는 것임.

2025년 민간경호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계획된 지원 대상자 수 350명 중 이미 334명(95%)이 지원되어 하반기에 긴급한 경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민간경호 지원 실적]

구분	2023. 6~12.	2024	2025. 8.
지원 인원	98명	156명	334명

자료: 경찰청

더욱이 현행 사업 구조는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경호지원이 2인 1조(일 50만 원), 14일 단위라는 방식을 기본으로 운영[26]되고 있어, 위험도 수준이나 피해자의 실질적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이나 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4)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은 약 7개월(2023. 6. 12.~12. 31.) 동안 4개 경찰청(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에서 실시하였는데, 가해자의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1일 50만원(경호원 2인, 1일 10시간 기준), 14일간(1회 연장 가능) 민간 경호를 지원하였음.

25) 2024년에도 일반회계 예산 7억원(지원 대상자 100명 × 1일 50만원 ×14일)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26)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경호는 피해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일일 경호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도 수사상황, 위험도 소멸 · 지속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저위험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동일 단가 중심의 고비용 구조가 굳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는 경찰청은 민간경호업체와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경호 인력의 자격·윤리성·전문성에 대한 검증 체계가 다소 모호하고,[27] 이러한 인력 관리·교육 기준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안전 영역에 민간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 치안 업무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의 문제와 경호 서비스의 안정적인 품질 유지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2025년과 동일한 계획액 및 사업 추진 방식으로 편성된 2026년 민간경호 사업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서도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현재 수행 중인 정책연구용역(‘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7)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경호 계약 체결 시 배치 경호원의 자격요건으로서 범죄 경력이 없고 무도 자격을 보유하고 경찰청이 주관하는 사전 교육(8시간)을 수료한 인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법제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은 없으며, 총지출은 6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원(31.9%) 증가함.[1)]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57.3	457.3	603.3	146.0	31.9
총지출	457.3	457.3	603.3	146.0	31.9

나. 예산안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6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원(31.9%)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법제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57.3	457.3	603.3	146.0	31.9
합 계	457.3	457.3	603.3	146.0	31.9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법제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음.[2)]

한편, 법제처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으로 총 3개임.[3)]

[2026년도 법제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8,046	20,517	12,471	155.0
2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1,802	2,783	981	54.4
3	외국법제기관 교류	243	430	187	77.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법제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및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과정 참가자 수송을 위하여 편성된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의 경우 2025년도 셔틀버스 운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임차료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법제교육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셔틀버스 임차료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법제교육’**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법제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700만원(63.5%)이 증가한 2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법제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802	1,802	2,783	981	54.4
법제교육	1,538	1,538	2,515	977	63.5

[법제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법제교육 사업: 25억 1,500만원

- 법제교육 강의 등 운영: 4억 8,400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1억 5,098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관리: 1억 421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억 9,000만원,
- **법제교육 셔틀버스 운영 등: 2억 5,815만원**
- 여비: 1억 1,308만원

자료: 법제처

4) 일반회계-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법제지원국)

나. 검토의견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과정 참가자 수송을 위하여 편성된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의 경우 2025년도 셔틀버스 운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임차료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법제처는 2026년 태안 법제교육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료 2억 3,872만원을 편성하였음.

교육생용 셔틀버스는 서울-안면도, 세종-안면도 등 2개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셔틀버스 2대(대당 임차료 746,000원)를 연 160일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근거	편성금액
태안 법제교육과정 교육 참가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746 × 2대 × 160일	238,720

자료: 법제처

태안 법제교육원은 2024년 11월 4일에 개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25년부터로 2026년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안은 2025년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임차료 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집행액은 6,700만원으로 나타났음.[5)]

이는 2025년에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로 월 평균 837.5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2026년 법제교육 과정이 2025년과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2026년 교육생용 셔틀버스 임차료는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사업 집행실적: 2024~2025.8.]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8월 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태안 법제교육과정 교육 참가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67,200	22,836	**336,000**	**67,000**

자료: 법제처

5) 법제처에 따르면 2025년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실적의 저조는 법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개별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교육생들의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추어 셔틀버스 발착지를 서울과 오송 중 1곳으로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따라서 태안 법제교육원의 2025년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2026년 교육생용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클라우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 도입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3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법제업무 정보화추진(정보화)	8,046	8,046	20,517	12,471	155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4,632	4,632	7,305	2,673	57.7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	3,344	3,344	순증

이 사업은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도입하고 판례 · 해석례 등까지 학습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함.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연구비(260-01): 26억 8,400만원

- 생성형 AI를 위한 LLM 구축: 16억 5,600만원
-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 시스템(RAG) 구축: 1억 5,800만원
-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수집 · 분석: 8억 7,000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억 6,000만원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6억 6,000만원

자료: 법제처

6) 일반회계-법제업무정보화추진(1033-500)(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있어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클라우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2026년에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7] 도입과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령조문, 입법배경 및 취지,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따라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2개 시스템(생성형 AI를 위한 법령 LLM 모델 도입,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통하여 관리할 계획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성형 AI를 위한 법령 LLM 모델 도입 사업은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여 법령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 시스템(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사업은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오류(환각) 발생[8]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임.

또한, AI가 고품질의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수집), 정제·분류(라벨링)·품질점검과 같이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 사업을 병행할 계획임.[9]

법제처는 2026년 생성형 AI 법령정보 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구축 관련 장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권고받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어 클라우드 사용료(월 1억 1,000만원) 6개월분을 편성하였음.[10]

---

7) 언어모델(sLLM)이란 범용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재학습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모델임.

8) 오류 또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문제로 이러한 환각은 데이터셋의 오류나 편향, 학습 구조의 한계, 언어 생성 방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9)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사업의 경우 AI가 학습할 도메인(법률, 행정 등)에 맞는 문서, 이미지 등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결측값, 오류 및 중복 데이터 정비 후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분류 작업 등의 절차가 수행되는데 이 작업 기간이 데이터의 유형(텍스트, 이미지 등), 라벨링 복잡도 등에 따라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10) 민간 클라우드 사용료 지급 기준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종량제 및 정액제로 구분되는데, 종량제(Pay-as-you-go)는 IT 자원(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의 사용량(시간, 용량, 데이터 전송량 등)에 따라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양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신규 시스템 기획, 설계 등의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사용량 및 사용기간이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바, 법제처는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클라우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11]을 마련하여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급하는 것이고 정액제(Reserved, Subscription)는 월 또는 연 단위로 일정 자원을 미리 예약하거나 구독하여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누어짐.

11) 법제처에서는 GPU 서버를 활용한 벡터 DB 구축, 학습데이터 수집 · 분석, 법령특화 언어모델(sLLM) 개발 등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감사원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은 8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5.8%) 증가함.[1)]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7.70	7.70	8.15	0.45	5.8
총수입	7.70	7.70	8.15	0.45	5.8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은 1,44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3,400만원(1.7%) 증가하였고, 추경 증액분이 반영된 1,469억 3,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8억 4,400만원(△1.9%)이 감소함.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417	1,469	1,441	24	1.7
총지출	1,417	1,469	1,441	24	1.7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8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5.8%) 증가함.

[2026년도 감사원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7.70	7.70	8.15	0.45	5.8
합 계	7.70	7.70	8.15	0.45	5.8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44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3,400만원(1.7%) 증가하였고, 추경 증액분이 반영된 1,469억 3,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8억 4,400만원(△1.9%)이 감소함.

[2026년도 감사원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417	1,469	1,441	24	1.7
합 계	1,417	1,469	1,441	24	1.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감사원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음.[2)]

한편, 본예산 기준 감사원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감사활동경비' 사업 등 1개임.[3)]

[2026년도 감사원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감사활동경비	9,234	15,065	5,831	63.1

※ 한편, 제1·2차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2025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최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45억 1,20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6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300만원(3.8%)이 증액됨.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감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헌법」및「감사원법」등에 따라 부여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활동경비’ 사업이 증액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감사활동경비 외 주요 사업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효율화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중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 사업의 관리용역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다년도 계약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에서 클라우드 구독 대신 전산장비를 직접 구매할 계획이나, 단순히 초기 구매비용만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구독 대비 경제성을 평가하기보다, 장비의 감가상각,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재구매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3~5년간 평균 수납액을 고려한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4] 여비 사후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기타 과오납금 회수금이 수납되는 세입항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66.6%)이 증액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0	30	50	20	66.6

2020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예산현액에 비해 수납액이 과도하게 많으며, 5년(2020~2024년) 평균 수납액은 1억 3,430만원, 3년(2022~2024년) 평균 수납액은 9,000만원임.

---

4)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2국 및 국민제안감사2국 산하에 4개 지방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제보의 조사·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지방사무소 근무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소재지별로 지방관사를 전·월세 형태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감사원이 현재 임차중인 관사는 일부 무보증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체결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러한 감사원의 지방사무소 관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관사 보증금이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목으로 수납됨.

5)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2020~2025년 감사원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20.0	20.0	20.0	389.4	118.9	594.5	30.5	-	270.5
2021	20.0	20.0	20.0	282.8	282.8	1,414.0	100.0	-	-
2022	73.0	73.0	73.0	25.6	25.6	35.1	100.0	-	-
2023	30.0	30.0	30.0	165.5	165.5	551.7	100.0	-	-
2024	30.0	30.0	30.0	78.9	78.9	263.0	100.0	-	-
2025	30.0	30.0	30.0	158.9	158.9	529.7	100.0	(미정)	(미정)
5년(2020~2024) 평균 수납액					134.3				
3년(2022~2024) 평균 수납액					90.0				

주) 2025년은 7월 말 기준임
자료: 감사원

나. 검토의견

2026년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기타경상이전수입 5,000만원은 최근 3~5년 평균 수납액에 미달하는 수준이고, 2026년 임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관사가 5곳임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증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0~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중 지방사무소 관사의 보증금 환수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최고 94.4%에서 최하 33.2%로 다양하게 나타남.

[2020~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중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

(단위: 백만원, %)

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전체 수납액(A)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 (B)	비중 (B/A)
2020	118.9	96	80.7
2021	282.8	263	93.0
2022	25.6	20	78.1
2023	165.5	55	33.2
2024	78.9	50	63.4
2025	158.9	150	94.4
계	830.6	634	76.3

주) 2025년은 7월 말 기준임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사 임차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성격의 세입 요인은 예산안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 이후를 살펴보면, 관사 보증금 환수 금액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및 국외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반납금이 많이 수납됨에 따라 2023~2025년 예산현액 3,000만원을 상당히 초과하여 수납 처리되었음.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이 과거에는 관사 보증금 환수가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국외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반납금 등 관사 보증금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수납되면서 관사 보증금 외에도 상당한 규모로 세입이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2026년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기타경상이전수입 5,000만원은 최근 3~5년 평균 수납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2026년 임차기간이 만료 되는 관사가 이하 5곳임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을 증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임차기간 만료 예정인 관사 목록]

(단위: 백만원)

소재지	임차기간	보증금	임차료(월)	임차 형태
대전	'24.12.16.~'26.12.15.	10	0.6	전월세
	'25.1.10.~'26.1.9.	5	0.65	전월세
광주	'24.10.30.~'26.10.29.	190	-	전세
부산	'25.4.19.~'26.4.18.	25	0.6	전월세
대구	'25.7.11.~'26.7.10.	5	0.55	전월세

주) 위 관사 임차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아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세입처리할 예정임

자료: 감사원

<세 출>

2.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다년도 계약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한 관리용역비 절감 필요

가. 개 요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은 각종 전산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방대한 감사자료 등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8억 1,100만원(△36.1%)이 감액된 103억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16,111	16,111	10,300	△5,811	△36.1

이 중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목)는 2025년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4개 내역사업별 관리용역비(210-15목)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 운영	1,781	1,801	20
OASYS 구축 · 운영	1,548	2,687	1,139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493	597	104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 운영	936	1,063	127

자료: 감사원

6) 일반회계- 전산운영경비(정보화)(1134-309)(디지털감사국)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다년도 계약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유지관리 계약이 3년에서 2년, 1년 단위로 점차 단축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는 단년도 계약 체결이 반복되고 있음.

이처럼 다년도 계약에서 단년도 계약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기술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고 매년 재입찰을 통해 경쟁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예산 변동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매년 입찰 및 계약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핵심 시스템의 경우 큰 폭의 기술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다년도 계약을 일정 부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감사원은 다년도 계약 등 제도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관리용역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 관리용역비 증액 상세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관리용역비 예산			증액 사유
	2025년 (A)	2026년 (B)	증감 (B-A)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93	597	+104	○ 2024~2025년 매년 단년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요율 하향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근거한 요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요율 상향[7] (상용SW 요율 9.98→13.78% 등) • 상용SW 유지관리: 271→339백만원(+68백만원)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222→258백만원(+36백만원) ※ 최근 유지관리 계약기간 - 2019~2021년(3년), 2022~2023년(2년), 2024년(1년), 2025년(1년)

자료: 감사원

7)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에 따르면, 응용 SW 유지관리 요율은 10~15%,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은 유지관리 등급에 따라 12~20% 수준임.

3.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산장비(GPU 서버) 구입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은 감사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연구·조사하여 감사원의 감사정책 등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700만원(△23.7%)이 감액된 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감사연구활동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감사연구활동경비	535	535	408	△127	△23.7
자산취득비 (430-01)	5	5	13	8	160.0

이 중 자산취득비(430-01목)는 2025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료실 자료구입 비용 500만원 외에 감사기법 개발용 전산장비 구입비용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자산취득비(430-01) 세부 계획]

2025년	2026년
○ 자산취득비(430-01) : 500만원 가. 자료실 자료구입(500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00만원 가. 자료실 자료구입(500만원) 나. 감사기법 개발용 전산장비구입(800만원) : 800만원×1=800만원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사기법 도입을 위해 해당 전산장비를 도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고, 클라우드 구독에 비해 저렴하고 보안에 강하다는 측면에서 직접 GPU 서버를 구입한다는 입장임.

8) 일반회계- 감사연구활동경비(1151-351)(감사연구원)

[감사기법 개발용 전산장비(GPU 서버) 구입 개관]

ㅇ 사업 목적: 4차 산업기술의 발달로 감사업무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한 기초연구 및 감사기법·방법론 개발 등에 필수적인 GPU를 포함하는 고성능 컴퓨터의 활용성이 증대

ㅇ 요구액 산출근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유사 성능의 컴퓨터를 검색하여 공급단가 외 부가세와 조달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

ㅇ 직접 구매와 클라우드 구독의 비교: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에 유리한 고성능의 컴퓨터 구매

* 직접 구매는 구독 대비 장기·지속적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며, 보안 강화 측면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자체 인프라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정보유출 위험 최소화에 적합

구분		직접 구매	클라우드 구독
성능	타입	GPU	GPU
	GPU 메모리	24GB	16GB
	CPU 코어	24개	8개
	RAM	128GB	40GB
	SSD	2,000GB	50GB
비용	단가 (부가세 등 별도)	6,576,000원	8,112,960원
	네트워크	사용료 없음	사용료 별도
기타	사용기한	영구적	1년 약정

자료: 감사원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클라우드 구독에 비해 사용료가 없고 구매 단가가 저렴한 전산장비를 직접 구매할 계획이나, 단순히 초기 구매비용만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구독 대비 경제성을 평가하기보다, 장비의 감가상각,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재구매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클라우드 구독에 비해 사용료가 없고 구매 단가가 저렴한 전산장비를 직접 구매할 계획이나, 직접 구매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숨은 비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차년도 계획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선, GPU 등 핵심 부품은 연산 성능한계가 존재하여 보통 3~5년 이내에 신규 장비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연평균 장비가격의 20% 수준에서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함.

또한 장비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비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증기간이 지나면 SSD,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교체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보안성 유지를 위해 내부 IT

관리자의 상시적인 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장비 자체의 재구매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성능 장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져 성능이 부족해지고 실제 업무효율성이나 감사 성과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신제품 대비 성능 격차가 빠른 시간 내에 크게 벌어질 수 있는데, 연산속도, 메모리 처리량,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져 전산장비(GPU 서버)의 재구매 소요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교체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단순히 초기 구매비용만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구독 대비 경제성을 평가하기보다, AI 고성능 연산장비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비의 감가상각,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재구매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9)]

9) 감사원은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2025.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은 데이터 보안 등급이 '공개정보(O)'로 분류되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비공개 자료 분석이 수반되는 디지털 감사방법 개발 연구의 특성 상 전산장비(GPU 서버 탑재 컴퓨터) 구매가 클라우드 구독보다 보안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판단된다는 입장임.
또한 중기 비용 측면(5년 누적)에서도 전산장비 비용(800만원)이 클라우드 구독 비용(4,056만원)보다 약 3,200만 원 저렴하여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가상각비 및 재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의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클라우드 구독과 전산장비 구매 간 비용 비교(단년도, 5년 누적)]

비교 기간	클라우드 구독 (A)	전산장비 구매 (B)	차이(A-B)
2026년	8,112,960원	8,000,000원	-
2026년~2030년(5년)	40,564,800원	8,000,000원	32,564,800원

자료: 감사원

4. 감사활동경비 사업: 일반연구용역 추진 시 경쟁입찰 확대 필요

가. 개 요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억 3,100만원(63.1%)이 증액된 150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감사활동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감사활동경비	9,234	14,512	15,065	5,831	63.1
일반연구비 (260-01)	1,600	1,600	1,200	△400	△25.0

이 중 일반연구비(260-01목)는 전년 대비 4억원(△25.0%) 감액된 12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를 위한 용역 및 주요 감사사항 연구용역을 위한 비용임.

[2026년도 일반연구비 예산안 세부내역]

○ 감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 (2025) 16억원 → (2026 정부안) 12억원
- (요구)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를 위한 용역 및 주요 감사사항 연구용역을 위한 비용
- (산출) 12억원(주요 감사사항 관련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 결산검사 보조용역 9억 5,000만원)

자료: 감사원

나. 검토의견

감사원의 연구용역 과제는 최근 4년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경쟁성·투명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6년에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에 계약이

10) 일반회계- 감사활동경비(1131-303)(기획조정실)

체결된 연구용역 과제 18건 중 수의계약은 15건이고, 2022년에는 16개 과제 중 15개 과제가, 2023년에는 12건이 모두 수의계약이며, 2024년에는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또한 2025년 9개 계약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2건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이 유찰됨에 따른 것이고, 5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4)에 근거하여 특수한 지식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액이 저가임에 따른 수의계약이 2건임.[11)]

그러나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일반연구 용역은 특정 감사분야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감사사항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비교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활동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보다 일반경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024~2025년 계약체결 상세내역]

(단위: 천원)

연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2024년 (14건)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2분류)	591,000	수의계약(나라장터)	유찰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1분류)	583,000	수의계약(나라장터)	유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도전·혁신성 실증연구	48,95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개선 기초자료 연구	35,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강원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적정성 검토 연구	14,85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	21,5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기능을 활용한 감사접근방법 및 해외 감사사례 연구	4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	4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미국의 재난관리책임자 채용제도 분석	1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자체감사 실시 및 감사계획 수립 실태 분석	4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위: 천원)

연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정부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2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12,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7,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2025년도 고위감사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후보자 역량평가 과제수정 개발 및 운영	65,000	제한경쟁	-
2025년 (9건)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 보조 용역(1분류)	536,000	수의계약(나라장터)	유찰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 보조 용역(2분류)	540,500	수의계약(나라장터)	유찰
	미래 위험요인 감사 개선방향 연구	29,969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감사결과 분석 방법 연구	30,000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2025년도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내 특정사안 설문 조사	20,000	수의계약	저가
	위험분석 고도화를 위한 특정 분야 감사 이슈 분석	30,000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생성형 AI를 활용한 감사사례 질의응답 방법 연구	30,000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조달물품 가격 비교 조사 및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20,000	수의계약	저가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따른 감사범위의 변화 및 국제사례 등 조사 · 분석	27,272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

자료: 감사원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일반연구비를 통한 연구용역은 수의계약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감사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연구자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12)]

12) 절차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과제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은 없고, 총지출은 2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17.3%) 증가함.[1)]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52	-	296	44	17.3
총지출	252	-	296	44	17.3

나. 예산안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17.3%)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52	-	296	44	17.3
합 계	252	-	296	44	17.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음.[2)]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등 총 2개임.[3)]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9,788	13,354	3,566	36.4
2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855	1,324	469	54.9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정보화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정보화사업은 일반회계 총 4개 사업(총 7개 사업 중 기본경비 등 3개 제외) 중 2개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161억원 중 146억원(91.2%)임.

정보화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2024. 10. 20.)에 따라 사법절차 전과정의 전자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차 고도화 및 전자영장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함.

2026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은 PMO 비용과 감리비를 제외한 시스템 구축비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공수처는 법무부 등 관련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신규): 법무부 등 형사사법 처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은 법원이 발부한 전자영장을 피집행자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9,788	9,788	13,354	3,566	36.4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	-	3,655	3,655	순증

2025년 10월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가 시행되어 기존 종이서류 중심의 오프라인 업무가 전자문서 기반의 온라인 업무 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이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항[5)]에 따른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전자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임.

---

4) 일반회계-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기획조정실)

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 36억 5,5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8억 4,700만원 ・개발비: 8억 4,700만원 - 자산취득비(430-01): 28억 800만원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검토의견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은 PMO 비용과 감리비를 제외한 시스템 구축비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공수처는 법무부 등 관련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형사사건의 소송기록과 재판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운용(2025. 10. 오픈)에 따라 형사사법처리기관은 사건 기록・영장 및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음.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사법 처리기관이 공통으로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임.

이에 따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의 공통 구축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는 2025년 9월에 공수처를 포함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ISMP 수립' 사업을 수행하였음.[6)]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ISMP에서 제안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각 형사사법 처리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및 대민 보안 부분은 공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부대경비(프로젝트관리비, 감리 및 조달수수료 등)는 공통 경비로 분류하여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런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수처를 제외한 법무부 등 4개 기관은 2026년도 예산안에 구축비 190억 4,600만원뿐 아니라, 부대경비 11억 5,000만원 등 총 20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수처는 부대경비 없이 구축비 36억 5,500만원만 편성이 되었음.

---

6) ISMP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법무부 등 4개 기관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2025. 8.)을 통하여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 사업(201억 9,600만원) 예산 증액 협의를 완료하였음.

[2026년 법무부 등 형사사법 처리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 비용
구축비 (SW, HW 등)	법무부 등 4개 기관	19,0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655**
부대경비 (PMO, 감리비 등)	법무부 등 4개 기관	1,150
총 사업비		23,851

자료: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는 2021년 착수한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범위에 공수처가 공동 참여 기관이 아니었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되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공수처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에서도 배제가 되게 된것임.

이와 같이 공수처가 정보시스템 공동 개발에서 제외되어 부대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PMO), 감리 등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정보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가 낮아지고 일정 지연 등 사업 전반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2026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의 초기부터 법무부 등 형사사법 처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사업(신규): 신고시스템 운영 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해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사업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1,430	1,407	△23	△1.6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	-	13	13	순증

이 사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8)]에 따라 내부신고자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익명성이 완전 보장되도록 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의 신고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임.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 1,320만원

- 일반수용비(260-01): 1,320만원(110만원×12개월)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일반회계-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수사기획관)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도입에 있어 기관에 제보되는 정보의 특성과 운영 통제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 정보 보안 등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등의 고위공직자범죄는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중요함.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9]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지원기능을 갖춘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이에 따라 공수처는 외부 전문기관[10]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부고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시스템 이용 수수료(월 11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민감한 내부 정보로서 엄격한 보안조치가 필요하고 데이터 운영·관리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수처가 보유[11]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부위탁 방식으로 신고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고발자 보호, 신고 처리의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관리·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12]

따라서 공수처는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의 특성과 운영 통제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 정보 보안 등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9)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국내 비실명 외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외부전문기관은 레드휘슬(주)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케이휘슬(K-Whistle)) 등이 있음.

11) 공수처에 따르면,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을 공수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스템을 직접 운영 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0억 원 이상(2025. 10. 16.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시 '청렴포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소요되므로, 외부 위탁을 통해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실적 및 실효성 평가 등을 통해 공수처가 직접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12) 공수처는 국내 비실명 내부고발시스템과 다르게 독립된 서버(Cloud)를 이용하여 재설계 및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고, 방화벽과 24시간 보안관제 시스템을 통해 외부 침입을 실시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함(독일·오스트리아 검찰 등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외부 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범죄 정보 수집 및 수사에 활용).

헌법재판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은 2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0.4%) 증가함.[1)]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44	2.44	2.45	0.01	0.4
총수입	2.44	2.44	2.45	0.01	0.4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은 621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500만원(6.3%) 증가함.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84	584	621	37	6.3
총지출	584	584	621	37	6.3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 예산안은 2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0.4%) 증가함.

[2026년도 헌법재판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44	2.44	2.45	0.01	0.4
합 계	2.44	2.44	2.45	0.01	0.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621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500만원(6.3%) 증가함.

[2026년도 헌법재판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84	584	621	37	6.3
합 계	584	584	621	37	6.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신규사업[2]은 없음.

한편,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으로 총 1개임.[3]

[2026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307	2,491	2,184	711.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헌법재판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주요사업비 중 정보화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주요사업비 10개 세부사업 중 정보화 사업은 2개인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비(190억원) 중 정보화 사업비(109억원, 57.3%) 비중이 높은 편임.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데이터 특성, 보안환경 및 시스템 운영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클라우드 운영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신규): 기관 특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이버위협 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망분리 환경 구축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전자도서관 운영(정보화)	307	307	2,491	2,184	711.4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	2,230	2,230	순증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	470	470	순증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2026년부터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4단계 중 1단계를 추진할 계획임.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사업은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도서관업무시스템 고도화, 전자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전거통제시스템[5)] 구축사업으로 구성됨.

---

4) 일반회계-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1035-501)(도서총괄심의관)

5) 전거통제시스템은 도서 목록의 이름, 주제, 표제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색하는 시스템임.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망문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4억 7,000만원 - 상용 SW 및 HW 도입: 4억 7,000만원 ・망연계 시스템: 1억 3,000만원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3억 4,400만원 (HW) 서버(x86) 6대: 1억 2,000만원, 스토리지(NAS 200TB) 2대: 1억원 (SW) DBMS(Oracle Std.) 이중화 구성 2식: 8,000만원, VMware 서버 구성 2식: 4,400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데이터 특성, 보안환경 및 시스템 운영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클라우드 운영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기존에 외부망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던 도서관 업무시스템을 보안정책에 따라 내부망 및 외부망 분리 구조로 재편하여 사이버 보안성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2015년부터 도서관 업무시스템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시스템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례 평석, 원문열람기록 등 재판소의 중요 자료를 저장하는 도서관 업무시스템은 단독으로 외부망에서 운영되어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음.[6)]

또한, 헌법재판소는 도서관 업무시스템 망분리 사업 외에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7)]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8)]

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전성,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그러나 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도서관 업무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9]을 획득한 공공도서관 업무시스템은 패키지형 시스템으로 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법률 정보 제공 등과 같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10]

이와 같이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제공하게 될 도서관 업무시스템 이용에 있어 보안 인증 등의 문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관의 데이터 특성, 보안환경 및 시스템 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 운영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및 관련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친화적 구조[11]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8) 정부는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제시함.

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보안성 기준)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0) 이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동의하는 입장임.

11) 클라우드 친화적 구조(Cloud Friendly Architecture)란 기존 내부 서버 중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로, 클라우드 자동 확장(Auto-Scaling), 가상화, 컨테이너 기반 배포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구조를 말함.

2.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사업(신규): 조사결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세부이용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사업은 헌법재판소 청사 내 장기 미사용 중인 테니스장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기초조사로서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본부운영지원	4,292	4,292	4,033	△259	△6.0
청사 환경개선공사	1,154	1,154	476	△678	△58.8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	-	252	252	순증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사업

- 공사비(420-03)
  - · 발굴부지 철거 3,000만원
  - · 시굴조사비 1,851만원
  - · 발굴조사비 1억 8,028만원
  - · 포장공사비 2,121만원
- 시설부대비(420-05) 200만원(2억 5,000만원×0.72%)

자료: 헌법재판소

12) 일반회계-본부운영지원(1032-302)(행정관리국)

[헌법재판소 테니스장 면적]

■ 테니스장 면적
612㎡ (코트 1면, 파고라, 야외테이블)

- 활용계획(안)
  ·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 높이: 10m
  · 연면적: 930㎡
  지하1층 340㎡(회의실, 휴게실),
  지상1층 250㎡(사무실), 지상2층 340㎡(사무실)
  · 수용규모: 4~5과 사무실, 45명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청사 내 테니스장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지의 이용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장유산 조사의 진척상황과 연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향후 세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청사 내 장기 미사용중인 테니스장 부지(612㎡)를 청사 증축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테니스장 부지는 국가지정유산(백송·윤보선가옥 100m 이내)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해야 함.

매장유산 조사의 절차는 발굴부지 철거, 시굴조사,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포장공사 순으로 진행하게 되며, 매장유산의 발굴 여부에 따라 정밀발굴 등 후속 조치로 인하여 매장조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026년 테니스장 매장유산 조사 예산으로는 시굴조사비 1,851만원, 발굴조사비 1억 8,028만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이 될 경우 정밀발굴이 수행되고 정밀발굴 후 중요 유구가 확인될 경우 보존조치 유적 심의와 보존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조사 대상지의 유적 분포 상태에 따라 조사 기간 및 소요 비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테니스장 활용을 위한 매장유산 조사 추진 일정 및 소요 비용(안)]

구분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비고
발굴부지 철거	2026. 3.	3,000만원	
시굴조사	2026. 4. ~ 5.	1,851만원	유구 확인 시 정밀발굴, 미확인시 공사 진행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2026. 6. ~ 9.	1억 8,028만원	중요 유구 발굴시 보존조치 및 계획 수립
포장공사	2026. 10.	2,121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매장유산 조사 후 유물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테니스장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런데 매장유산 조사는 해당 토지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헌법재판소 청사 공간 과부족 현황, 향후 필요면적 및 수급 계획과 면밀히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부지 이용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유기적으로 매장유산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1조 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5억원(13.2%) 증가함. 예산은 8,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17억원(9.8%) 증가하고, 기금은 2,8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원(23.8%) 증가함.[1)]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7,299	7,299	8,016	717	9.8
기 금	2,308	2,308	2,856	548	23.8
총수입	9,607	9,607	10,872	1,265	13.2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2조 5,0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8억원(8.1%) 증가함. 예산은 2조 3,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원(5.4%) 증가하고, 기금은 1,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4억원(66.4%)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2,077	22,077	23,261	1,184	5.4
기 금	1,046	1,046	1,740	694	66.4
총지출	23,123	23,123	25,001	1,878	8.1

나. 예산안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8,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6억원(8.0%) 증가함.

[2026년도 대법원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028	5,028	5,555	527	10.5
등기특별회계	2,786	2,786	2,885	99	3.6
합 계	7,814	7,814	8,440	626	8.0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2조 3,7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1억원(5.4%) 증가함.

[2026년도 대법원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9,776	19,776	20,888	1,112	5.6
등기특별회계	2,786	2,786	2,885	99	3.6
합 계	22,562	22,562	23,773	1,211	5.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대법원 소관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0억원(46.6%) 증가함.

[2026년도 대법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3,903	3,903	5,722	1,820	46.6
합 계	3,903	3,903	5,722	1,820	46.6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64억 6,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이 중 정책연구원 인건비, 정책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소속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각각 60억원,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법원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정책연구원 인건비	6,000
2	정책연구원 기본경비	460
총지출		6,46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대법원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사법업무 전산화사업 등 총 5개임.[3)]

[2026년도 대법원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사법업무전산화	72,740	82,846	10,106	13.9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3,000	30,177	7,177	31.2
3	전문재판운영	2,296	25,196	22,900	997.4
[등기특별회계]					
4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042	28,125	7,083	33.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	국선변호료지원	24,598	94,617	70,019	284.7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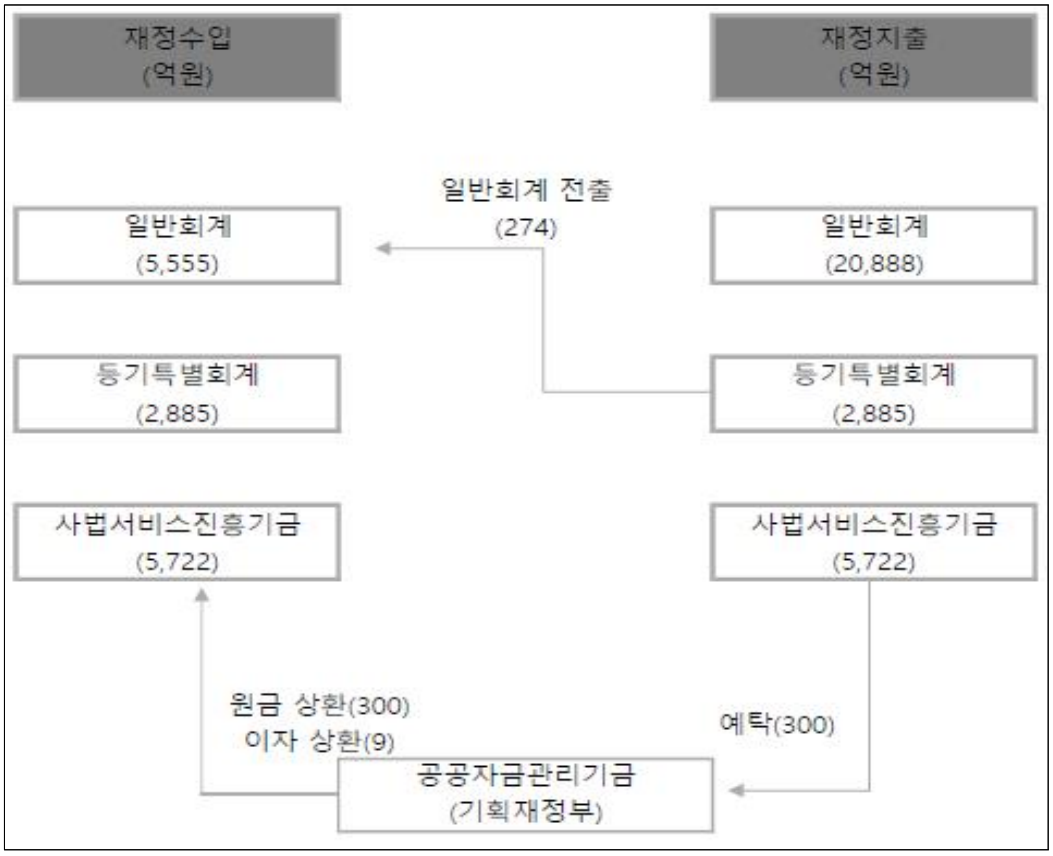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대법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74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이 예탁될 계획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원금 300억원, 이자 9억원이 상환될 계획임.

[2026년도 대법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보안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서울회생법원을 이전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또한, 통합도산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을 증액 편성하여 파산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할 예정임.

2029년까지 법관 370명이 증원됨에 따라 법정 등 재판 필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법부 공간 최적화 및 재판 필수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하여 노후 CCTV를 교체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한편,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중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등 세부사업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하였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액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바, 대법원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요청 단계부터 경상경비로 한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2026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실성 있는 유지보수비 산출 방식인 기존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민간 출연금’ 은 2025년 말 「공탁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2026년부터 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에 대한 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의 출연 규모를 면밀하게 예측하여 안정적인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정책연구원 인건비 사업(신규): 정책연구원의 인력운영에 유의할 필요

가. 개 요

‘정책연구원 인건비’ 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소속 직원들의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정책연구원 인건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책연구원 인건비	-	-	6,000	6,000	순증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 인건비는 대법원 산하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2026년부터 ‘정책연구원 인건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소속기관인 정책연구원의 인건비를 분리 편성・집행함에 있어, 증액된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현원 관리 등 인력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일반회계-정책연구원 인건비(7002-161)(정책연구원)

대법원은 2025년까지 정책연구원 인건비 지급은 본부 인건비와 통합 편성하여 본부 인건비에서 지급하였으나, 2026년부터 대법원 산하 다른 소속기관 동일하게 정책연구원 인건비를 별도 인건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임.

최근 3년간 정책연구원의 인건비 예산 배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0억 5,700만원, 2023년 52억 6,500만원 및 2024년 51억 4,600만원이며 집행액은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대법원이 제출한 2025년 인건비 예상 배정액은 5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00만원(12.7%)이 증가한 규모인데, 이는 2025년 상반기 인력 7명 증원(법관 3명, 전문임기제 4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정책연구원 인건비 예산 배정액 및 집행액: 2022~2026(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9.	2026(안)
배정액(예산액)	5,057	5,265	5,146	5,802	6,000
집행액	5,049	5,265	5,146	4,239	-

자료: 대법원

2026년 정책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은 2025년 증원된 인원을 포함한 현원 62명(법관 13명, 전문 임기제 10명, 일반직 39명) 및 직제 개정을 통하여 증원될 전문임기제(가급) 1명[5]을 포함한 총 63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연구원의 인력 운영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5~7명이 부족하게 운영되어 인건비 집행액이 평균 52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그러나 2026년 인건비는 7명의 인력 증원(2025년) 및 신규 채용 1명 인건비를 모두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 편성 규모가 2024년 집행액에 비해 8억 5,400만원(증가율 16.6%)이 증가하게 된 것임.

이처럼 과거 정책연구원 인력 운영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인력 증원이 크게 발생한 2025년을 기준으로 2026년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성된 인건비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본부 인건비에 함께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 재배정을 통한 효율적 집행도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 2026년 전문임기제(가급) 1명의 인건비 예산은 6개월분임.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정책연구원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현원 관리 등 인력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17.8%) 감액된 9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가족관계등록사무	11,479	11,479	9,351	△2,128	△18.5
자치단체 보조금	11,237	11,237	9,237	△2,000	△17.8

이 사업은 1,572개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2,155개 동사무소에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신고의 기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절차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추진에 필요한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시・읍・면의 장 등 사업 수행 기관이 대법원에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예산・세부내역 등)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됨.

나. 검토의견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액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바, 대법원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요청 단계부터 경상경비로 한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일반회계-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사법등기국)

대법원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인건비 및 경상경비)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재정당국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는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인건비성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부터 지자체 보조금 지원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액은 2020년 203억원에서 2025년 112억 3,700만원으로 90억 6,300만원(△44.6%)이 감소하였고, 2026년 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2025년 예산액 112억 3,700만원에서 20억원을 일괄 삭감하여 9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예산액(안): 2008~2026년(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연평균 증감율
2008 ~ 2019	20,500	-
2020	20,300	△0.98
2021	16,600	△18.23
2022	14,940	△10.00
2023	14,193	△5.00
2024	14,193	-
2025	11,237	△20.83
2026(안)	9,237	△17.80

자료: 대법원

이 사업은 수행 기관이 교부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한 후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억 8,500만원, 2023년 5억 7,600만원, 2024년에는 반환예정금액이 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2년까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액을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구분하여 집행액을 보고하였는데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집행액은 각각 99억 8,900만원(68%), 46억 9,100만원(32%)으로 2022년 기준으로 인건비 집행액 규모가 경상경비 집행액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2023년 이후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나, 감액 편성된 2026년 예산액이 2022년의 경상비의 2배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정액	집행액			잔액	이자	반환금액
		인건비	경상경비	합계			
2022	14,940	9,989	4,691	14,680	260	24	285
2023	14,193	-	-	13,662	531	45	576
2024	14,193	-	-	13,837	356	46	401

자료: 대법원

따라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인건비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산 대비 상당부분 집행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인건비성 경비(기간제・대체인력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실제 소요되는 경상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등기특별회계】

<세 출>

3.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기존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유지보수비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 관련 장비(HW 및 상용 SW)에 대한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2,400만원(245.0%) 증액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042	21,042	28,125	7,083	33.7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361	16,361	27,841	11,480	70.2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418	418	1,442	1,024	245.0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관리용역비 14억 4,200만원
- HW 유지보수: 2억 8,100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11억 6,100만원

자료: 대법원

7) 등기특별회계-미래등기시스템 구축(1334-307)(사법등기국)

나. 검토의견

2026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실성 있는 유지보수비 산출 방식인 기존 유지보수 계약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2025년 1월에 미래등기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는 시스템 개발에 따른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일을 기준으로 무상하자보수 기간(1년) 이후부터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2025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예산은 4억 1,800만원으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계약(계약액 3억 8,800만원, 2025. 6. 5.)을 수행하였음.

[2025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계약액	집행액 (2025. 8월말 기준)	집행률	계약일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418	388	-	-	2025. 6. 5.

자료: 대법원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유지보수비 산정 시 장비 취득가액에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면 현실성 있는 유지보수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최신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8)]

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안 편성을 전산장비 도입 당시 장비가격에 유지보수율(HW 유지보수율 8%, 상용 SW 유지보수율 15%)을 그대로 적용하여 HW 유지보수비는 2억 8,100만원, 상용SW 유지보수비는 11억 6,100만원 등 총 1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0억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발완료일을 기준으로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2026년 예산에 신규로 포함되는 2022년 상용 SW 도입분(1억 7,800만원), 2023년 상용SW 도입분(5억 9,100만원)과 2024년 도입한 HW(1억 1,800만원) 및 상용SW 도입분(1억 3,700만원)을 반영한 것임.

8)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산정은 기존 유지관리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2026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2025년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장비 도입금액에 유지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최신 유지보수 계약인 2025년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도입 년도	HW/ 상용SW		무상하자 보수 기산점	도입 금액	요율	2025년 유지보수비 예산액 (계약액주)	2026년 유지보수비 예산안
2022	HW		장비도입일 부터 1년	-	-	-	-
	상용SW	Oracle 장비	장비도입일 부터 1년	85	15%	13 (12)	13
		그 외 상용SW	미래등기 전국 오픈일로 부터 1년	1,189	15%	-	178
2023	HW		장비도입일 부터 1년	2,037	8%	163 (151)	163
	상용SW	Oracle, VMware 장비	장비도입일 부터 1년	1,612	15%	242 (225)	242
		그 외 상용SW	미래등기 전국 오픈일로 부터 1년	3,941	15%	-	591
2024	HW		장비도입일 로부터 1년	1,470	8%	-	118
	상용SW		장비도입일 로부터 1년주)	916	15%	-	137
합계						418 (388)	1,442

주) 2025년 전산장비 항목별 계약금액은 유지보수 계약금액(3억 8,800만원)을 총액비율로 산정한 금액임
자료: 대법원

따라서 2025년 유지보수 계약이 이루어진 HW 및 SW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반영하고, 신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도 요율대비 과거 낙찰율(2025년 실적은 92.8%)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 입>

4. 민간출연금: 법원보관금 출연금의 면밀한 산정 필요

가. 개 요

‘민간출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출연받는 자금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547억 9,800만원(23.8%)이 증액된 2,84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민간출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민간출연금	229,942	229,942	284,740	54,798	23.8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 민간출연금 수입액은 공탁 출연금 2,447억 4,000만원과 2025년 말「공탁법」개정을 전제로 반영한 신규 법원보관금 출연금 40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됨.

[민간출연금 계획안 세부내역]

○ 민간출연금 2,847억 4,000만원

- 공탁 출연금: 2,447억 4,000만원

  공탁금 평균잔액은 2025년 1~3월까지의 각 은행별 평균잔액으로,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마진율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2025년 예상치를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

- 법원보관금 출연금(신규) = 400억원

  2023년도의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현재의 공탁출연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

자료: 대법원

9) 사법서비스진흥기금-민간출연금(59-594)(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2025년 말 「공탁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2026년부터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에 대한 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의 출연 규모를 면밀하게 예측하여 안정적인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2026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으로 공탁금 운용수익금 이외에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공탁법」을 개정할 계획임.[10]

공탁금의 경우에는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운용수익금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을 받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 경매대금, 각종 보증금 및 집행 관련 금액 등으로 공탁금과 달리 보관금의 입금, 환급, 출납 및 국고 귀속 등의 처리 절차가 짧고 법원과 보관은행이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차이가 있음.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비교]

구 분	공탁금	법원보관금
법적근거	「공탁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목적	채무 변제, 담보, 집행 등 법적 효력 확보	소송진행, 경매, 입찰 등 사건운영에 필요한 금액
종류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민사예납금, 경매대금, 입찰보증금, 송달료 등
출연금 규모	약 2,500억원	약 400억원

주) 공탁금 출연금 규모는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25년 말 「공탁법」 개정을 전제로 2026년 법원보관금 출연금액을 공탁금 출연금액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공탁금 출연금 산정방식은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에 따라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임.

10) 대법원은 「공탁법」 제19조(출연금)에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하여 공적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규정할 계획으로, 2025년 9월 현재 정부입법으로 발의 예정임.

법원보관금은 공탁금과 달리 단기간으로 은행에 보관되고, 공탁금 잔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출연률도 법원보관금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보관기간이 짧아 보관은행별 수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출연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공탁금 출연금은 연 2회(1월, 6월) 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보관금은 회전주기 및 금액 체류기간이 단기간으로 연 2회 출연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출연규모가 적어질 수 있어 출연 시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1)]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출연 규모 산정 시 법원보관금의 회전주기, 보관 기간 및 보관은행별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재원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공탁금 운용수익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평균 잔액(A)	8,727,643	9,198,169	10,520,245	11,125,709	10,918,539
운용수익금	271,860	241,840	248,206	353,123	490,732
이자비용	30,547	20,263	10,521	18,168	38,210
포괄이윤	142,841	136,928	161,729	196,230	192,179
출연금 한도 초과[주)]	7,023	647	426	37,831	118,793
출연금(위원회)	91,449	84,002	75,530	100,894	141,550
민간출연금	91,499	84,002	75,530	100,894	141,550

주) 2025년부터 출연금 한도 초과분은 삭제됨
자료: 대법원

[법원보관금 평균 잔액]

(단위: 백만원)

구분	연말 누적잔액	평균잔액
2022	1,290,414	1,731,755
2023	1,761,818	1,695,936
2024	2,340,979	2,291,891
2025. 8.	2,836,123	2,721,289

자료: 대법원

11) 2025년 10월 현재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법원보관금 출연금 산정 모형연구’)을 수행하고 있음.

<지 출>

5.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미지급 이월금 일시 지급 등 급격한 지출 증가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구속영장심문을 받은 피의자,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700억 1,900만원(284.7%)이 증액된 94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선변호료 지원	24,598	24,598	94,617	70,019	284.7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일반 국선변호 지원)을 2026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국선전담 지원)으로 이관하여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임.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2026년 계획안 세부내역]

○ **일반 국선변호 보수 등**

- 국선변호 보수 등: 685억 7,000만원

○ 국선전담 국선변호 보수 등

- 국선변호 보수 등: 260억 4,700만원

자료: 대법원

12) 사법서비스진흥기금-국선변호료 지원(1161-307)(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일반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일반 국선변호료의 미지급 이월금(225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685억 7,000만원을 계획액에 반영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국선 변호료 지급에 대한 집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일반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의 최근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일반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는 2021년 98,209건에서 2024년 131,915건으로 33,706건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국선변호료의 이월 집행액도 2021년 4억 9,700만원에서 2025년 225억 6,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일반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 및 국선변호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선변호료 예산	61,567	61,000	65,329	69,884	24,598
국선변호료 결산(집행액)	58,133	60,586	65,285	69,872	-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 (일반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98,209	102,604	118,491	131,915	-
이월 집행액	**497**	**476**	**2,815**	**9,486**	**22,566**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26년 일반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일반 국선변호료 미지급액 225억 6,600만원을 포함한 685억 7,000만원을 계획액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이 국선변호료 미지급금을 일시에 기금으로 이관·집행할 경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국선 변호료 지급에 대한 집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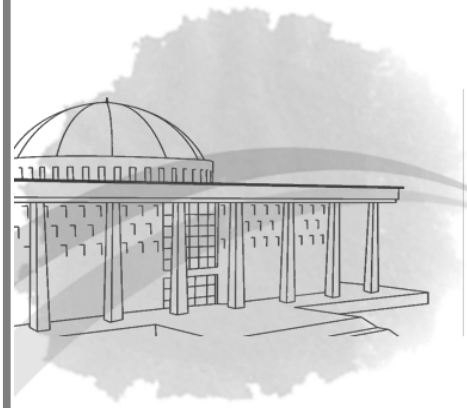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2026년 일반 국선변호료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내역
국선변호료	일반국선	형사공판	▪ 48,351 → 60,478 (증 12,127) (100,945건×599,120원(평균지급액))
		구속영장	▪ 2,558 → 2,249 (△309) (20,678건×108,765원(평균지급액))
		치료감호 및 체포·적부심	▪ 194 → 150 (△44) (1,394건×107,560원(평균지급액))
		인신보호	▪ 494 → 435 (△59) (863건×504,628원(평균지급액))
		소년사건	▪ 1,722 → 1,527 (△195) (5,690건×268,312원(평균지급액))
		2024년 미지급 이월금	22,566
		제도개선 절감액	△18,840 ▪ 국선변호인 제도개선에 절감액 △15,216 ▪ 국선전담변호인 20명 증원 절감액 △3,624
		소 계	68,565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비용		5 ▪ 10건×500,000원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5 - 1건당 50만원 이하 금액 지원
합계			68,570

자료: 대법원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8	2.8	2.8	-	-
총수입	2.8	2.8	2.8	-	-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은 8,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6억원(24.8%) 증가함.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713	6,713	8,378	1,666	24.8
총지출	6,713	6,713	8,378	1,666	24.8

나. 예산안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억 8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8	2.8	2.8	-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	-	-	-
합 계	2.8	2.8	2.8	-	-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7억원(24.8%) 증가함.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591	6,591	8,127	1,536	23.3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124	124	255	131	106.0
합 계	6,715	6,715	8,382	1,667	24.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36억 3,5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사업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3,635
총지출		3,63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등 총 17개임.[3)]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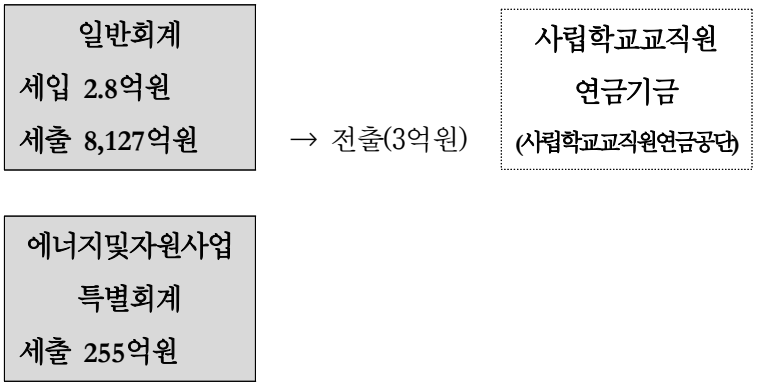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989	2,830	841	42.3
2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4	9,354	2,320	33.0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049	6,564	1,515	30.0
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628	2,230	1,602	255.1
5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1,958	2,558	600	30.6
6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70	1,191	621	108.9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16,429	21,504	5,075	30.9
8	국토연구원(R&D)	24,323	35,443	11,120	45.7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R&D)	15,665	27,320	11,655	74.4
10	통일연구원(R&D)	9,014	11,932	2,917	32.4
11	한국개발연구원(R&D)	65,741	82,818	17,077	26.0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	26,021	38,483	12,462	47.9
13	한국교통연구원(R&D)	18,505	30,138	11,633	62.9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R&D)	17,071	22,919	5,848	34.3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	21,103	31,267	10,164	48.2
16	한국환경연구원(R&D)	22,900	30,282	7,382	3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	에너지경제연구원(R&D)	12,374	25,486	13,112	106.0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정부출연금과 인건비·기본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73개 세부사업 중 28개가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8,382억원 중 7,076억원(84.4%)임.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은 1,305억원인데,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65억원으로 58.6%의 비중을 차지함.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PBS가 폐지되고 인건비·경상비 전액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개별 기관 및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간 평가 및 연구자 개인에 대한 평가체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 제고 유인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6년도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사업일정의 경우 예산안 추계의 기초가 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를 고려하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일정, 토론 진행 및 예산 집행 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은 회의 참석 인원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의 적정 비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할 연구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부 연구 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사업 및 국무조정실이 수행하는 연구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구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연구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PBS 폐지 및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수입은 자체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수탁연구사업수입·정부대행사업수입·이자수입 등으로, 정부출연금의 경우 인건비·경상비·기관고유사업비·일반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경상비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가 적용되어,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경상비 중 일부만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개별 연구 과제 수주 등 자체수입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였음.

PBS는 경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연구기관들이 인건비·경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기관 본연의 업무보다 외부 연구 과제 수주에 몰입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4].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를 폐지하고, 기존에 연구기관들이 자체수입을 통해 충당하던 인건비·경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정부가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연구사업비도 출연금 내 '정부지원사업' 항목으로 이관하는 등 정부출연금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경상비 등이 대폭 증액되어, 2025년(5,454억원) 대비 1,622억원(29.7%) 증가한 7,076억원이 편성되었음.

---

4) [PBS 제도, 폐지 vs 근본 개선?] (산업일보, 2018. 12. 14.)
[연구 몰입 방해하는 PBS 개선·폐지 목소리 지속] (충청투데이, 2022. 11. 1.)
[연구경쟁력 옥죄는 PBS…탈출구가 안 보인다] (동아사이언스, 2023. 3. 6.)

[2026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C/A)	비고
인건비	342,567	473,878	131,311	38.3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처우개선분(3.5%)
경상비	56,132	72,020	15,888	28.3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사업비	149,748	166,187	17,439	11.5	
기관고유사업	56,232	56,632	400	0.7	
일반사업	89,840	107,756	17,916	19.9	정부지원사업(229억원) 지출구조조정 감액 등
ODA	3,676	2,799	△877	△23.9	
출연금 대체	△3,055	△5,447	△2,392	78.3	이월금 자체수입 대체
계	545,392	707,638	162,246	29.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은 한국개발연구원(139억 5,20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131억 1,2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124억 6,2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고, 증가율은 에너지경제연구원(106.0%), 정보통신정책연구원(74.4%), 한국교통연구원(62.9%) 등의 순으로 높았음.

[2026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기관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C/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122	24,215	2,093	9.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123	21,504	4,381	25.6
국토연구원	24,323	35,443	11,120	45.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340	35,521	4,181	13.3
산업연구원	23,973	30,230	6,257	26.1
에너지경제연구원	12,374	25,486	13,112	106.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665	27,320	11,655	74.4
통일연구원	9,015	11,932	2,917	32.4
한국개발연구원	47,316	61,268	13,952	29.5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C/A)
KDI국제정책대학원	21,407	22,929	1,522	7.1
한국교육개발원	22,079	28,624	6,545	2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021	38,483	12,462	47.9
한국교통연구원	18,505	30,138	11,633	62.9
한국노동연구원	16,244	21,017	4,773	2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071	22,919	5,848	34.3
한국법제연구원	15,154	17,898	2,744	1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786	29,578	5,792	24.4
육아정책연구소	8,503	9,536	1,033	1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933	19,549	2,616	1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278	47,360	9,082	23.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586	28,923	5,337	2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50	11,518	1,168	1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103	31,267	10,164	48.2
한국행정연구원	14,292	16,515	2,223	15.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688	14,135	447	3.3
한국환경연구원	22,900	30,282	7,382	32.2
건축공간연구원	12,241	14,048	1,807	14.8
계	545,392	707,638	162,246	29.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나. 검토의견

첫째, PBS가 폐지되고 인건비・경상비 전액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개별 기관 및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간 평가 및 연구자 개인에 대한 평가체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 제고 유인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PBS는 연구자의 외부 연구 과제 수주 몰입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 과제 수탁 성과에 따라 인건비·경상비를 지원받는 유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연구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지니고 있었음.

PBS의 폐지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고유연구사업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으나, 더 이상 외부 연구 과제의 수주에 따른 인건비·경상비 지원의 유인을 느끼지 못하므로 정부의 정책수요를 비롯한 외부의 연구 수요가 기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인건비·경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부 등의 연구 수요가 기관에 충분히 반영되고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대상자 간 차등화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 및 정부정책 수요 대응력 강화 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먼저 연구기관 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기관 평가 등급 수는 총 5개(S~D)이지만 2022~2024년 평가 결과가 A~B에 집중되는 등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음. S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C등급을 받는 기관 수 또한 매년 2~3개 수준에 그쳤음.

[2022~202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	2023	20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B	C	B
국토연구원	A	A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	B	A
산업연구원	C	B	C
에너지경제연구원	B	B	B
정보통신정책연구원	B	B	B
통일연구원	B	B	B
한국개발연구원	B	B	B
KDI국제정책대학원	C	B	B

기관명	2022	2023	2024
한국교육개발원	B	B	B
한국교육과정평가원	B	B	B
한국교통연구원	A	B	B
한국노동연구원	B	B	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	C	B
한국법제연구원	B	B	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	A	A
육아정책연구소	C	B	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	A	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	A	B
한국직업능력연구원	B	B	B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	B	B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	A	B
한국행정연구원	B	B	B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B	B	C
한국환경연구원	A	B	A
건축공간연구원	A	A	A
계	A 5개, B 18개, C 3개	A 6개, B 18개, C 2개	A 5개, B 19개, C 2개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다음으로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일부 기관 연구자의 평가 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등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음. 예컨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B등급에 80%의 인원이, 육아정책연구소는 B등급에 90% 이상의 인원이 배분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PBS 폐지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사실상 평가체계가 개별 연구자의 연구 성과 제고 유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연구자 간 평가 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된 주요 사례]

기관명	편중 내용
통일연구원	보직자의 경우 A+, A, B+ 등급 중 B+ 등급에 70%의 인원을 배분
한국교통연구원	S~D 등급 중 B등급에 55%의 인원을 배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C 등급 중 B등급에 80%의 인원을 배분
한국환경연구원	S~D 등급 중 B등급에 60~80%의 인원을 배분
육아정책연구소	A~C 등급 중 B등급에 90% 이상의 인원을 배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평가 및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체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PBS 폐지 이후에도 연구성과 제고 유인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책연구의 시의성・대응성 제고를 위해 편성된 수시연구사업비의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단계 중에 있는데, 기관별 집행실적의 편차가 크고 신설된 정부지원사업 항목과 실질적으로 내용 및 취지가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수시연구사업비와 정부지원사업 항목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의 시의성・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수시연구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음.[5)]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수시연구사업이란 기관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를 의미함.

한편, PBS의 폐지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더 이상 외부 연구 과제의 수주에 따른 인건비・경상비 지원의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는 예산 심

5)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이월 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수시연구과제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수요가 기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연구사업비를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20%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202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산업연구원(55%), 통일연구원(44%), 한국개발연구원(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 한국법제연구원(62%), 한국행정연구원(6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67%) 등 7개 기관이 70% 미만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음.

[2024년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수시연구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4년 결산			2025. 8.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C)	집행액(D)	집행률(=D/C)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3	126	95	144	58	40
국토연구원	165	154	93	154	35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7	139	89	198	116	59
산업연구원	450	246	55	353	117	33
에너지경제연구원	135	128	95	93	64	6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20	100	19	-	-
통일연구원	91	40	44	123	15	12
한국개발연구원	89	22	25	92	54	59
KDI국제정책대학원	-	-	-	-	-	-
한국교육개발원	148	148	100	165	52	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41	441	100	159	91	57
한국교통연구원	56	56	100	97	21	22
한국노동연구원	148	140	95	106	10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0	42	20	120	120	100
한국법제연구원	181	112	62	208	48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	116	81	145	49	34
육아정책연구소	102	95	93	145	57	3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	91	81	98	54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9	57	72	70	56	8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1	116	82	171	52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2	51	98	70	9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9	109	100	101	41	40
한국행정연구원	247	151	61	216	108	5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6	84	67	98	31	32
한국환경연구원	157	157	100	125	78	62
건축공간연구원	102	95	93	96	51	53
계	3,791	2,936	77	3,366	1,387	4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한 정부가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연구사업비를 출연금 내 '정부지원사업' 항목으로 이관하고 해당 항목 내에서 유관부처가 언제든 정책수요에 따라 총액 한도 내

에서 연구과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수시연구사업과 정부지원사업 항목 간 실질적으로 내용 및 취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내용 및 취지가 유사한 수시연구사업비와 정부지원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구실적을 기관별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신규): 구체적 사업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가. 개 요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은 숙의 공론화기구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	-	3,635	3,635	순증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는 ‘의제선정위원회’와, 선정된 공론화의제에 대해 숙의 공론화단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맞춰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또한 ① 의제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임차료・사업추진비, ②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임차료・일반용역비・사업추진비 및 정책연구비 등으로 구성되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제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30명의 위원과 12회의 회의 개최를 전제로 회차별 참석수당・안건검토수당・회의자료 인쇄비 및 회의장 임차료 등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10명의 위원과 5개월의 활동 기간, 월 2회 회의 개최를 전제로 회차별 참석수당・안건검토수당・회의자료 인쇄비・홍보비・버스 및 회의장 임차료 등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6) 일반회계-숙의공론화기구 운영(7032-302)(국정운영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활용하여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나,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운영 당시 활용된 '공론조사'에 소요된 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즉, 2017년 공론조사와 유사하게 2만명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는 방식을 전제로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의제선정위원회: 1억 3,500만원 - 일반수용비 1억 1,200만원, 임차료 1,200만원, 사업추진비 1,100만원 등 * 일반수용비: 참석수당·안건검토수당 1억 800만원(= 30만원 × **30명** × **12회**), 자료인쇄비 등 ○ 공론화위원회: 35억원 - 일반수용비 5억 1,100만원, 임차료 4억 5,200만원, 일반용역비 20억 9,000만원, 국내여비 7,600만원, 사업추진비 8,700만원, 정책연구비 5,000만원, 공사비 5,000만원 등 * 일반수용비: 참석수당 2억 9,000만원, 안건검토수당 2,000만원, 홍보비 1억 6,000만원 등 (참석수당: 공론화위원회 2,000만원(= 20만원 × **10명** × **2회** × **5개월**), 전문가 자문 간담회 2,000만원(= 20만원 × **10명** × **2회** × **5개월**), 시민참여단 2억 5,000만원(= 10만원 × **500명** × **1회** × **5개월**)) * 일반용역비: 행사운영 18억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 생방송 토론회 1억 5,000만원 등 (행사운영: 여론조사 10억원(= 5만원 × **2만명**), 1박2일 토론회(= 2억 4,000만원 × **1회**), 1일 토론회 6억원(= 1억 5,000만원 × **4회**))

자료: 국무조정실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집행액(2017년)과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2026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비목	내역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A)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B)	차이(=B-A)
일반수용비	온·오프라인 공론화 홍보	384	160	△224
	사례금	106	418	312
	회의자료 인쇄, 지원단 사무용품 등	105	45	△60
	저작권료, 소송비, 번역료 등	71	-	△71
임차료	지원단 사무실 임차	103	60	△43
	전산 및 사무장비, 토론회장, 버스 등	74	403	329
일반용역비	여론조사, 토론회, 홈페이지 구축 등	2,603	2,090	△513
기타 비용	상용임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고용부담금, 공사비, 무형자산 등	281	459	178
계		3,727	3,635	△92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2026년도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사업일정의 경우 예산안 추계의 기초가 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를 고려하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일정, 토론 진행 및 예산 집행 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에 활용된 예비비 규모를 바탕으로 추계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숙의공론화를 진행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1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다음, 선정된 의제에 대해 공론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5개월의 숙의와 5회의 토론회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었고, 시민배심원단 토론회는 2박 3일 1회만 진행하는 한편 1일차와 3일차에 각각 3차 공론조사와 4차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등 총 5개월 가량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계획보다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일자	주요 내용
6. 27.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 추진 결정(국무회의)
7. 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
7. 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7. 27.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 및 규모 확정
8. 24.	공론조사 수행업체 선정
8. 25. ~ 9. 9.	1차 공론조사
9. 13.	시민참여단 500명 선정
9. 16.	2차 공론조사
10. 13. ~ 15.	2박 3일 토론회, 3차 공론조사(10. 13.), 4차 공론조사(10. 15.)
10. 20.	권고안 제출 및 공론화위원회 해산

자료: 국무조정실

따라서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공론화위원회가 예산안 추계 과정에서 참고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하게 활동하는 경우, 약 2개월 분량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5회의 토론회 참여 시 매번 교통편을 활용하여 원거리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하는 계획은, 왕복 1회의 교통편 활용만으로도 모든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일정보다 참석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이 사업은 예측불가능성·시급성 등으로 인해 예비비를 활용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본예산을 활용하여 의제선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본예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핵심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바,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일정, 토론 진행 및 예산 집행 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 국정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97	197	197	-	-

이 사업의 추진체계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초에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이행상황을 자체점검하는 한편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고함. ②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점검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분기별 전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함. 추가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연간 추진 성과 자료집을 제작·배포함. ③ 대통령실은 연초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연도별 추진성과를 검토·확인함.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간행물·소책자 인쇄 비용, ② 국정과제 이행 점검에 필요한 여비 및 사업추진비, ③ 성과보고회 관련 인쇄비 및 회의용 물품 구입비 등이 포함됨.

7) 일반회계-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7031-301)(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일반수용비: 1억 3,200만원**
- 간행물 등 인쇄(5,500만원), 전문가 등 의견수렴(2,400만원), 성과보고회(2,700만원), 홍보비(2,000만원) 등
ㅇ 임차료: 1,500만원
ㅇ 국내여비: 3,200만원
ㅇ 사업추진비: 1,8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첫째,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매년 일반수용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일반수용비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최근 3년간 일반수용비 세부 항목별 예산액·집행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문가 등 의견수렴’, ‘성과보고회 관련 자료 제작’ 등 항목의 예산액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등 의견수렴’ 항목은 2023년 이후 매년 4,992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905만원(2023년), 255만원(2024년), 60만원(2025년 8월말)에 불과하였음.

‘성과보고회 관련 자료 제작’ 항목은 2023년 이후 6,000만원(2023년), 5,144만원(2024년), 2,488만원(2025년)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607.2만원(2023년), 275만원(2024년)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에는 8월말까지 예산액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

[최근 3년간(2023~25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 내역]

(단위: 원, %)

세부항목명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국정과제 관련 간행물·소책자 등 인쇄	2023	16,400,000	39,284,320	239.5
	2024	16,400,000	53,802,000	328.1
	2025. 8.	37,000,000	24,121,940	65.2
전문가 등 의견수렴	**2023**	**49,920,000**	**9,050,000**	**18.1**
	2024	**49,920,000**	**2,550,000**	**5.1**
	2025. 8.	**49,920,000**	**600,000**	**1.2**
성과보고회 관련 자료 제작	**2023**	**60,000,000**	**6,072,000**	**10.1**
	2024	**51,440,000**	**2,750,000**	**5.3**
	2025. 8.	**24,880,000**	**-**	**-**
국정과제 홍보	2023	-	-	-
	2024	-	-	-
	2025. 8.	20,000,000	-	-
계	2023	126,320,000	54,406,320	43.1
	2024	117,760,000	59,102,000	50.2
	2025. 8.	131,800,000	24,721,940	18.8

자료: 국무조정실

예산액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원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등 의견수렴’ 항목의 경우 의견수렴 간담회 수는 비교적 추계치와 실적이 유사하였으나 참여 전문가 수를 과다 추계한 것이 과다 편성의 원인으로 보이며, ‘성과보고회 관련 자료 제작’ 항목의 경우 성과보고회를 용역으로 수행함에 따라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이와 같이 매년 일반수용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중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1억 3,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문가 등 의견수렴’ 항목(2,400만원), ‘성과보고회 관련 자료 제작’ 항목(2,700만원)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따라서 이 사업 일반수용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연례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를 전용·세목조정으로 충당하는 등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내년도 국정과제 점검 관련 행사의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국회가 본예산 확정 전 관련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분기별 전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주요 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관련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를 전용·세목조정 등으로 충당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임차료 1,000만원, 2023년에는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4,0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고, 2024년에는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2~24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전용 및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2.12.5.)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07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14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세목조정 (2023.11.23.)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01	3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14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210-07	10			
전용 (2024.4.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210-01	7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14	민생토론회 개최
세목조정 (2024.4.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01	5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14	

자료: 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관련 행사의 경우 내용·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전용·세목조정을 통해 행사 용역비를 충당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매년 일반용역비가 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반용역비의 집행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일반용역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매년 일반용역비를 전용·세목조정으로 충당함으로써 국회의 본예산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우회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무조정실은 2024년 국정과제 점검과 수행주체·참여자·목적 등에서 성격이 상이한 '민생토론회'를 이 사업의 예산으로 개최하는 등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선례가 존재함.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

구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민생토론회
주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진행 방식	서면 진행, 현장 진행, 회의 진행 등	회의 진행(온/오프라인 병행)
참여자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 사업담당자	대통령, 관계 부처 사업담당자, 국민, 전문가 등
사업 목적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실태점검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실시하고,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

자료: 국무조정실 사업설명자료 및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내년도 국정과제 점검 관련 행사의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국회가 본예산 확정 전 관련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사례금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900만원(12.6%)이 증액된 32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845	2,845	3,204	359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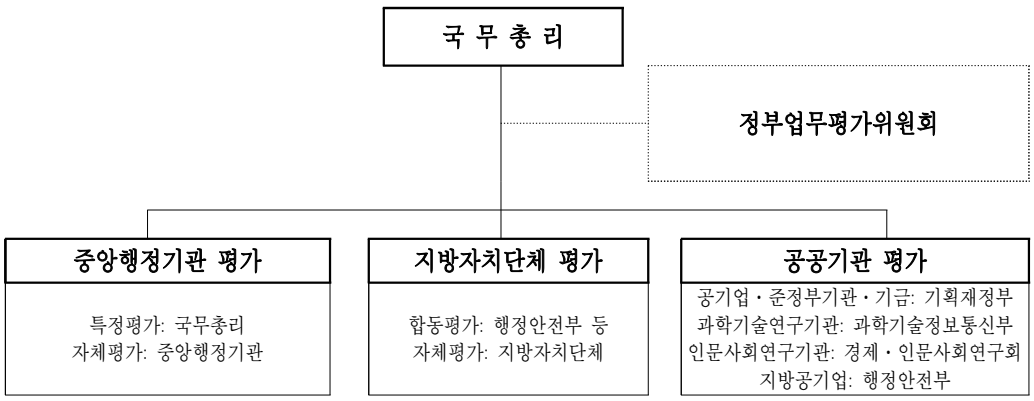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중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경우 국무총리가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협업 등 5개 부문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등으로 구성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평가’를 실시하며,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평가’를 실시함.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안전부 등이 소관 분야 공공기관의 경영·연구실적 등을 평가함.

8) 일반회계-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정부업무평가실)

[정부업무평가 구조도]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을 비롯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비, ② 정부업무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산하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에 지급하는 민간위탁사업비, ③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포함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안 세부내역]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2억 4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16억 9,600만원), **일반연구비(1억 7,700만원)**, **일반수용비(1억 3,200만원)**, 사업추진비(7,800만원), 임차료(5,000만원),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고용부담금 등
○ 포상금: 10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매년 사례금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또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사례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최근 3년간 일반수용비 내 사례금 예산액·집행액 규모를 살펴보면, 사례금 예산액이 집행액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등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 항목은 2023년 이후 매년 1,98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155만원(2023년), 1,260만원(2024년), 930만원(2025년 8월말)에 불과하였음. ‘안건검토 사례금’ 항목은 2023년 이후 매년 2,448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220만원(2023년), 848만원(2024년), 628만원(2025년 8월말)에 불과하였음.

[최근 3년간(2023~2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례금 세부 집행 내역]

(단위: 원, %)

항목명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위원회 참석 수당	2023	19,800,000	11,550,000	58.3
	2024	19,800,000	12,600,000	63.6
	2025. 8.	19,800,000	9,300,000	47.0
안건검토 사례금	2023	24,480,000	12,200,000	49.8
	2024	24,480,000	8,480,000	34.6
	2025. 8.	24,480,000	6,280,000	25.7
계	2023	44,280,000	23,750,000	53.6
	2024	44,280,000	21,080,000	47.6
	2025. 8.	44,280,000	15,580,000	35.2

자료: 국무조정실

예산액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원인은 사례금 지급 대상인 회의 개최 실적 및 위원 평균 출석률이 계획 대비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안건검토 사례금은 연 12회 개최되는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연 회의 개최 횟수는 9회(2023, 2024년), 7회(2025년 8월말)에 불과하였으며, 위원 평균 출석률도 78.8%(2023년), 84.8%(2024년), 84.4%(2025년 8월말)에 그쳤음.

이와 같이 매년 사례금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중 사례금은 4,42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따라서 이 사업 사례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무조정실은 매년 일반연구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주요정책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목)를 활용하여 ‘주요정책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2024년 주요정책 국민 만족도 조사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34개 주요정책과제 관련 과정의 적절성·성과 달성도·전반적 만족도 등 온라인 패널 조사(만 19세 이상 성인 6,300명 대상)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2024년 주요정책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중 7점 만점 기준 4.00점(전년 대비 △0.20점)이라는 종합 결과만 제시하였을 뿐, 중앙행정기관별·주요정책과제별 세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평가결과가 아니라 결과 도출을 위한 중간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기관별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매년 2억원(2025년 기준) 가량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종합 결과가 7점 만점 기준 4.00점으로 높지 않아 국회 등 외부에서의 환류 과정이 필요한 점, 해당 조사가 결과 도출을 위한 중간과정에 있는 자료라면 오히려 공개하여 정부업무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족도 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정책별 만족도 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5.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 세부사업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현장 방문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139	139	139	-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령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의장)·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나 필요시 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도 참석할 수 있음.[1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격주 목요일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로는

9) 일반회계-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7031-306)(국정운영실)

1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연도별 개최 횟수가 상이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40회에서 2024년 19회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음.

[연도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횟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개최 횟수(회)	40	36	22	19	18	19	19	6

자료: 국무조정실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회의 참석자 사례금·전문가 자문 사례금·PPT 제작비·회의용품 구입비를 비롯한 일반수용비, ② 회의장·버스 임차료, ③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할 일반용역비 등이 포함됨.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 7,300만원
- 참석자 사례금: 1,200만원(= 15만원 × 20명 × 4회)
- 전문가 정책 자문 사례금: 600만원(= 30만원 × 5명 × 4회)
- PPT 등 제작비, 회의용품 구입비: 5,400만원
○ 임차료: 600만원
○ 일반용역비: 6,000만원(= 3,000만원 × 2회)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의 목적·활동 내용은 다른 세부사업인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과 유사성이 높으므로, 관련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의 예산은 국무총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국민 등과 소통하는 현장 방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1억 3,900만원) 또한 회의 참석자 사례금·자문료(1,800만원), 회의용품 구입비(4,800만원), 회의장·버스 임차료(600만원), 일반용역비(6,000만원) 등 현장 방문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회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7037-302)의 내역사업인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과 목적·활동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과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의 비교]

구분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사업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목적	실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국민 등과 소통 및 주요 국정현안 조정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활성화 지원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 내용 (2025년)	이해관계자·국민 등을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회의 진행	주요 사회현안 및 갈등현안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업무협의,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등
활동 내용 (2025년)	현장방문형 회의 개최 예정(10월 말)	시민사회 정책 현장 간담회(월 2회), 지역 현장 간담회(3.31, 4.16.) 등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유사성이 높은 두 사업의 목적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1,500만원(30.0%)이 증액된 65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5,049	5,049	6,564	1,515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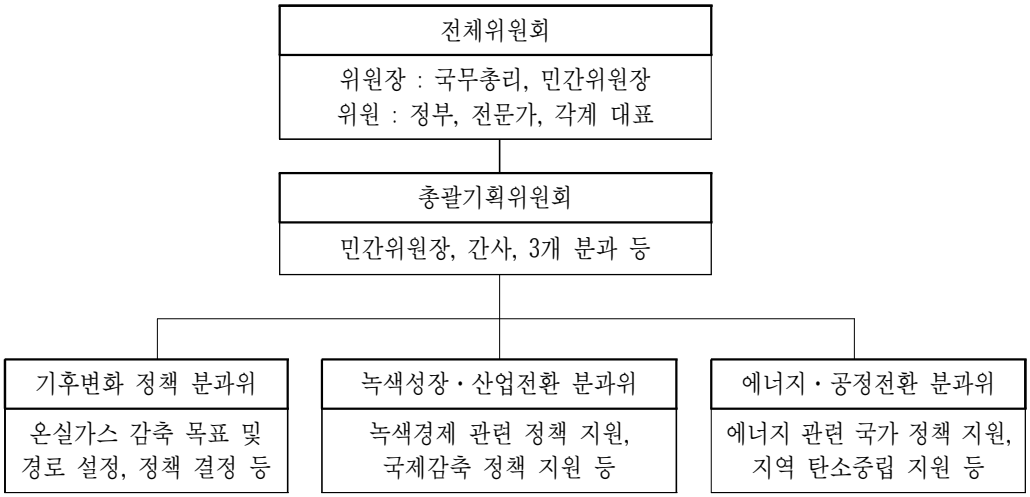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12)](2022. 3. 25. 시행)에 따라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2022. 10. 26. 출범하였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위원회·3개의 분과위원회·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총괄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 등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11) 일반회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2026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안 65억 6,400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일반용역비(34억 2,500만원, 52.2%)로, 이 중 18억원은 기후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관련 공론화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7억원 증액 편성된 ‘의견수렴’ 항목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용역비: 34억 2,500만원
- **의견수렴(18억원)**, 대국민 소통(5억 5,000만원), 전문가 정책소통(5억 2,500만원), 넷제로 프렌즈 운영(3억원), 정책이행 점검(1억 4,000만원), 회의체 운영(3,000만원) 등
○ 일반수용비: 8억 1,600만원
○ 임차료: 7억 9,700만원
○ 정책연구비: 5억원
○ 기타: 10억 2,600만원(상용임금 2억원, 국내여비 1억 9,400만원, 국외업무여비 1억 5,700만원 등)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의견수렴 항목(이하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증액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4. 8. 29. 2020헌마389등 결정)을 하고 개정 시한을 2026. 2. 28. 로 설정함에 따라, 입법 이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숙의과정을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으로 증액·운영하겠다는 입장임.[13)]

13)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한편,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1억원), ② 출범식 및 사전학습(2.7억원), ③ 숙의과정 진행(2억원), ④ 국민 대토론회(3.5억원), ⑤ 활동 기록물 제작(2억원), ⑥ 온라인 숙의 시스템(4.5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2026년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내용]

(단위: 억원)

항목	예산안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	1.0
출범식 및 사전학습	2.7
숙의과정 진행	2.0
국민 대토론회	3.5
활동영상 및 결과 등 기록물 제작	2.0
온라인 숙의 시스템	4.5
기타(설문, 의견수렴 및 결과분석 등)	2.3
계	18.0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첫째,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은 회의 참석 인원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핵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국무조정실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 중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1억원), 출범식 및 사전학습(2.7억원), 숙의과정 진행(2억원) 등은 회의 참석 예정인 시민·전문가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사전학습 및 숙의 일정 등에 따라 집행 소요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면서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위 조항의 규범영역 전부에 대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으므로, 2026. 2. 28. 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임.

예컨대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1억원)의 경우 참가자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모집단 데이터 추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고, 출범식 및 사전학습(2.7억원), 숙의과정 진행(2억원)은 회의 참석 예정인 시민·전문가의 수, 사전학습 및 숙의과정 일정과 소요비용 등에 비례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이 사업의 예산안 세부 내용에는 회의 참석 예정인 시민·전문가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사전학습 및 숙의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 예산액 추계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회의 참석 인원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의 예산은 전액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유사 사업의 예산안 및 집행액 등을 참고하여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의 적정 비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관련 집행액 및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등에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및 기타 비용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과 대비됨.

[참고: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집행액(2017년) 및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2026년도) 내용]

(단위: 백만원)

비목	내역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일반수용비	온·오프라인 공론화 홍보	384	160
	사례금	106	418
	회의자료 인쇄, 지원단 사무용품 등	105	45
	저작권료, 소송비, 번역료 등	71	-
임차료	지원단 사무실 임차	103	60
	전산 및 사무장비, 토론회장, 버스 등	74	403
일반용역비	여론조사, 토론회, 홈페이지 구축 등	2,603	2,090
기타 비용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고용부담금, 공사비, 무형자산 등	281	459
계		3,727	3,635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예산 전액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다수의 인원에게 여러 차례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므로, 이를 용역업체가 모두 수행하고 위원회는 결과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책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의 선례와 달리 모든 예산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집행을 용역업체에 모두 위임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액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 및 과거 유사 사업의 선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적정 비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7.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신규): 연구센터 운영 과정에서 기관 간 연구사업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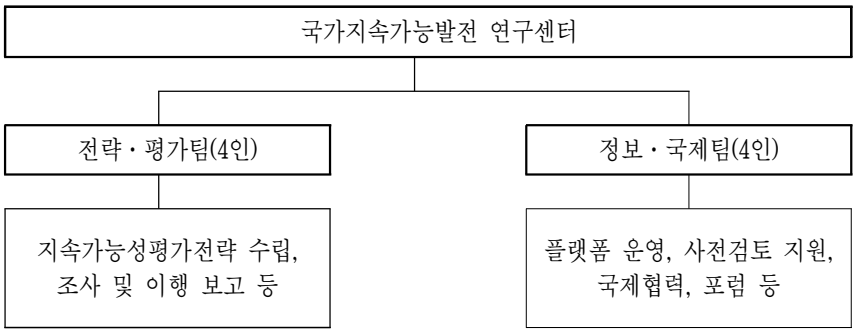
[2026년도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591	628	2,230	1,602	255.1
연구센터 지정·운영	-	-	1,500	1,500	순증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15)] 제27조제4항(2022. 7. 5.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2팀 9명으로 운영될 예정임.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조직도(안)]



14) 일반회계-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지속가능발전추진단)

15)「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026년도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예산안 15억원은 ① 인건비 6억 6,000만원, ② 시설・장비 구입비 2억 500만원, ③ 정보망 고도화 비용 2억원, ④ 조사・연구비 2억원, ⑤ 경상경비, 여비 및 일반관리비 등 2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6.6억원
- 센터장 1명, 책임연구원 4명, 연구원 4명 등(정부출연연구기관 연평균 임금 적용)
○ 시설・장비구입비(보증금・공사비, 각종 집기 구입 등): 2억 500만원
○ 정보망 고도화(종합 플랫폼 구축): 2억원
○ 조사・연구비(지속가능성 평가, 국제협력 대응 강화 등): 2억원
○ 경상경비, 여비 및 일반관리비: 2억 3,5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할 연구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부 연구 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사업 및 국무조정실이 수행하는 연구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구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연구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연구, 해외 주요국의 제도 동향 및 이슈 분석, 지원과제 발굴 등의 조사・연구업무를 상시 수행할 예정임.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연구는 연구센터 설립 이전 현재에도 이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향후 연구사업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연구 현황]

기관명	연도	연구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에너지전환 vs 지속가능발전의 국가난제적 속성 진단 및 대응방향 탐색
	2023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에너지안보 및 전환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	신규 지속가능발전 협력 의제 발굴 예정 (AI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정책과제 연구 등)
산업연구원	2026	지속가능 융합 혁신에 기반한 산업전환 및 고도화 정책 연구 예정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익공유제 발전 방안 연구 예정
한국개발연구원	2026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연구 수행 예정
한국환경연구원	2026	연구원 산하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에서 관련 연구 수행 예정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내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비(15억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사업비(260목)가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연구사업비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내용과 민간위탁사업비 내의 조사·연구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 연구사업 간 구분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전문성·안정성이 필요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센터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외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사업비(260목)를 활용하여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예를 들어 '2026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의 경우 격년 단위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속성·일관성이 필요하므로 연구센터 민간위탁사업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026년 연구센터 민간위탁사업비로 수행할 예정인 연구사업 현황]

연구사업명(사업비)	연구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
2026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1억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는 격년 단위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무로, 지속성·일관성이 필요하여 연구센터에서 안정적 관리 필요
SDG 민관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1억원)	연구 수행 이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연구센터가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

자료: 국무조정실

그러나 2026년 연구사업비(260목)를 활용하여 수행할 예정인 연구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5,000만원)’, ‘국가이행 보고서 발간 연구(1억원)’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사업(각각 1년, 4년)으로서 지속성·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사업비(260목)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내용과 민간위탁사업비 내의 조사·연구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 연구사업 간 구분 기준이 모호해 보임.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관 간 연구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K-토론나라 운영 사업(신규):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타 세부사업으로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K-토론나라 운영'**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인 K-토론나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억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K-토론나라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70	570	1,191	621	108.9
K-토론나라 운영	-	-	631	631	순증

K-토론나라는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국무총리 첫 20일 업무계획 보고(2025.7.8.) 당시에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이후 7월 24일(제1차), 7월 31일(제2차), 9월 10일(제3차)에 개최된 바 있음.

[2025년 1~3차 'K-토론나라' 개최 현황]

일시	내용	참석자	개최 장소
2025.7.24.	미래대화 1·2·3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방향)	분야별 청년 20여명	KT&G 상상플래닛
2025.7.31.	신동식과의 미래대화 (조선업 관련 질의응답)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국무총리공관
2025.9.10.	미래대화 1·2·3 (청년문화예술 관련 토론)	청년 문화예술인 9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K-토론나라는 격주마다 1회씩 총 26회 개최 예정이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우리 사회에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16) 일반회계-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7037-301)(공보실)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 패널·장소를 선정할 계획임. 또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회차마다 예고편 영상·하이라이트 롱폼-숏폼 영상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임.

이에 맞춰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또한 ① 토론회 참석자 수당 및 사례금을 비롯한 일반수용비, ② 콘텐츠 제작비, 장소·시설 임차비를 비롯한 일반용역비, ③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등이 포함됨.

[K-토론나라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 2억 7,500만원
- 콘텐츠 유통 3,900만원(= 50만원 × 3편 × **26회**), 참석수당 7,800만원(= 20만원 × 15명 × **26회**), 저명인사 사례금 1억 5,600만원(= 300만원 × 2명 × **26회**), 도서구입비 240만원 등
○ 일반용역비: 3억 2,000만원
- 운영경비 1억 3,000만원, 콘텐츠 제작비 9,880만원(= 380만원 × **26회**), 장소 임차료 6,500만원(= 500만원 × 13회), 시설·장비 임차료 2,600만원(100만원 × **26회**) 등
○ 국내여비: 2,300만원
○ 사업추진비: 1,3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K-토론나라 사업은 세부사업인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양 사업은 편성 목적이 상이하므로, K-토론나라 사업을 편성 목적의 유사성이 높은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K-토론나라 사업은 세부사업인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7037-301)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K-토론나라 사업의 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소통’은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의 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을 활용하여 국무총리실 정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K-토론나라 사업은 국무총리실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플랫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 상이한 측면이 있음.

오히려 K-토론나라 사업의 목적은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7037-302)의 목적인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과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의 비교]

구분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
사업목적	국무총리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업무 지원,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사업 내용 (2025년)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온라인 프로모션, 신문스크랩, TV 모니터링 등	당정협의체 운영, 국회·정당과의 업무협의,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지원, 시민사회단체 의견 청취 및 역량 강화 등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세부사업별 목적과 K-토론나라 사업의 목적 간 유사성을 고려하면, K-토론나라 사업을 편성 목적의 유사성이 높은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2,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원(△6.2%) 감소함.

예산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억원(△0.7%) 감소하고, 기금은 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원(△6.4%) 감소함.[1)]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1	101	100	△0.7	△0.7
기 금	2,057	2,057	1,924	△133	△6.4
총수입	2,158	2,158	2,024	△134	△6.2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은 6조 6,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5억원(3.3%) 증가함.

예산은 6조 4,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8억원(3.3%) 증가하였고, 기금은 2,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2.6%) 증가함.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2,289	63,125	64,347	2,058	3.3
기 금	2,178	2,178	2,235	57	2.6
총지출	64,467	65,304	66,582	2,115	3.3

나. 예산안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억원(△0.7%) 감소함.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8.6	98.6	98.4	△0.2	△0.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0.7	0.7	0.7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	1.5	1.0	△0.5	△33.3
합 계	100.8	100.8	100.1	△0.7	△0.7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조 5,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0억원(3.3%) 증가함.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3,092	63,929	65,167	2,075	3.3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99	99	93	△6	△5.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4	24	25	1	2.9
합 계	63,215	64,051	65,285	2,070	3.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7,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8억원(△16.8%) 감소함.

[2026년도 국가보훈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보훈기금	6,962	6,962	5,522	△1,440	△20.7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	1,491	1,491	1,513	22	1.5
합 계	8,453	8,453	7,035	△1,418	△16.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보훈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5억 5,2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대상 AI 기반 통합 안부 확인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보훈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계획안
[보훈기금]		
1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552
총지출		552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보상금’, ‘보훈병원진료’,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사업 등 총 13개임.[3)]

[2026년도 국가보훈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2	생활조정수당	84,754	109,287	24,533	28.9
3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4	보훈병원진료	392,296	450,483	58,187	14.8
5	위탁병원진료	249,113	269,486	20,373	8.2
6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4,490	6,721	2,231	49.7
7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1,068	9,932	8,864	830.0
8	현충시설관리	6,944	10,299	3,355	48.3
9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795	2,615	820	45.7
10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937	1,286	349	37.2
11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382	9,583	2,201	29.8
12	송무지원	398	560	162	40.7
[보훈기금]					
13	보훈복지시설건립	3,783	6,031	2,248	59.4

‘보상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추가 인상하여 전년 대비 1,546억 8,600만원이 증액된 3조 7,175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보훈병원진료’ 사업은 예산액 부족에 따라 매년 대규모의 이·전용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 진료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581억 8,700만원이 증액된 4,50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및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1년차 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억 6,400만원이 증액된 9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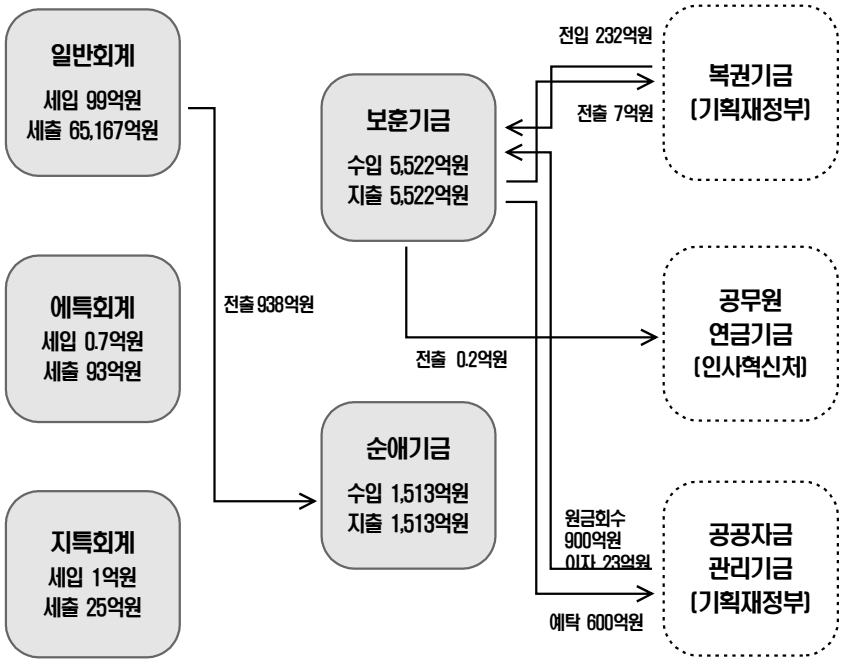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보훈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38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복권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232억원이 전입되었으며, 보훈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7억원,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0.2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900억원의 예탁원금과 23억원의 예탁이자가 상환되었으며, 보훈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0억원이 예탁되었음.

[국가보훈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생존 애국지사 예우를 강화하고 보상금을 인상하였음.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구현하였고, 준보훈병원 도입 및 위탁병원 확대를 통해 보훈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였음.

아울러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 보훈단체의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을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따뜻한 보훈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인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2026년도 생계지원금 사업 예산안은 전체 지급 인원에게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액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보훈부의 계획에 따른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의 실시설계 기간은 관련 지침을 고려할 때 다소 과소 계상되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예상되며, 실시설계가 계획대로 완료되어도 2026년도 예산안은 공사기간 대비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보훈 관련 법령상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생계지원금 사업: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된 예산액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억 3,200만원(578.3%) 증액된 287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생계지원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생활조정수당	84,754	84,754	109,287	24,533	28.9
생계지원금	4,242	4,242	28,774	24,532	578.3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 본인과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었음.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지급인원 및 지급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6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됨.

4) 일반회계-생활조정수당(1133-302)(보상정책국)

[연도별 생계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7.	2026(안)
지급인원	3,490	3,505	6,863	8,280	23,978
지급액	3,851	4,204	8,260	5,796	28,774

자료: 국가보훈부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기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2025년 6월 기준 8,095명)에 2026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수를 추계(15,883명)하여 합산한 값인 23,978명에게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됨.

[생계지원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생계지원금: 287억 7,400만원**
- 10만원 × 23,978명(=기 지급인원 8,095명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계치 15,883명) × 12개월

자료: 국가보훈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수 15,883명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 수(126,657명)에 2022년 기준 전국 80세 이상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인 13.2%를 적용한 다음, 사업 초기에 따른 1분기 신청자 수 저조 및 낮은 지급률을 예상하여 인원의 일부(1분기 80%, 2~4분기 100%)만을 반영한 것임.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비율은 2025년 4월 기준 약 5.7%로 전국 80세 이상 여성 중 저소득 비율인 13.2%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일정액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달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인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2026년도 생계지원금 사업 예산안은 전체 인원에게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액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5]은 2025. 9. 16.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6. 3. 17. 부터 시행 예정임.

생계지원금은 별도 공지가 없는 한 매월 15일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1~3월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1분기 예상 지급률은 0%임.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분기 지급률을 80%로 보고 예산액을 계상하였음.

사업 초기에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3월부터 확대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에게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17. 시행)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전공의 공백에 따른 검진 실적 부진 해소 필요

가. 개 요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 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9.6%) 감액된 24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고엽제환자검진	2,667	2,667	2,412	△255	△9.6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가 5개 보훈병원(인천병원 제외)에서 받는 검진비용 지원액, ② 고엽제 검진업무 관련 보훈병원 업무협의 비용 등이 포함됨.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시행주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개 보훈병원)
○ 세부내역: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보전금 24억 900만원
- 기타 보전금: 26,690명(2022~2024년 검진인원 평균) × 90,244원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전공의 공백 사태 발생 이후 주요 항목 검사 실적 부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원활한 검진 및 예산 집행 실적 부진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된

6) 일반회계-고엽제환자검진(1143-368)(보상정책국)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집행 실적이 80% 미만으로 부진하였음. 2022년 이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진료 축소 등이 원인으로 보이나, 2024년 이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2021~2025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21	2,993	2,389	79.8
2022	2,993	2,297	76.7
2023	2,867	2,867	100.0
2024	2,667	1,978	74.2
2025. 7.	2,667	1,130	42.4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 이후 집행 실적 부진 원인은 고엽제 관련 주요 항목 검진 실적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2024년 실제 검진인원은 29,437명으로 본예산 계획인원(26,636명)보다 많았으나, 파킨슨병, 뇌경색증,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 관련 일부 주요 검진 항목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부진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해당 항목들은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검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3년 이후 연도별 고엽제 관련 주요 검진 항목 실적]

(단위: 건)

주요 질병	주요 검진 항목	2023	2024	2025.7.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초음파-심장-경흉부심초음파	202	181	115
파킨슨병	MRI Brain 촬영료[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85	171	84
	MRI Brain 판독료	195	192	51
	뇌 PET CT	**654**	**370**	**213**
	해동에프디지주사액, 듀켐바이오에프디지-20	**166**	**82**	**32**
	피디뷰주사(FP-CIT 18F)	**139**	**61**	**11**
뇌경색증	진단초음파-혈관-뇌혈류	**546**	**283**	**146**
	DIGITAL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310**	**128**	**88**
중추신경장애	진단초음파-혈관-(경동맥)두개외 혈관 도플러	**152**	**91**	**29**
	CDR치매척도검사	**306**	**175**	**116**
	MMSE간이정신진단검사	**338**	**210**	**142**
말초신경병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편측・양측)	**3,884**	**1,843**	**1,265**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양측)	1,029	617	729
간질환	ALT (SGP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51	76
	AS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51	76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121	102	47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121	100	47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이 주요 검진 항목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24년부터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별・보훈병원별 전공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의 현원이 202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회복되지 않았음.

[연도별·보훈병원별 전공의 근무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2025.1.	2025.7.
합계	정원	187	177	182	173	171	171	172
	현원	163	146	138	127	**19**	**17**	**24**
중앙	정원	113	104	102	108	104	104	102
	현원	99	94	98	99	9	9	16
부산	정원	24	24	29	25	26	26	27
	현원	24	21	17	10	6	5	5
대전	정원	6	6	7	8	9	9	10
	현원	6	6	5	7	0	0	0
대구	정원	9	9	9	9	9	9	9
	현원	7	4	2	1	1	1	0
광주	정원	35	34	35	23	23	23	24
	현원	27	21	16	10	3	2	3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공의 공백 사태 발생 이전 시기가 포함된 2022~2024년 평균 검진 인원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가 2025년 하반기에도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원활한 검진 및 예산 집행 실적 부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단체복지지원 사업(신규):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보훈단체복지지원’** 사업은 보훈회관·복지회관에서 보훈문화프로그램 및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억 8,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보훈단체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281	35,081	37,954	3,673	10.7
보훈단체복지지원	-	-	1,789	1,789	순증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① 80개의 시·구 및 30개의 군 등 1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약 7,6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점심식사 비용 중 국가보훈부 부담분 14억 5,900만원, ② 보훈문화프로그램 비용 중 국가보훈부 부담분 3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됨.

[보훈단체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수행주체(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주요 내용: 점심 국비 부담분 14억 5,900만원(= 1회 2,000원 × 연 96회 × 110개 단체 7,600명), 프로그램 국비 부담분 3억 3,000만원(= 연 300만원 × 110개 단체)

- 점심 단가: 5,000원 중 보훈단체 1,000원, 지방자치단체 2,000원, 국가보훈부 2,000원씩 부담
- 주 2회 지원, 80개 시·구의 경우 일 80명, 30개 군의 경우 일 40명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회관 중식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일반회계-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복지지원 사업은 점심식사 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방비와 1:1 매칭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지방비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저조하면 예산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가 각 보훈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7월에 실시한 점심식사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점심식사 지원에 찬성하는 보훈단체는 248개 중 107개, 지방자치단체는 245개 중 28개에 그쳐 사업 수요가 저조하였음.

[점심식사 지원에 대한 보훈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

구분	지원 찬성	지원 반대	미회신
보훈단체(248)	107	125	16
지방자치단체(245)	28	196	21

주) 2025. 7. 23.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주요 반대 사유는 ① 별도 식당의 부존재로 인한 점심식사 지원 공간 확보의 어려움[8], ②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③ 인근에 보훈회관이 존재하는 국가유공자와 그렇지 않은 국가유공자 간 차별 우려 등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요와 반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시락 등의 형태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48개 보훈단체 중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2025년 7월 기준 16개에 불과함.

4.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미지급 문제 해결 필요

가. 개 요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의 상이처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00만원(△2.7%) 감액된 2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65	2,301	△64	△2.7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0)]에 따라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등의 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의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가 포함되었음.

이 사업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제대군인에 대해 실시한 진료의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급하고, 국가보훈부가 그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수행되고 있음.

---

9) 일반회계 - 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복지증진국)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수혜대상: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사업수행주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위탁병원)
○ 지급단가 및 인원: 보훈병원(5,488명 × 182,482원), 위탁병원(12,372명 × 105,096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은 매년 예산액 추계의 낮은 정확성으로 인해 부족분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24년에는 미지급 문제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부실 추계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여전히 관련 문제들이 재발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지급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2021년 12억 8,400만원에서 2022년 14억 800만원, 2023년 22억 8,4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4년에는 국가보훈부가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지 않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족분 27억 8,700만원을 부담하는 등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5년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이미 99.3%에 육박하여 전년과 마찬가지로 미지급 문제가 재발할 것으로 예상됨.

[2021~2025년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이·전용 등(B)	예산현액(=A+B)	실집행액(D)	집행률(=D/A)
2021	2,365	1,284	3,649	3,649	154.3
2022	2,365	1,408	3,773	3,773	159.5
2023	2,365	2,284	4,649	4,649	196.6
2024	2,365	-	2,365	5,152	217.8
2025. 7.	2,365	-	2,365	2,349	99.3

주) 2024년 실집행액 중 예산현액을 제외한 27억 8,700만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담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이 매년 실집행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진료 계획인원 및 평균 단가에 대한 추계의 낮은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실제 진료인원 및 평균 단가가 계획인원 및 단가를 상회함.

[2022~2024년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지원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인원			단가		
			계획(A)	지원(B)	차이(=A-B)	계획(C)	지원(D)	차이(=C-D)
2022	보훈	입원	916	320	596	141,452	141,798	△346
		외래	6,606	6,299	307			
	위탁	입원	4,458	4,212	246	49,148	99,601	△50,453
		외래	20,711	23,601	△2,890			
	계		32,691	34,432	**△1,741**	70,386	107,713	**△37,327**
2023	보훈	입원	773	839	△66	151,263	164,142	△12,879
		외래	6,596	6,468	128			
	위탁	입원	4,413	5,436	△1,023	46,445	102,715	△56,270
		외래	21,132	27,529	△6,397			
	계		32,914	40,272	**△7,358**	69,910	113,860	**△43,950**
2024	보훈	입원	488	786	△298	149,310	173,564	△24,254
		외래	6,216	6,215	1			
	위탁	입원	2,871	7,718	△4,847	74,208	101,124	△26,916
		외래	14,649	30,579	△15,930			
	계		24,224	45,298	**△21,074**	94,986	112,320	**△17,334**

자료: 국가보훈부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이 사업이 매년 진료비 부족분을 이·전용으로 충당하다가 2024년은 부족분이 충당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가 부족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향후 진료 인원과 단가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에 따르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 없이 2024년 실제 진료인원(45,298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7,860명을 계획인원으로 추계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가보훈부는 2024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6년 진료 계획인원에 대한 진료비만 반영되어 있는 등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미지급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은 광주보훈병원의 응급실 확충, 수술실 확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2,800만원(803.6%) 증액된 5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1,068	1,068	9,932	8,864	830.0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663	663	5,991	5,328	803.6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공사에 필요한 1년차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 59억 9,100만원으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설계를 2026년 2월까지 완료 후 5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2027년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기간: 2024. 2. ~ 2027. 11. (2025. 8월말 현재 중간설계 진행 중)
- 계획 수립 및 평가(~ 2024. 10.), 설계(2024. 11. ~ 2026. 2.), 공사(2026. 5. ~ 2027. 11.)

○ 총사업비: 183억 5,900만원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365㎡

○ 사업시행주체(방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조) (국비 70% 지원)

○ 주요 내용: 1년차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 59억 9,1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이 사업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비 155억 5,700만원, 설계비 12억 4,000만원, 감리비 15억 2,000만원, 부대비 4,200만원 등으로, 당초 2025년 내에

11) 일반회계 -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2156-397)(복지증진국)

설계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조달청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26년까지 설계를 진행할 예정임.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계
공사비	-	-	8,259(5,991)	7,298(5,992)	15,557(11,983)
설계비	293(205)	947(663)	-	-	1,240(868)
감리비	-	-	912(0)	608(0)	1,520(0)
부대비	12(0)	20(0)	10(0)	-	42(0)
계	305(205)	967(663)	9,181(5,991)	7,906(5,992)	18,359(12,85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국비 부담액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부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	2024. 2.	2024. 2. 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2024. 2. ~ 9.	2024. 2. 16. ~ 7. 22.
설계업체 계약 추진		2024. 8. 21. ~ 11. 19.
계획설계	2024. 10. ~ 2025. 6.	2024. 11. 20. ~ 2025. 3. 18.
중간설계		2025. 4. 3. ~ 9. 14.
실시설계		2025. 9. 15. ~ 2026. 2. 28.(예정)
공사 실시	2025. 11. ~ 2027. 1.	2026. 5. 1. ~ 2027. 11. 30.(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의 계획에 따른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의 실시설계 기간은 관련 지침을 고려할 때 다소 짧은 것으로 보이고, 실시설계가 계획대로 완료되어도 2026년도 예산안 대비 짧은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예산은 실시설계를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 후 2026년 5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2027년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계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계획된 실시설계 기간이 다소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우려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고시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83억 5,900만원, 공사비가 155억 5,700만원인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의 적정 실시설계 기간은 7개월로 산출됨.

[공종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억, 개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 500	500 ~ 1,000	1,000 이상	100 ~ 500	500 ~ 1,000	1,000 이상
건축	4.5	7	9.5	**7**	7.5	8

자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

그런데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계획상 실시설계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여,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최적의 설계품질을 확보하려는 해당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음.

한편 국가보훈부의 계획대로 실시설계가 2026년 2월 내에 완료되어도, 예상 공사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로 2026년 내 공사기간이 2027년 내 공사기간보다 짧은 반면 2026년 공사비(총 82.6억원, 국비 60.0억원)는 2027년 공사비(총 73.0억원, 국비 60.0억원)보다 큰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공사기간과 예산이 비례하여 편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의 과소 계상 및 예산안 대비 짧은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공사비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6,500만원(151.3%) 증액된 5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보훈문화조성	14,104	14,104	16,617	2,513	17.8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2,290	2,290	5,755	3,465	151.3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 및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3년차 사업비가 포함됨.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
- 사업기간: 2024. 3. ~ 2027. 12. (2025. 8월말 현재 설계 공모 중)
  * 설계 용역 착수(2025. 12월 예정), 공사(2026. 10. ~ 2027. 12.)
- 총사업비: 63억 2,500만원

○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 사업기간: 2024. 2. ~ 2027. 12. (2025. 8월말 현재 설계 진행 중)
  * 설계 용역 착수(2025. 5.), 공사(2026. 6. ~ 2027. 12.)
- 총사업비: 181억원

○ 사업시행주체(방법):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50% 지원)

○ 주요 내용: 3년차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창원: 23억 4,700만원, 포항: 34억 8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12) 일반회계 - 보훈문화조성(3145-401)(보훈문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보훈문화관별 예상 공사 일정을 고려하면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예산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비 12억원, 공사비 44억 5,800만원, 설계비 4억 5,600만원, 감리비 2억원, 부대비 1,100만원 등으로, 당초 2025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이 지연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26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임.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계
보상비	-	1,200	-	1,200
공사비	-	557	3,901	4,458
설계비	456	-	-	456
감리비	-	27	173	200
부대비	-	3	8	11
계	456(228)	1,787(587)	4,082(2,347)	6,325(3,16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국비 부담액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부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의 건립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일정
건립 부지 확정	2024. 3.	2024. 7.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2.
설계 용역 착수	2024. 12.	2025. 12. (예정)
착공	2025. 10.	2026. 10.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다음으로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비 5억 3,000만원, 공사비 141억 4,300만원, 설계비 10억 6,100만원, 감리비 23억 3,500만원, 부대비 3,100만원 등으로, 당초 2025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이 지연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26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임.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계
보상비	530	-	-	-	530
공사비	-	2,464	5,840	5,839	14,143
설계비	531	530	-	-	1,061
감리비	-	408	964	963	2,335
부대비	3	4	12	12	31
계	1,064(532)	3,406(1,703)	6,816(3,408)	6,814(3,406)	18,100(9,04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국비 부담액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부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의 건립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일정
건립 부지 확정	2024. 2.	2024. 2.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6.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0.
설계 용역 착수	2024. 12.	2025. 5.
착공	2025. 12.	2026. 6.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즉, 창원 및 포항 보훈문화관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며, 2025년 9월말 기준 공사비 예산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13]. 한편,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창원 및 포항 보훈문화관은 모두 202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이에 연차별 예상 공사 기간 및 잔여 공사비를 살펴보면, 창원의 경우 예상 공사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나 총사업비 계획은 여전히 2026년 내에 모든 예산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계획에 따르면 2개월 내에 14개월 분량의 공사비가 모두 집행되어야 함.

또한 포항의 경우 예상 공사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나 2025년에 편성된 1년차 공사비 24억 6,4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된 상황이므로, 계획에 따르면 18개월 분량의 공사비 141억 4,300만원 중 2년차까지의 누적 공사비 83억 400만원(58.7%)이 6개월 내에 모두 집행되어야 함.[14]

13) 2025년 9월말 기준 실집행된 예산액은 창원의 경우 설계비 2,300만원, 포항의 경우 설계비 4억 5,800만원 및 부대비 900만원에 불과함.

14)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2026년 이전 공사비에는 부대시설 비용 설치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임.

공사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국비 우선 집행, 선금 우선 지급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실제 소요에 비례하지 않은 규모의 집행이며,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 대비 공사비를 축소하여 반영할 것을 규정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업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예산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은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5,500만원(77.4%) 증액된 7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현충시설관리	6,944	6,944	10,299	3,355	48.3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4,075	4,075	7,230	3,155	77.4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LA홍사단 옛 본부건물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설계를 2025년 내에 완료 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국외 현충시설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외 현충시설보존·관리 사업: 72억 3,000만원**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2024.9. ~ 2027.1. (2025.8월말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 133억 9,600만원
- 사업시행주체(방법): 국가보훈부 및 민간보조사업자(직접수행, 보조)
- 주요 내용: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3억 7,400만원),
  국외 주요 기념관 활성화 등 지원(5억원), 국외 현충시설 개보수 등 지원(2억 2,000만원),
  LA홍사단 옛 본부건물(유지 및 보수 5,800만원, 리모델링비 58억 7,800만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LA홍사단 옛 본부건물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비 74억 9,800만원, 설계비 9억 3,900만원, 감리비 등 15억 300만원으로,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5년 8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

15)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보훈문화정책관)

었으나 202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완공 예정 시점을 2026년 12월로 변경하였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8월말 기준 실시설계가 약 75% 완료되었으며, 2025년 11월 중으로 시공업체 선정 완료 이후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임.

[LA흥사단 옛 본부건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의 연차별·비목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예산안(C)	총사업비 (=A+B+C)
	예산액(A)	집행액	예산액(B)	집행액		
공사비	-	-	2,490	-	5,008	7,498
설계비	939	203	-	467	-	939
감리비 등	-	-	433	196	1,070	1,503
계	939	203	2,923	663	6,078	9,940

주) 2025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LA흥사단 옛 본부건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의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일정
사전설계	2024. 9. 16. ~ 10. 30.	2024. 9. 16. ~ 10. 30.
개념설계	2024. 10. 31. ~ 2025. 1. 24.	2024. 10. 31. ~ 2025. 1. 24.
기본설계	2025. 1. 25. ~ 3. 26.	2025. 1. 25. ~ 4. 25.
실시설계	2025. 3. 27. ~ 8. 5.	2025. 6. 23. ~
시공업체 선정	2025. 6. 16. ~ 8. 15.	2025. 7. 14. ~
우선협상 기간		
공사착수 검토		
공사	2025. 8. 16. ~ 2026. 7. 31.	
시험 운용	2026. 8. 1. ~ 8. 15.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LA흥사단 옛 본부건물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 출입국정책 변화에 따른 건설노동자 수급 문제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2026년 내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LA흥사단 옛 본부건물은 2025년 8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

나 202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건물 추가 증축에 따른 설계 변경, 현지 역사복원 관련 규제 준수, 주거지역 용도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 등의 특수 사정이 발생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착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2026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차별·비목별 예산액을 유지하였는데, 예상 완공 시점이 2026년 12월임을 고려하면 약간의 사업 지연만으로도 예산의 이월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이 사업은 ①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캐나다산 원목이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② 최근 미국의 출입국정책 변화로 인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건설노동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어 예산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 비목 간 예산액 조정을 통한 연례적 세목조정 방지 필요

가. 개 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확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10.8%) 감액된 1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호국보훈의 달 행사	1,130	1,130	1,008	△122	△10.8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호국보훈의 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비, ②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포상수여식 행사비 및 부상품 구입비, ③ 호국보훈의 달 계기 전국 보훈관서 및 민간단체 주관 행사비 등이 포함됨.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 10억 800만원**

- 사업시행주체(방법):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직접수행, 보조)
- 주요 내용: 호국보훈의 달 홍보(2억 9,500만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4,900만원)**, **소속기관 행사(4억 8,600만원)**, 보훈의 상징 달기(7,500만원), 기타사업(1억 300만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은 연례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를 세목조정으로 충당하는 등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목별 실제 소요에 맞게 비목 간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일반회계 - 호국보훈의 달 행사(3147-412)(보훈문화정책관)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의 예산액·집행액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2025년 모두 일반수용비의 예산현액이 본예산 대비 감소하였고 그 감소분만큼 일반용역비의 예산현액이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음. 특히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 ‘소속기관 행사’ 항목은 2022년 이후 매년 일반수용비의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한 바 없는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였음.

[2022년 이후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의 예산액·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8.		2026 (안)
		본예산	예산현액	본예산	예산현액	본예산	예산현액	본예산	예산현액	
호국보훈의 달 홍보	일반수용비	288	189	145	155	145	127	145	145	145
	일반용역비	-	99	150	140	150	168	150	150	150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	**일반수용비**	**49**	**18**	**49**	**19**	**49**	**19**	**49**	**19**	**49**
	일반용역비	**-**	**31**	**-**	**30**	**-**	**30**	**-**	**30**	**-**
소속기관 행사	**일반수용비**	**666**	**621**	**666**	**629**	**635**	**594**	**542**	**501**	**486**
	일반용역비	**-**	**45**	**-**	**36**	**-**	**41**	**-**	**41**	**-**
기타	일반수용비	179	155	179	148	167	167	134	134	122
	일반용역비	-	24	-	31	-	-	-	-	-
계	일반수용비	1,182	983	1,039	951	996	907	870	799	802
	일반용역비	-	199	150	237	150	239	150	221	150

자료: 국가보훈부

이는 해당 항목에서 각종 행사를 용역으로 수행함에 따라 일반수용비의 일부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항목들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여전히 일반용역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아, 2026년에도 다시 일반수용비의 일부가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됨으로써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 우려됨.

매년 일반용역비가 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반용역비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일반용역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매년 일반용역비를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목별 실제 집행 소요에 따라 비목 간 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 실적 저조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은 일상 속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0만원(△4.3%) 감액된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484	6,484	6,004	△480	△7.4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439	439	420	△19	△4.3

이 사업의 추진체계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① 보훈관서에서 사전에 명패 수요를 파악 후 국가보훈부에 요청하면, ② 국가보훈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제작업체를 활용하여 명패를 제작한 후 보훈관서에 보급하고, ③ 이후 보훈관서는 관할 구역에 명패를 부착하고, 실적을 수합함.

이 사업에서 제작·부착하는 명패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 총 4개 종류로, 개인별 맞춤형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작 후 보훈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4개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착함.

17) 일반회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보훈예우정책관)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의 명패 4종 현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자료: 국가보훈부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명패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② 홍보물 제작비용, 출장 여비, 전달 비용 등 사업 부대비용이 포함됨.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명패 제작비: 3억 9,100만원(= 10,634명 × 36.8천원)
○ 사업 부대비용: 2,900만원
-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출장 여비 500만원, 전달 비용 1,900만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은 매년 명패 지급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 지급 실적은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재고량은 202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지급 실적의 경우 연도별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22년 90,793명에서 2023년 13,218명, 2024년 9,012명으로 감소한 반면, 재고량은 2023년 691개에서 2024년 2,179개, 2025년 9월말 7,938개로 증가하였음.

특히 2025년의 경우 1만개의 명패가 제작되었으나, 그중 지급된 명패는 9월말 기준 4,240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지급 실적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25년 지급 실적도 연말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2024년 9월말 기준 지급 실적은 4,741개로 2025년 9월말 기준 실적보다 많았음을 고려하면 2025년 지급 실적 또한 전년과 같이 제작 실적을 하회할 우려가 있음.

[연도별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 사업의 실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9.
지급대상	전상군경유족, 무공유족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유족	신규 등록자 및 재교부 신청자	
집행액	3,272	450	449	388
제작된 명패 수	101,912	8,000	10,500	10,000
지급된 명패 수	90,793	13,218	9,012	4,240
재고량	48,722	691	2,179	7,938

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부 승격에 따라 2022년 이전 재고량은 폐기처리되었음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작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명패는 재고가 되어 차년도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예산액 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매년 재고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 이후에도 매년 10,634명의 신규 및 재교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 또한 전년 대비 4.3% 감액하여 사실상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2년 이후 매년 명패 지급 실적이 감소하였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부적절한바, 이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

가. 개 요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상담, 취·창업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7,700만원(△12.0%) 감액된 15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7,310	17,310	15,233	△2,077	△12.0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비, ②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보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된 직업교육훈련 지원비, ③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캠페인 비용 및 각종 지원정책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됨.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및 위탁
- ○ 사업시행주체: 국가보훈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 ○ 사업수혜대상: 중·장기(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교취학 자녀
- ○ 기능별 예산액: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83억 8,900만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47억 6,600만원, 제대군인 수업료지원 7,100만원, 제대군인 지원정책개발 및 홍보 등 3억 700만원,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17억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18) 일반회계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4160-390)(제대군인국)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이라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사업은 타 세부사업으로의 이관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 내용과 거리가 있는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의 목적은 군에 장기간 복무하다 전역한 직업군인이 성공적으로 취·창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업의 2026년도 사업계획 역시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사업 예산액 중 일부는 제대군인의 취·창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고,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취·창업을 도모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과정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취·창업에 도움된다고 보기 어려운 주제로 편성되어 있음.

먼저,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은 제대군인이 아닌 교도관 등 현직 제복근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홍보 및 행사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외에도 동 사업의 예산은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제복근무자와도 무관한 히어로즈 패밀리 행사,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는 패션쇼 행사 등에 사용되었음.

[2023년 이후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 중 제대군인과 무관한 사업 수행 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2023. 5. 22.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 대관료	9,900,000
2023. 5. 22.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무대, 제작물 설치 및 운영)	20,000,000
2023. 5. 22.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음향시스템 및 출연섭외 등)	20,000,000
2023. 7. 18.	서울현충원 제복-한복 패션쇼 한복 디자인 및 대여 용역	49,995,000
2023. 7. 19.	제복근무자를 위한 제복-한복 패션쇼 연출 용역 대금	49,000,000
2023. 7. 19.	제복근무자를 위한 제복-한복 패션쇼 무대 등 설치 용역 대금	49,000,000
2023. 7. 24.	제복근무자를 위한 제복-한복 패션쇼 홍보 및 물품대여 용역 대금	31,977,000
2023. 9. 25.	히어로즈 패밀리 행사 경비	6,650,000
2023. 11. 24.	6·25 참전유공자 신발 착화식 비용 지출	968,000
2023. 12. 28.	히어로즈 패밀리 크리스마스 행사 경비	2,032,000
2023. 12. 28.	히어로즈 패밀리 연말 행사 경비	2,030,000
2025. 5. 16.	대전교도소 현장 방문	3,272,000
2025. 6. 23.	제복근무자 위문 및 격려 행사비	2,211,000
계		247,035,000

자료: 국가보훈부

다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4년 말 기준 총 1,149개의 사이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디지털전환’(150개 과정, 수강자 368명), ‘기본소양’(85개 과정, 수강자 404명), ‘직무역량’(82개 과정, 수강자 412명) 등은 과정 수 대비 수강자 수가 저조하였음.

[2024년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교육과정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외국어	전문기술	디지털전환	기본소양	직무역량	공채시험 등	계
과정 수 (비중)	389 (33.9%)	258 (22.5%)	150 (13.0%)	85 (7.4%)	82 (7.1%)	185 (16.1%)	1,149 (100.0%)
수강자 수 (비중)	2,614 (18.6%)	8,110 (57.7%)	368 (2.6%)	404 (2.9%)	412 (2.9%)	2,156 (15.3%)	14,064 (100.0%)

자료: 국가보훈부

과정 수 대비 수강자 수가 저조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전환의 경우 AI·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관련 과정을, 기본소양의 경우 비즈니스 교양 및 리더십 관련 과정을, 직무역량의 경우 취업 후의 고객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등 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다수 제대군인의 교육 수요에는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4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제대군인의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 6,940명 중 3,686명(53.1%)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디지털전환이나 비즈니스 교양 등과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 관련 취업자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이 취업을 희망하는 다수 제대군인의 교육 수요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2024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제대군인 취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채시험	기술/기능	사무/서비스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계
취업자 수	903	1,052	345	634	3,686	320	6,940
비중	13.0	15.2	5.0	9.1	53.1	4.6	100.0

자료: 국가보훈부

또한 과정 수 대비 수강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어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은 제대군인의 취·창업과 무관한 여행 관련 강의가 다수 포함되는 등 이 사업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대군인취업센터 사이버연수원 교육과정 중 취·창업과 무관한 외국어 강의 예시]

분류	과정명
영어 일반	빵 터지는 깔깔 영어 1~3탄
	여행영어 특급패턴 101
	해외여행이 즐거운 퀵 여행영어 Step1
	(여행영어) 여기 어때, 미국 맛집멋집 핫플레이스
	3-3-3 여행영어
	50 Days Travel Shorts
일본어 일반	(여행일본어) 여기 어때, 일본 맛집멋집 핫플레이스
중국어 일반	(여행중국어) 여기 어때, 중국 맛집멋집 핫플레이스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이라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과 무관한 내용으로 편성 및 집행된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타 세부사업으로의 이관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 내용과 거리가 있는 일부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1.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은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100만원(29.8%) 증액된 95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382	7,382	9,583	2,201	29.8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에 따라 5년 이상 군에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중 군인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는 2008년부터, 중기복무자를 대상으로는 2014년부터 지급됨.

국가보훈부는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지급기간도 장기복무자는 최대 8개월, 중기복무자는 최대 7개월까지 확대할 예정임. 다만 2026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2026년 지급단가는 장기복무자의 경우 81만원, 중기복무자의 경우 5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로 2025년과 지급단가 및 기간이 동일함.

---

19)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제대군인국)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수혜대상: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지급인원: 최근 3년 평균 신청자 수 반영(장기복무자 736명, 중기복무자 2,414명)
○ 지급단가 및 기간: 2025년과 동일(장기복무자 81만원, 중기복무자 58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제대군인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 간 비교]

구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구직급여
관련 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58만원, 장기: 81만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상한액: 198만원)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120~270일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중도취업자 지원	잔여 지급액의 50%를 일시 지급	잔여 급여일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잔여 지급액 50% 지급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첫째,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은 매년 부정확한 지급대상자 추계로 인해 부족분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지급대상자 또한 정확히 추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무지출 성격인 이 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매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분을 이·전용으로 충당하였고, 그 규모도 2022년 9억 1,500만원에서 2024년 49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2023년 이후로는 매년 3/4분기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음.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8.
예산액	6,172	6,172	7,005	7,382
집행액	7,087	9,135	11,923	8,474
예산액 - 집행액 (이·전용 등 충당분)	△915	△2,963	△4,918	△1,092
예산 소진 시기	12. 25.	9. 25.	8. 25.	8. 25.

자료: 국가보훈부

이는 국가보훈부의 지급대상자 추계가 부정확하여 매년 지급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이 사업의 연도별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차이를 살펴보면, 장기복무자의 경우 2022년 165명에서 2024년 483명, 중기복무자의 경우 2022년 114명에서 2024년 1,084명으로 매년 차이가 커지고 있음.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8.
계획인원 (A)	장기복무자	394	376	454	454
	중기복무자	1,802	1,710	1,705	1,705
지급인원 (B)	장기복무자	559	712	937	842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190
차이 (=A-B)	장기복무자	△165	△336	△483	△388
	중기복무자	△114	△826	△1,084	△485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매년 이 사업의 신청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 산출 과정에서 지급인원을 최근 3개년 평균 신청자 수(장기복무자 736명, 중기복무자 2,414명)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로 인해 2026년에도 예산 조기 소진 문제가 재발할 것이 우려됨.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예산의 조기 소진은 지급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이 국가정책에 대해 갖는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21] 부족분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는 것 또한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1) 실제로 2023년 예산 조기 소진 당시 [보훈부 '전직 지원금 10% 인상' ... 정작 전역자엔 "예산 고갈"] 등의 내용으로 전직지원금 미지급 사태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의무지출 성격인 이 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 및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보훈부는 복무기간 5년 미만인 제대군인 대상 전직지원금 지급 여부·규모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은 복무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기복무자 및 복무기간 10년 이상인 장기복무자로, 임관 후 5년 내 전역자를 대상으로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원률 감소 및 전역자 증가 등 초급간부 이탈 문제가 심화되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임관 후 5년 내 전역자를 대상으로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한 처우 개선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다만, 전직지원금 확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무지출 규모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측면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함. 특히 매년 간부 희망전역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의무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 현재 연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직지원금 예산의 조기 소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육군	부사관	541	668	918	1,257	1,345
	위관급	87	174	235	218	255
	영관급	242	259	328	249	239
	계	870	1,101	1,481	1,724	1,839
해군	부사관	130	173	214	314	317
	위관급	17	24	25	32	32
	영관급	80	98	120	135	67
	계	227	295	359	481	416
공군	부사관	154	165	206	253	383
	위관급	13	21	29	44	52
	영관급	44	65	73	134	92
	계	211	251	308	431	527
해병대	부사관	28	33	39	71	60
	위관급	4	4	3	7	16
	영관급	11	10	22	9	11
	계	43	47	64	87	87
계		**1,351**	**1,694**	**2,212**	**2,723**	**2,869**

자료: 국방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2025. 4. 7. ~ 10. 31.「초급간부 전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중이므로(예산액 3,000만원), 해당 연구 내용과 초급간부 처우 개선 필요성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송무지원 사업: 패소사건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송무지원’ 사업은 소송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보훈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40.7%) 증액된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송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송무지원	398	398	560	162	40.7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행정소송 사건 중 부상 등과 연관된 질환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학자문·신체감정 제경비, ② 변호사 선임·자문료, ③ 패소사건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 및 송무 수행 경비 등이 포함됨.

[송무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송무지원 사업: 5억 6,000만원**
- 주요 내용: 의학자문·신체감정료(1억 1,400만원), 변호사 선임·자문료(4,0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3억 2,600만원)**, 송무 수행 경비(8,000만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행정소송 패소율과 평균 패소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패소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 사례 분석, 원만한 분쟁 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패소율 및 평균 패소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행정소송 패소율의 경우 2022년 7.0%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10.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평균 패소비용 또한 2022년 460만원에서 2025년

22) 일반회계 - 송무지원(7167-329)(기획조정실)

상반기 기준 68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국가보훈부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6.
처리 건수(A)	428	419	391	184
패소 확정 건수(B)	30	34	34	18
패소율(=B/A)	**7.0**	**8.1**	**8.7**	**10.0**
패소비용 지급 건수(C)	57	43	43	33
패소비용 지급액(D)	261	220	239	226
평균 패소비용(=D/C)	**4.6**	**5.1**	**5.6**	**6.8**

주) 패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이 곧바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연내 패소 확정 건수와 연내 패소 비용 지급 건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2026년도 패소사건 소송비용 예산안은 2025년 평균 패소비용(680만원)에 2022~2024년 평균 패소비용 지급 건수(48건)을 곱연산한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2억 2,800만원) 대비 43.0% 가량 증가한 것임.

그러나 패소사건 및 소송비용 증가에 대하여는 보훈행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이 사업의 목적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이후 주요 패소 확정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 사건의 패소 원인이 질병·부상의 공무관련성 및 의학적 증거 판단, 법령해석 등에서 국가보훈부와 법원 간 견해 차이로 확인됨.

[2023년 이후 국가보훈부 주요 패소 확정 사건 현황]

(단위: 원)

연도(사건번호)	패소 원인	패소비용
2023년(2020구단79403)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4,663,991
2023년(2021구합31939)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	13,408,150
2023년(2021구단21617)	독립유공자의 사실상 손자녀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3,846,380
2024년(2021구단59727)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3,901,292
2024년(2021누11809)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5,720,670
2024년(20구단102053)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4,252,770

주) 연도별 패소비용이 가장 큰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작성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질병·부상의 공무관련성 및 의학적 증거판단, 법령해석 등에서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유사 사유로 인한 패소를 최소화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훈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 청년인턴 운영 사업: 청년인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은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16.9%)이 감액된 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청년인턴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340	1,340	1,232	△108	△8.1
청년인턴 운영	857	857	712	△145	△16.9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청년인턴 45명에게 지급될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② 시험위원 수당 및 국내여비 등이 포함됨.

[청년인턴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인턴 운영 사업: 7억 1,200만원**
- 주요 내용: 일용임금 5억 7,700만원[= 216만원 × ((44명 × 6개월) + (1명 × 3개월))], 고용부담금(6,800만원), 시험위원 수당(1,100만원), 국내여비(5,600만원) 등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에 배치된 청년인턴은 청년의 국정 참여라는 인턴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단순 행정업무 보조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년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3) 일반회계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7167-421)(기획조정실)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인턴 채용의 배경인 국무조정실의「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5. 4. 2.)에 따르면,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요구를 국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이후 국가보훈부에 배치된 청년인턴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면 기록물 등 관리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록·발급 업무 보조, 홍보 지원 등 단순 행정업무 보조가 대부분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라는 인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023년 이후 국가보훈부 청년인턴 근무 현황]

(단위: 명)

연도	모집인원	근무부서	역할
2023	25	운영지원과, 예우정책과, 보훈문화콘텐츠과,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	- 기록물 이관·정리·보존 업무 지원 - 정전 70주년 기념식 및 연계 행사 지원 -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행사 지원 - 복지카드·의료지원 등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보훈기념행사 관련 업무 지원
2024	75	운영지원과, 보훈문화정책과, 보훈문화콘텐츠과, 제대군인지원과, 복지정책과, 등록관리과, 예우정책과,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	- 도서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지원 -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홍보 지원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준비 지원 -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복지카드 관련 업무 지원 -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지원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업무 보조 -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사업 지원 - 보철용차량 업무 보조
2025	57	운영지원과, 보훈문화정책과,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기록관리과,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	- 국가유공자 등록기록철 관리 - 이달의 독립운동가 사업 관련 홍보 및 자료 정리 - 광복 80주년 보훈문화콘텐츠 업무 추진 -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추진 및 홍보 - 지역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현충시설 현장 점검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기관 업무 및 고령자가 다수인 정책수혜자의 특성 상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된 관계로 단순 업무에 청년인턴을 활용하였다는 입장이나, 제대군인 지원 사업과 같이 청년층이 정책수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 지원과 같은 단순 업무에 청년인턴을 투입한 것은 인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라는 인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년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2026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보훈기금】

<지 출>

14.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일반수용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마음치유센터 운영을 통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원(△6.9%) 감액된 1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1,451	1,451	1,351	△100	△6.9

보훈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7월부터 6개 보훈관서의 상담사 15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를 위해 6개 보훈병원(중앙보훈병원 상담사 5명, 그 외 보훈병원 상담사 각 2명)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에는 ① 전문상담사 15명에 대한 인건비, ② 센터 운영비, ③ 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됨.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인건비: 8억 1,200만원

○ 운영비: 5억 900만원

-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관리비 2억 5,8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 특근매식비 300만원, 임차료 2억 1,000만원, 출장여비 700만원, 유관기관 간담회 300만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 등

○ 유지보수비: 3,0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4) 보훈기금-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2160-474)(복지증진국)

나. 검토의견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매년 일반수용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계획안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최근 3년간 일반수용비 세부 항목별 계획액·집행액 규모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관리비’ 등 모든 항목의 계획액이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 등’ 항목은 2023년 이후 매년 1억 5,000만원 전후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2,492만원(2023년), 7,762만원(2024년), 6,547만원(2025년 8월말)에 불과하였음. ‘센터 관리비’ 항목은 2023~2024년의 경우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7,508만원(2023년), 7,238만원(2024년)에 불과하였음.

[최근 3년간(2023~25년)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 내역]

(단위: 원, %)

세부항목명	연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프로그램 운영 등	2023	150,000,000	124,921,700	83.3
	2024	147,000,000	77,621,320	52.8
	2025.8.	148,000,000	65,468,350	44.2
센터 관리비	2023	114,000,000	75,078,300	65.9
	2024	114,000,000	72,378,680	63.5
	2025.8.	110,000,000	0	0.0
계	2023	264,000,000	200,000,000	75.8
	2024	261,000,000	150,000,000	57.5
	2025.8.	258,000,000	65,468,350	25.4

자료: 국가보훈부

한편, 국가보훈부는 매년 발생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세목조정하여 공공요금, 임차료, 일반용역비(만족도 조사) 등으로 활용하였음. 2024년의 경우 집행잔액 1억 1,100만원 중 5,000만원을 임차료 부족분으로, 6,000만원을 계획에 없던 일반용역비로 활용하였음.

[2022~24년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 사유
	목-세목 코드		목-세목 코드	
2022. 2. 11.	210-01	18	210-02	공공요금 집행
2022. 10. 19.		17	210-14	순직소방관 자녀 치유 캠프 관련 및 인공지능 콘텐츠(AI) 제작
2023. 4. 5.		1	210-05	공무직 특근매식비 집행
2023. 11. 23.		1	210-02	공공요금 인상 부족분 집행
2023. 11. 23.		17	210-07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납입분
2023. 11. 23.		44	210-14	심리재활만족도 조사 및 보훈복지시설 긴급 정신건강 프로그램 실시
2023. 12. 15.		1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집행
2023. 12. 15.			210-05	특근매식비 부족분 집행
2024. 9. 25.		60	210-14	심리재활만족도 조사,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식 등 행사 대행 소요
2024. 10. 25.		1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집행
2024. 10. 25.		50	210-07	임차료 부족분 집행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이 매년 일반수용비가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계획안 중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총 2억 5,80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 항목(1억 4,800만원), ‘센터 관리비’ 항목(1억 1,000만원)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 일반수용비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5)]

25)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2024년 하반기 보훈병원 내 센터 이전으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 대상자 이용 접근성 변동 등 환경적 요인으로 2025년 상반기 집행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며, 센터 안정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내·홍보 강화, 보훈에 특화된 맞춤형 심리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원 등으로 실제 소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임.

15.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신규): 근거 규정 마련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반 통합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5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	-	552	552	순증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1인 가구, 경제적 취약 가구, 고령 남성 등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데, 국가유공자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남성 독거자로 고독사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험군 발굴·맞춤형 서비스 지원·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025년 3월 수립하였음.

[2025년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위험군 발굴	독거 가구 중 취약계층으로서 기존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8,522명 발굴
맞춤형 서비스 지원	8,522명의 위험군을 장애 정도, 국가유공자 특성,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4단계로 분류(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의심군)하고, 위험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그 중,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에 대해서는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제도적 기반 구축	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자료: 국가보훈부

26) 보훈기금-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2160-476)(복지증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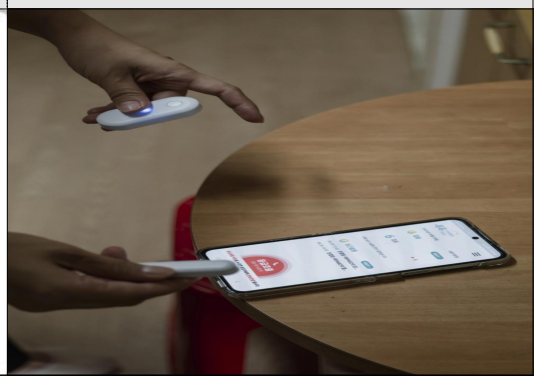
이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에는 국가보훈부가 발굴한 8,522명의 위험군 중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인 ① AI기반 자동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이용료, ② AI기반 안부확인 기기 이용료, ③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비 등이 포함됨.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일반용역비: 5억 5,200만원 - 관리대상 4,000명 × 서비스 단가 11,500원 × 12개월 * 서비스 단가 11,500원 = 자동전화 3,300원 + 안부확인 기기 3,200원 + 긴급출동비 5,000원

자료: 국가보훈부

[AI기반 안부확인 기기]

문열림 센서	휴대폰 비상호출 버튼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보훈 관련 법령상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존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

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하여 차년도 정책을 내실화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28].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고독사 예방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 규정으로, 국가보훈부의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와 같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 등 6개 보훈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을 비롯한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개별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8)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9)
제68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6,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3억원(13.0%) 증가함.[1)]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394	5,394	6,097	703	13.0
총수입	5,394	5,394	6,097	703	13.0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원(14.2%) 증가함.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634	1,634	1,866	233	14.2
총지출	1,634	1,634	1,866	233	14.2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6,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3억원(13.0%) 증가함.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394	5,394	6,097	703	13.0
합 계	5,394	5,394	6,097	703	13.0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원(14.2%) 증가함.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634	1,634	1,866	233	14.2
합 계	1,634	1,634	1,866	233	14.2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87억 1,9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인원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확충·출장여비 및 교육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7032-504)	6,842
2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1231-313)	1,877
총지출		8,719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전산운영경비’, ‘카르텔환경개선’, ‘경쟁제한 규제개선’ 및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 등 총 4개임.[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전산운영경비(7031-302)	2,066	3,236	1,170	56.6
2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842	1,521	679	80.6
3	경쟁제한 규제개선(1251-331)	629	822	193	30.7
4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1331-400)	1,718	2,696	978	56.9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간,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 전자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및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고도화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인원 증원에 따라 관련 장비 및 교육을 확대 편성하였음.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활히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원을 전제로 증원된 포렌식 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면밀히 추산하여 이를 반영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포렌식 교육’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자를 디지털포렌식 현업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 후 인력배치의 문제가 있었고 2025년 교육 수요 미달로 위탁교육자가 선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신규): 법률 시행일 도래 이전 전자심의시스템의 적기 구축 필요

가. 개 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8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6,842	6,842	순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시스템 구축비 20억 1,000만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비 2억 9,400만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3억 8,000만원,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5억 5,400만원, 상용SW 도입비 35억 5,600만원, 조달수수료 4,800만원 등 총 6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4) 일반회계-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7032-504)(심판총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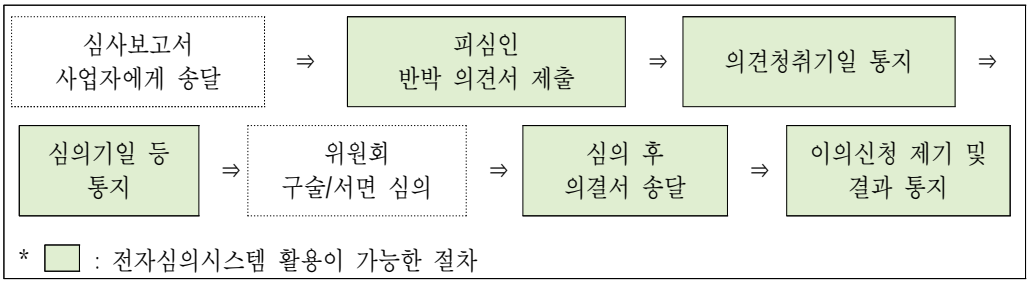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정보 및 심의 관련 문서를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심의·의결 업무절차 개요]



○ 세부 구축 내용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심의업무의 디지털화: 사용자 중심의 웹 기반 포털을 통해 심의 일정 및 현황, 심결 결과 등을 통합 제공하고, 심의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 제출, 송달 확인 등의 기능을 구현
  - ·검색 기능 고도화: 유사 심결례 검색, 키워드・사건유형・기간별 필터기능을 통해 심의자료 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
- (디지털 송달 체계 구축)
  - ·온라인 송달 및 모바일 전자고지: 온라인 문서 송달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등 디지털 송달 인프라를 마련하여 수·발신자의 편의성 제고
  - ·전자서명 인증관리: 제출 및 송달자료 등 주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 및 타임스탬프를 적용하고 전자서명 검증 모듈을 연계하여, 문서의 무결성・진본성・부인방지성 확보
- (페이퍼리스 기반 심의문서 관리체계 구축)
  - ·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심의업무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심의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문서관리 체계를 구축
- (대민서비스 구축)
  - ·대민서비스 통합창구 운영: 기존의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신고 및 진행상황 확인)과 ‘전자심의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대민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검토의견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활히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 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 ·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제98조의3이 개정되었음.[5)]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후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7일까지 이와 같은 전자심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가칭)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을 수행하였고, 2026년에는 ISP 산출물을 바탕으로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을 68억 4,200만원 편성한 것임.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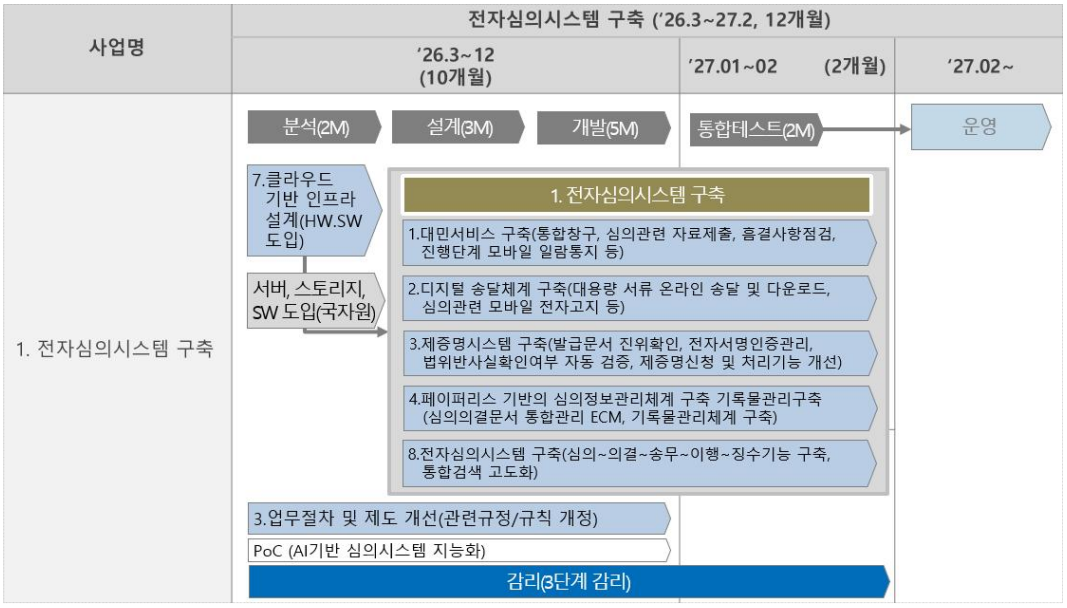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가칭)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 개요]

- (사업명)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가칭)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2025. 3. 14. ~ 2025. 7. 12. ・ 중간산출물 5.27. 제출, 최종산출물 7.9. 제출 - (계약금액) 1억 3,000만원 - (사업내용)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사업 기획 등 ・ 심의절차의 전자화, 시스템환경 마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창구 운영,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법률 개정사항을 2026년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2단계 AI 기반 전자심의 지능화' 사업은 2027년도 예산 반영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까지 조달청 공고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석(2개월), 설계(3개월), 개발(5개월)을 마치고 2027년 1~2월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전자심의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임.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 월별 추진 일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등록, 입찰공고, 계약협상 및 계약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 3월 초까지 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스토리지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G-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인데,[6][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및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서버·스토리지의 구축계획이 지연되고,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의 설계 역시 이에 맞물려 지연될 우려가 있음.[8]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노후 시스템의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G-클라우드 사업 시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9]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7일까지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G-클라우드 장비내용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자심의시스템의 후속 설계·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6)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부에서 사용할 정보자원(HW·SW)을 일괄 구매해 통합 구축하고 있음.
G-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전환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됨에 따라 사업 수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업무 협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타 부처의 소요를 모두 반영하여 통합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DBMS, Web서버, WAS 등) 구입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 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 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함(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6.)

8) 2026년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안에서는 G-클라우드 활용을 전제로 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 관련 도입비용 없이 상용SW 도입 관련 자산취득비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G-클라우드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내 자체구축 등의 방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권, 2025.8., p.325.

2.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신규): 디지털포렌식 인원 증원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및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확대 및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인원 증원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확충, 출장여비 및 교육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	-	1,877	1,877	순증
포렌식 장비확충	-	-	1,692	1,692	순증
포렌식지원	-	-	169	169	순증
포렌식 교육	-	-	16	16	순증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이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정원 확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19인 추가할 예정임.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포렌식 조사관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여비 및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포렌식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에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는, 포렌식 조사관용 물품 및 장비(노트북·SSD·캐리어·분석용 워크스테이션 등) 6억 2,100만원, 포렌식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비 10억 7,100만원, 포렌식지원 출장 국내 여비 1억 6,900만원, 포렌식교육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0) 일반회계-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1231-313)(조사총괄담당관)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포렌식 지원출장용 장비 확충: 16억 9,200만원
- 포렌식 조사관용 물품 및 장비 6억 2,100만원
· 조사용 노트북: (현 14명 + 증 19명) × 200만원 = 6,600만원
*기존 보유한 SSD의 내구연한 도래로 현원에 대해서도 신규 구매
· 조사지원용 SSD: (현 14명 + 증 19명) × 1개 × 26만원 = 900만원
*기존 보유한 SSD의 내구연한 도래로 현원에 대해서도 신규 구매
· 장구류 캐리어: (증 19명) × 1개 × 15만원 = 300만원
·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5억 4,300만원
- 포렌식 조사관용 포렌식 SW 신규 도입비: 10억 7,100만원
· 모바일포렌식 자료수집SW 19식 × 3,630만원 = 6억 9,000만원
· 모바일포렌식 자료분석SW 2식 × 1억원 = 1억 9,900만원
· 대용량데이터 분석SW 2식 × 9,100만원 = 1억 8,200만원
○ 포렌식지원: 1억 6,900만원
- 포렌식조사관 디지털 자료수집 지원 출장여비 지급 1억 6,900만원
· 33명 × 13.1개소 × 39만원 = 1억 6,900만원
○ 포렌식교육: 1,600만원
- 증원에 따른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9명 × 84만 2,000원 = 1,6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로, 현재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 사업에도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관(현 14인)의 포렌식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내부적으로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 이후 정원 증원이 심사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증원 관련 예산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사업’에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나. 검토의견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원을 전제로 증원된 포렌식 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내용상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포렌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현장조사 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휴·폐업 여부 확인조사 등 디지털포렌식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조사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이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정원을 150명 확대하면서 현장조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원을 19인 증원할 계획이므로, 증원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원이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증원인원 19인 중 계장급 3인(4급 1인, 5급 2인)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업무 인원 19인을 전제로 장비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장급 인원에 대한 장비구매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의 경우, 과장 1인, 계장 4인(5급 4인), 6급 2인 및 일반임기제 16인(임기제6급 6인, 임기제7급 8인, 임기제9급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실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일반임기제로 임용된 주무관급 인력 14인이 수행하고 있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사업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역시 디지털포렌식 현장인력 14인을 기준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조사총괄담당관실 현원의 직급별 구성 현황]

(2025.10. 기준)

과장	4급	5급	6급	일반임기제6급	일반임기제7급	일반임기제9급
1인	1인	4인	2인	6인	8인	1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조사총괄담당관실에 19인을 증원하면서 계장급 3인(4급 1인, 5급 2인)과 주무관급 16인(6급 8인, 7급 8인)을 충원할 예정임. 그런데 증원되는 계장급 인원까지 디지털포렌식 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2026년 조사총괄담당관실 직급별 증원 계획안]

구분	4급	5급	6급	7급	소계
증원 인원	1인	2인	8인	8인	19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증원되는 계장급 인원 3인의 주요 업무는 디지털포렌식 현장 업무가 아니라 포렌식 제도·절차기획 및 예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한 실제 디지털포렌식 HW·SW 장비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11]

11)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조사총괄담당관실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19인을 증원하였다고 하나, 디지털포렌식 조사지원 관련 주요 업무를 포렌식 제도·절차기획, 통계관리, 수집자료·장비관리, 포렌식 시스템·분석실·선별실·교육장 등 관리 및 예결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3. 포렌식 교육 사업: 교육 후 부적정한 인력배치 및 교육 수요부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포렌식 교육’** 사업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포렌식 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961	961	942	△19	△2.0
포렌식 교육	30	30	30	-	-

이 사업은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1,600만원과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야 지도자 양성 외부기관(서울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인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학위 과정(2년)에 대해 2년에 1인을 선발하여 매년 1400만원씩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2026년도 포렌식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포렌식 조사관 대상 전문교육 1,600만원
ㅇ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1,400만원
- 정규학기 등록금 지원금 560만원×2회 +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금 280만원×1회
※ 등록금: 정규학기 800만원, 계절학기 35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2) 일반회계-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조사총괄담당관)

나. 검토의견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자를 디지털포렌식 현업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 후 인력배치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2025년 교육 수요 미달로 위탁교육자가 선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격년에 1인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개요]

◦ 개요
- 훈련기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계약학과) - 디지털포렌식 전공(석사)
- 훈련기간: 2년 야간 교육과정(총 29학점)
- 훈련인원: 2025년 기준 1인 선발

◦ 지원요건
- 공정위 3년 이상 실근무한 4~9급 경력직 공무원
- 만 53세 이하, 어학요건(teps 256점 이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선발절차
- ① 내부추천서 등 제출·지원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1인)*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탁교육대상자 추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 근무경력 및 평정, 포렌식부서 경력 등 고려

◦ 훈련비
- 정규학기 560만원(등록금의 70%), 계절학기 280만원(등록금의 80%) 지원

◦ 훈련 후 보직
- 교육이수 후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
  * 교육훈련 후 보직은 인사팀과 협의하되, 인사상황에 따라 조사총괄담당관실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타 부서 배치도 고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실시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부서 경력 등을 고려하고, 훈련 이후에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 3년 동안 근무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2인(2021~2022년, 2023~2024년 교육)의 경우 포렌식부서 경력이 없었고,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5년에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가 없어 관련 예산을 불용할 예정임.

[최근 5년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부서배치 현황]

구분	2021~2022년 위탁교육	2023~2024년 위탁교육	2025년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간	2021.3.~2023.2.	2023.3.~2025.2.	교육수요 부족으로 2025년 예산 불용
교육 당시 직급 및 재직기간	사무관(5급) 20년 9개월	전산주사(6급) 7년 4개월	
교육 이전 재직부서 (최근 10년)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8.1.~2023.12.)	
전체 재직기간 중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 경력	-	-	
교육 이후 재직부서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3.12.~현재)	

주) 공정거래위원회 내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는 디지털포렌식 TF(2010.4.~2017.9.), 디지털조사분석과(2017.9.~2023.4.), 조사총괄담당관실(2023.4.~현재)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는, 최근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2인은 모두 기획조정관실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는 정보화사업의 구축・운영 등으로 디지털포렌식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음.[13)14)]

13)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정보화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지식정보 운영 및 정보화자원의 관리
-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관리
- 위원회 사건조사 지원
-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위탁교육 계획은 훈련 후 보직배치에 관하여 교육 이수 후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교육을 완료한 2인은 각각 정보화담당관실, 소비자안전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후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야 위탁교육 후 부서배치 시 원칙적으로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여야 하나 인사상황에 따라 타부서 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나,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또한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실제 디지털포렌식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14인(임기제6급 6인, 임기제7급8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위주의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은 실제 디지털포렌식 현장업무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15)]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후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아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2025년에는 교육 수요 미달로 위탁교육자가 선발되지 않는 등 사업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이므로,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전자적 증거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면서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업무 전문인력 14인(임기제 6급 6인, 임기제 7급 8인)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음.

* 조사총괄담당관실 현원의 직급별 구성 현황(2025.8.)

과장	4급	5급	6급	일반임기제6급	일반임기제7급	일반임기제9급
1인	1인	4인	2인	6인	8인	1인

금융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4조 9,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49억원(26.4%) 증가함. 예산은 1,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원(54.1%) 증가하고, 기금은 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802억원(25.7%) 증가함.[1)]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11	1,011	1,558	547	54.1
기 금	38,198	38,198	48,000	9,802	25.7
총수입	39,209	39,209	49,558	10,349	26.4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2조 7,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36억원(66.1%) 증가함. 예산은 2조 7,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37억원(66.1%) 증가한 반면, 기금은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92.9%) 감소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6,837	31,706	27,974	11,137	66.1
기 금	1	1	0	△1	△92.9
총지출	16,838	31,707	27,974	11,136	66.1

나. 예산안

2026년도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원(54.1%) 증가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11	1,011	1,558	547	54.1
합 계	1,011	1,011	1,558	547	54.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2,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23억원(26.6%) 증가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1,838	56,706	52,961	11,123	26.6
합 계	41,838	56,706	52,961	11,123	26.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9조 3,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337억원(△1.5%) 감소함.[2)]

[2026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공적자금 상환기금	64,384	64,384	74,206	9,822	15.3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11	492	465	△46	△9.0
신용보증기금	115,125	116,125	99,435	△15,690	△13.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2,651	22,651	22,249	△402	△1.8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8,092	48,092	48,700	608	1.3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47,496	47,496	48,867	1,371	2.9
합 계	298,259	299,240	293,922	△4,337	△1.5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참고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총수입·총지출에 계상되지 않는 금융성 기금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금융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5개(2조 4,929억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그 중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446억원이 편성되었음.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경기 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국민성장펀드’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조원이 편성되었고,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금융패키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프로그램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300억원이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관세 피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 18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청년미래적금	744,625
2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100,000
3	국민성장펀드	1,000,000
4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신용보증기금]		
5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18,298
총지출		2,492,923

3) 신규사업은 총계 기준(내부거래·보전거래 제외)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금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회계의 날’, ‘금융의 날 행사’ 사업 등 총 7개임.[4)]

[2026년도 금융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05	1,906	701	58.2
2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50	1,240	790	175.6
3	회계의 날	59	77	18	30.5
4	금융의 날 행사	69	90	21	30.4
[신용보증기금]					
5	업무용건물	14,294	22,533	8,239	57.6
6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1,294	2,440	1,146	88.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	기금관리비	259	575	316	122.0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계 기준(내부거래·보전거래 제외)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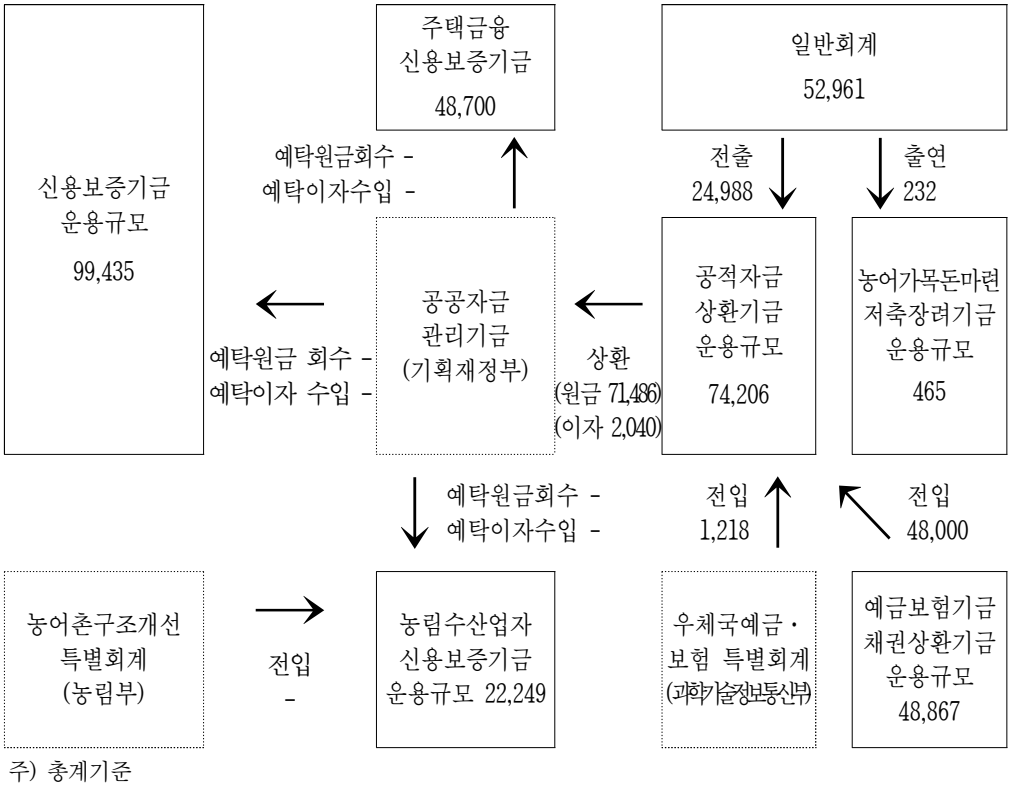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4,988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32억원을 출연함.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조 1,486억원의 예수원금 및 2,040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4조 8,000억원을 전출함.

[금융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음.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예산(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핀테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음. 또한 금융약자 지원 예산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연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에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종전의 청년자산형성 상품 대비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이 가장 높아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우대지원 및 지원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복권기금의 정책금융상품 관련 출연금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재정이 전액 보증하는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음.

넷째, ‘국민성장펀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전략산업 및 생태계 지원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나, 펀드의 재원·투자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다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운용 방향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예산안 제출 후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10.29.)하였는바,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추가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금융위원회가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처리 과정에서 이자수입 및 수익금 등을 반납 받아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00만원(70.7%) 증가한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58	58	99	41	70.7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 사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처리 후의 이자 및 수입금을 반납 받아 이를 기타재산이자수입에 계상하고 있음.[6)]

---

5)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행정인사과)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참고로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2년 수납실적은 2,300만원, 2023년 수납실적은 9,900만원, 2024년 수납실적은 1억 7,500만원이고,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은 2022~2024년 수납실적의 평균인 9,900만원으로 편성됨.

나. 검토의견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보조사업의 정산처리 후 이자 및 수입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2026년에는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예산을 추가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300만원, 2023년 9,900만원, 2024년 1억 7,500만원, 2025년 8월 현재 1억 5,500만원으로,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 예산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	23	23	-	100	-	-
2023	-	-	-	99	99	-	100	-	-
2024	-	-	-	175	175	-	100	-	-
2025.8.	58	58	-	155	155	267.2	100	-	-
2026(안)	99	99	-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까지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이자수입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최근 3년간의 수납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있음.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2022~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현황]

(단위: 원)

연도	연번	보조사업명	수납액
2022년	1	핀테크 지원 사업	16,775,830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528,560
	3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1,296,560
	4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2,471,120
	5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1,344,370
	6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1,016,620
	소계		23,433,060
2023년	1	핀테크 지원사업	74,843,810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3,917,730
	3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3,358,240
	4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9,828,220
	5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7,313,060
	소계		99,261,060
2024년	1	핀테크 지원 사업	147,673,680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4,242,750
	3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13,036,970
	4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4,168,510
	5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5,592,670
	소계		174,714,580
2025년 8월	1	핀테크 지원 사업	139,168,650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4,333,250
	3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11,451,529
	소계		154,953,429

주) 금융위원회는 2025년 보조사업 정산 및 이자등의 반납이 완료되어 2025년 말까지 추가적인 기타재산 이자수입이 수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2022~2025년 3개년 수납실적의 평균값인 9,900만원이 수납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그러나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예산안의 9,900만원보다 더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과 2025년 수납실적은 각각 1억 7,500만원, 1억 5,500만원으로,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의 150%를 상회하고 있음. 또한 2024년도 보조사업보다 2025년도 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보다 2026년도 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7)]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5년도 보조사업의 종료 후 이자 등이 계상되는데,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136억 4,500만원) 대비 2025년도 보조사업 예산(144억 5,200만원)이 큰 상황으로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5년도 수납액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024~2025년 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보조사업명	2024년 예산	2024년 집행실적	2025년 예산	2025년 8월 집행실적
1	핀테크 지원사업	12,063	12,063	12,566	11,368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327	327	327	327
3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1,255	628	1,559	1,054
소계		13,645	13,018	14,452	12,749

주) 보조사업 예산은 세부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비목의 예산을 합하여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예산은 적어도 2025년도 수납액에 상응하는 수준(1억 5,5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금융위원회의 보조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므로,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4년도 보조사업의 종료 후 이자 및 수익금의 반납액으로 계상되고,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5년도 보조사업의 종료 후 이자 및 수익금의 반납액으로 계상됨.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금리 변동 등의 다른 요인이 없는 이상, 2024년도 보조사업에 비해 2025년도 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에는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됨.

<세 출>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원활한 전환 유도 등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28억 3,000만원(△64.2%) 감액된 1,24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124,185	△222,830	△64.2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2025년 9월 현재 11개 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①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확대, ②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③ 성실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④ 부분인출 서비스 허용 등 청년도약계좌의 지원혜택을 강화하였음.

다만 2026년부터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계획으로,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말까지 신규 가입을 종료하고 2026년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를 대상으로 적금액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지원할 예정임.

8)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금융소비자국)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사업목적</td><td>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td></tr>
<tr><td>상품내용</td><td>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td></tr>
<tr><td>금리</td><td>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td></tr>
<tr><td>지원내용</td><td>①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table>
<tr><th colspan="2">개인소득</th><th rowspan="2">본인
납입한도</th><th colspan="2">기여금 지급한도</th><th colspan="2">기여금 매칭비율</th><th colspan="2">기여금 한도</th></tr>
<tr><th>총급여 기준</th><th>종합소득기준</th><th>당초</th><th>변경</th><th>당초</th><th>변경</th><th>당초</th><th>변경</th></tr>
<tr><td>2,400만원</td><td>1,600만원</td><td rowspan="5">70만원</td><td>40만원</td><td rowspan="5">70만원</td><td>6.0%</td><td>6.0%
/3.0%</td><td>24만원</td><td>33만원</td></tr>
<tr><td>3,600만원</td><td>2,600만원</td><td>50만원</td><td>4.6%</td><td>4.6%
/3.0%</td><td>23만원</td><td>29만원</td></tr>
<tr><td>4,800만원</td><td>3,600만원</td><td>60만원</td><td>3.7%</td><td>3.7%
/3.0%</td><td>22만원</td><td>25만원</td></tr>
<tr><td>6,000만원</td><td>4,800만원</td><td>70만원</td><td>3.0%</td><td>3.0%</td><td>21만원</td><td>21만원</td></tr>
<tr><td>7,500만원</td><td>6,300만원</td><td>-</td><td>-</td><td>-</td><td>-</td><td>미지급</td><td></td></tr>
</table>
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혜택</td></tr>
<tr><td>금리</td><td>취급 은행별 상이하고, 최대 6.0%</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만기일시지급</td></tr>
<tr><td>취급은행</td><td>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청년도약계좌 제도변경 내용]

연번	제도변경 내용	~2024년	2025년 이후
1	기여금 지급 확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월 최대 2.1~2.4만원 지급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연 최대 8.87%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월 최대 2.1~3.3만원 지급 ·기여금 매칭한도와 무관하게 납입한 만큼 기여금 지급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60%)
3	성실납입 시 개인신용평가 점수 가점 부여	·가입유지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 시 개인용평가점수 가점 최소5~10점 부여
4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이 사업은 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1,194억 4,600만원, ② 인프라 구축 47억 3,700만원, ③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 200만원으로 구성됨.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은 2026년 소요 기여금 3,727억 4,600만원에서 2025년 말 예상 잔여 기여금, 이자수입 및 기여금 환수액 등 2,533억원을 제외한 1,19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여금 지원: 1,194억 4,600만원
- ① 2026년 소요 기여금 3,727억 4,600만원 - ② 2025년 말 예상 잔여 기여금 등 2,533억원
  · 기가입자(2023~2024년) 및 2025년 신규가입자 × 매칭비율(최대 6%) × 납입액(최대 70만원) × 가입기간 = 3,727억 4,600만원
  · 2025년 말 예상 잔여 유보액 1,832억원, 예상 이자수입 333억원, 예상 기여금 환수액 368억원

○ 인프라 구축: 47억 3,700만원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비 18억 4,5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소득심사센터 인건비 10억 5,100만원
- 경상운영비 18억 4,100만원

○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200만원
- 국내여비 2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연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에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허용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연계방안]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 상품구조에서 가입자는 1,908만원+이자*(6% 기여금 지원율) 또는 2,016만원+이자*(12% 기여금 지원율)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관계기관 TF 킥오프 회의 개최”, 2025.9.12.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이 높고, 납입기간이 짧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기여금·납입기간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3~6%	6%(일반), 12%(중소기업)
납입기간	5년 (3년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기여금 60% 인정)	3년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 가입신청, 7월 계좌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청년미래적금 대상조건과 정부기여금 확대 수준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①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일부 가입자 약 76만명[9]과 ② 2,400~6,000만원 이하 일부 가입자 약 75만명[10] 등 약 15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일시에 이동한다고 가정하였음.

[2026년 청년도약계좌 월별 가입유지 및 해지 예상]

(단위: 만명,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가입 유지자 수	220.6	218.7	216.9	215.1	213.5	211.5	60.3	57.3	54.5	51.6	48.9	46.3	(평균) 134.6
(전체 계좌) 적금 납입액	13,148.1	13,033.0	12,925.7	12,821.7	12,723.4	12,604.0	3,592.6	3,414.6	3,246.0	3,075.8	2,914.3	2,757.1	96,256.2
(전체 계좌) 정부기여금 지급액	509.6	505.1	500.8	496.6	492.7	488.0	139.1	132.2	125.7	119.0	112.7	106.7	3,728.2
기간당 해지계좌수	2.1	1.9	1.8	1.7	1.6	2.0	151.2	3.0	2.8	2.9	2.7	2.6	176.4
누적 해지계좌수	47.7	49.6	51.4	53.1	54.8	56.8	208.0	211.0	213.8	216.7	219.4	222.0	222.0
해지율	18%	18%	19%	20%	20%	21%	78%	79%	80%	81%	82%	83%	83%

자료: 금융위원회

9) 금융위원회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 중 2025년 6월 말 기준 가입 2년 미만인 가입자 34만명을 포함하여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유지심사 시 소득상승으로 인하여 개인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를 16만명으로 예상하여 총 76만명으로 추정함.

10) 금융위원회는 개인소득 2,400~6,000만명 이하 가입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입자를 75만명으로 예상함.

과거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2024년)와 비교할 때,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연계가입의 고려변수가 많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과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비교적 짧은 2년이어서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 대해 적금액 전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청년도약계좌로의 갈아타기를 허용할 수 있었음.

이와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계가입 신청·접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입자마다 납입기간 및 적금액이 각각 상이하여 연계가입 관련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11]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초 청년도약계좌의 전환 과정에서 거래실적이 저조한 사회초년생 청년층이 입출금 제한 문제 등으로 인해 연계가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번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당시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 신청을 시작한 이후,[12]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희망적금 계좌가 한도제한계좌[13]로 등록되어 입출금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14] 사회초년생 및 청년 등의 한도제한계좌 문제는 사전에 파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환신청이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난 2024년 2월 23일에서야 은행권에 특별거래 한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15]

---

11) 과거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시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2년을 모두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도약계좌의 실납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연계 가입 시에는 ①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청년 미래적금의 납입기간은 0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것인지, ②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전체를 청년미래적금의 납입기간으로 산입할 것인지, ③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 중 일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혹은 ④ 납입기간 인정 상한을 설정하고 납입기간 일부만을 청년미래적금의 납입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2)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인원은 52만명이고, 납입액은 3조 2,017억원임.

13) 한도제한계좌란,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 시 대포통장 개설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출금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영업점 출금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임.

14) 소득증빙이 어렵고 거래실적이 저조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적금을 출금하거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드발급・자동이체설정 등 거래실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둘째,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지원 예산을 혼용하여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세부사업이므로 각각의 소요예산을 안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6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존 구축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비 18억 4,5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소득심사센터(19인) 인건비 10억 5,100만원,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운영비 18억 4,100만원 등 총 47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다만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콜센터 외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음.

한편 2026년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신규인력(6인) 인건비 2억 6,900만원, 민원상담 용역비(100인) 41억 5,500만원, 홍보비·복리후생비 등 경상운영비 3억 8,600만원 등 총 4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청년미래적금 민원상담 콜센터 공간 임차료, 통신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편성되지 않았음.

[2026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 편성 현황]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 인프라 구축(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7억 3,700만원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비 18억 4,5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소득심사센터 인건비 10억 5,100만원 - 임차료 등 경상운영비 18억 4,100만원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 인프라 구축(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8억 1,5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규인력 인건비 2억 6,900만원 - 민원상담 용역비(외주인력) 41억 5,500만원 - 홍보비 등 경상운영비 3억 9,100만원 (홍보비, 복리후생비)
○ 운영지원(금융위원회 집행): 200만원 - 국내여비 200만원	○ 운영지원(금융위원회 집행): 3억 1,000만원 - 일반용역비 2억 4,600만원 - 정책연구비 5,000만원 - 사업추진비 800만원 - 일반수용비 400만원 - 국내여비 2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출연금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필요한 콜센터 공간 임차료, 통신비 등을 집행하고,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출연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필요한 콜센터 외주인력 인건비 등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15)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2024.2.23.

[2026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사업 경상운영비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경상운영비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구분	편성 사유		
사무실 임차료	연간 상담센터 1개층 임대료 및 관리비	-	934
통신비	연간 상담센터 콜 통신비	-	522
자산취득비	자산취득·수선유지 및 사무환경 개선	-	156
복리후생비	신규 인력 복리후생비	5	-
홍보비	홍보콘텐츠 제작 및 광고 매체비 집행 등	386	-
연구용역비	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 비용	-	205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	4
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	5
일반수용비	회의 준비용 소모품 및 회의 참석 수당	-	15
합 계		391	1,841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상담센터 사무실 임차료 등 자산형성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예산은 청년도약계좌에 대부분 반영하고 청년미래적금에는 홍보비, 신규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일부만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각각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상이한 세부사업으로 기여금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목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을 거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은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사전에 노정하는 한편, 출연금의 면밀한 정산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의 인프라 구축 등의 적정 소요를 다시 산출하여 각 세부사업에 맞는 적정 예산을 조정하거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집행과정에서 세부사업 간 전용을 통해 실제 사업 소요에 맞게 두 사업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청년미래적금 사업(신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446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청년미래적금	-	-	744,625	744,625	순증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설계하면서 자산형성 지원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 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층을 중심으로 되도록 많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긴 만기부담 등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17)]

구체적으로는 지급대상 요건[18)]을 충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고,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3년 근속)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2%를 기여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또한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16) 일반회계-청년미래적금(1831-891)(금융소비자국)

17)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관계기관 TF 킥오프 회의 개최”, 2025.9.12.

18) ① 개인소득(총급여) 6천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②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임

2026년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① 2026년 6월 상품 출시 및 7월 가입·심사를 전제로 5개월 간 483만명에게 지원할 기여금 7,395억원, ② 서민금융진흥원 인력 충원 및 콜센터 외주인력 용역비 등 인프라 구축 48억 1,500만원, ③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3억 100만원으로 총 7,446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여금 지원: 7,395억원 - 기여금: 7,395억원 = 483만명(26년도 신규 가입자) × 기여금(6~12%) × 5개월(2026.8.~12., 5개월) *일반형(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청년 소득자 및 소상공인) 및 우대형(중소기업 신규취업자) 가입 구분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차등(6%/12%) 지급 ○ 인프라 구축: 48억 1,5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규 인력 인건비(6인×6개월) 2억 6,900만원 - 민원상담 용역비(외주인력 100명) 41억 5,500만원 - 경상운영비 3억 9,100만원 ○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3억 1,000만원 - 일반용역비 2억 4,600만원 - 정책연구비 5,000만원 - 사업추진비 800만원 - 일반수용비 400만원 - 국내여비 2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미래적금은 종전의 청년자산형성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기여금 매칭비율이 가장 높아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청년미래적금은 ① 개인소득 6,0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③ 청년에게 기여금의 6~12%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청년미래적금은 지금까지의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 자산형성 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중 가장 높은 매칭기여금 지원율을 설정하였고,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 대비 짧은 3년으로 설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보임.

\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개요]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사업 연도	2022.2.21.~2022.3.4.	2023.6.~	202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원 대상	①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③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	①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③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20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납입금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 저축장려금 지급 (최대 36만원)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납입금에 비례한 매칭형태로 기여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납입금액의 3~6% 수준)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일반형: 납입금액 6% 지급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은 납입금액 12%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미정
상품 내용	월 최대납입 50만원, 2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50만원,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기본금리 5%(최대 6.0%)	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미정
기여금 지급 방식	만기 일시지급	매월 지급	미정
취급 은행	12개 은행	11개 은행	미정
비고	-	2년 이상 성실 납입자에 대한 부분인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제도 신설(2025.~)	2026년 6월 상품출시 예정

주)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상품출시 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지원대상 요건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 대비 개인소득·종합소득금액·가구소득 기준 모두 강화되었으나, 청년희망적금 대비 개인소득·종합소득 기준은 완화되었음.

기여금 매칭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미래적금은 청년희망적금(1차년도 2%, 2차년도 4%), 청년도약계좌(소득구간별로 3~6%)에 비해 높은 6% 또는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한정)를 지원할 계획임.

다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경우 세대 간 및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경우 지원대상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 상품이 부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고,[19]

청년층 내에서도 현재 구직 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20]에는 가입이 어려워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려는 청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과,[21] 가구소득 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세대 독립 후 부모로부터 도움을 계속 받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22][23]

19) 뉴시스, "소득 아닌 자산 봐야, 35년부턴 중년이냐... 청년희망적금 기준에 불만", 2022.2.23.
매일경제, "이 나라는 청년만 힘드나... 월 70만원·5천만원 통장에 중장년층 부글부글", 2023.12.5.

20) 과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소득 신고 이력이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나, 소득신고가 없고 소득금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함.

21) 데일리안, "구직난에 청년미래적금 권하는 정부... 취준 중인데 적금이요?", 2025.9.8.

22) 서울신문, "청년도약계좌도 부모찬스?... 월 납입액 클수록 해지율 낮아", 2024.8.27.
이데일리, "尹정부 청년도약계좌, 양극화 한계 속 종료... 미래적금 시험대", 2025.8.12.

23)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 현황]

(단위: 천명, 억원, 2025년 7월 말 기준)

월 평균 납입금액[1]	0~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소계
가입자 수[2]	236	133	120	130	185	131	1,036	1,971
(전체 대비 비중)	12.0%	6.7%	6.1%	6.6%	9.4%	6.6%	52.6%	100.0%
납입금액	1,676	3,082	4,462	6,409	11,875	10,329	87,751	125,584
(전체 대비 비중)	1.3%	2.5%	3.6%	5.1%	9.5%	8.2%	69.9%	100.0%

주 1) 월 평균 납입금액 = 계좌별 가입 후 경과기간에 대한 월 평균 납입금액
2) 일시납입자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청년미래적금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우대형 상품으로 6%p의 추가 기여금을 지원할 예정인바, 중소기업 기존 취업자 등에 비해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를 우대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규 취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해 보임.

금융위원회는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만족하는 근로자·소상공인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형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적용하여 매월 납입금의 6%를 지급하는 반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만족하는 청년 중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3년 근속)에 대해서는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적용하여 매월 납입금의 12%를 지급할 계획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우대지원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정책목적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우대는 기존 취업자 또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과거 유사사업인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장기근속 요건을 충족한 이후 장기재직 유인이 사라져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24)]

아울러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25)]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894억 2,600만원의 청년 근속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서울경제, "적금 3배 불려줘도... '내채공' 지원 청년 35% 中企 퇴사", 2024.10.9.

2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조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함.

[2026년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인센티브 개요]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지원

○ 청년 근속인센티브 개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근속인센티브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 지원내용: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을 나누어, 기업 소재지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취업기준 및 가입심사 절차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논의 중인 상황으로,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별도의 우대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규 중소기업 취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설계하고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 및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일정 등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재원규모·세제혜택이 확정된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2026년 6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고,[26]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2026년 7월 신청 및 상품가입 심사를 전제로 8월부터 12개월까지 5개월분의 기여금이 편성되었음.

26)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관계기관 TF 킥오프 회의 개최”, 2025.9.12.

[2026년 청년미래적금 월별 가입 및 해지 예상]

(단위: 만명, 억원)

구분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신규 가입자수	-	483	-	-	-	-	-	483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수	-	150	-	-	-	-	-	150
가입유지자 수	-	483	483	483	483	483	483	483
(전체 계좌) 적금 납입액	-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144,900
(전체 계좌) 정부기여금 지급액	-	-	1,479	1,479	1,479	1,479	1,479	7,395

주 1)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상품을 출시하고, 7월부터 가입신청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
2) 정부기여금은 적금 납입월의 다음달에 지급하고 정산됨
3) 상품출시 초기임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상품 해지는 없는 것으로 추산함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483만명의 신규가입자가 적금 납입액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납입하고 12월까지 해지 없이 가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정부기여금이 7,395억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 중 15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종전의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출시 당시 시장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여금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였는데,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소요액 역시 2026년 상품 출시 당시 금리 및 고용상황 등에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기여금의 소요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소요액 추계 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640만명)의 약 75%인 483만명(청년도약계좌로부터 갈아타는 인원 150만명 + 청년도약계좌 미가입자 333만명)이 일시에 납입금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저축하는 내용으로 상품 가입을 신청하여, 5개월간 적금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여금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가입대상자의 가입비율, 가입시기 및 납입한도 등을 다소 과도하게 가정한 것으로 보임.

[2026년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소요액 세부산출 근거]

○ 일반형: 7,095억원 - 2026년도 일반형 가입자(483만명) × 납입금액(50만원) × 기여금(6%) × 5개월(2026.8.~12.) ・ 가입대상 640만명(근로소득자 607만명, 소상공인 37만명) 중 75% 가입 가정, 우대형 제외 ・ 일반형 가입자 대상 본인 납입금액을 최대 상한 50만원으로 가정하고, 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청년미래적금 6월 상품출시, 7월 심사를 가정하여 8~12월 기여금 반영 ○ 우대형: 300억원 - 2026년도 우대형 가입자(10만명) × 납입금액(50만원) × 기여금(12%) × 5개월(2026.8.~12.) ・ 가입조건이 유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2022년 연평균 가입자수로 추정 ・ 우대형 가입자 대상 본인 납입금액을 최대 상한 50만원으로 가정하고, 기여금 매칭비율 12% 적용 ・ 청년미래적금 6월 상품출시, 7월 심사를 가정하여 8~12월 기여금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2025년 8월 기준 229만 9,000명)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연계가입이 상품출시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연령·소득 제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연계가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 640만명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제외한 410만명 중 81.3%인 333만명이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출시되는 7월에 바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 중 상당수는 소득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도 가입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아직 허용되는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고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기다려 청년미래적금 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만일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의 가입유인이 당초 예상 대비 낮을 경우에는 정부재정으로 출여된 기여금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 유보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2024년 결산 심사 시 청년도약계좌의 계획 대비 저조한 가입실적으로 인해,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3,590억 4,30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연내에 실집행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2024년 동 내역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위원회가 향후 추계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27)28)]

2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1권, 2025.8., p.360.

따라서 기여금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청년미래적금 상품의 가입 유인 및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8)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당초 예상 대비 가입 저조로 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교부 받은 출연금을 실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일이 반복되었음.
2023년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받은 기여금 3,440억 3,700만원 중 432억 2,100만원만 집행되고(실집행률 12.6%), 3,008억 1,600만원은 이월되었음.
2024년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출연금 560억 5,000만원을 청년희망적금으로 전용하였고, 나머지 기여금 3,029억 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08억 1,6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6,038억 900만원 중 2,843억 2,900만원만 집행되었음.

4.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신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약화 및 정부재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기존 정부 출연금(일반회계·복권기금) 및 민간 출연금 등으로 지원하던 서민금융진흥원의 각종 보증부대출을 통합하면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유스’의 정부재정 투입분 중 복권기금(3,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9]

[2026년도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100,000	100,000	순증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30] 각 햇살론 상품의 보증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일반회계·복권기금) 및 민간 출연금을 상이하게 편성해 왔음.

서민금융진흥원은 2021년까지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시적 성격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서민 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였음.[31]

---

29) 일반회계-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1831-889)(금융소비자국)

30) 근로자햇살론(2010.7.), 햇살론15(2019.9.), 햇살론유스(2020.1.), 햇살론카드(2021.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022.9.), 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3.3.), 햇살론119(2025.4.)

31)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음. 이 중 햇살론에 대하여는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한시적 성격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 카드
이용대상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청년사업자	연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출한도	최대 2,5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200만원	최대 300만원
대출금리	은행별 상이 (평균 7.5%)	11.5% 이하	15.9%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15.9%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최대 4.0% (유형별 상이)	-
보증료율	1.4~2.5%	1.4~2.5%	9.9% (대출금리에 포함)	7.9%~8.9% (대출금리에 포함)	0.1~10.% (유형별 상이)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1년 거치 가능)	3년 또는 5년	3년 또는 5년	3년 또는 5년 (1년 거치 가능)	최대 15년	-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민간
취급처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여신전문금융 (카드)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 카드
이용대상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취급처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의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227호)」 제안이유, 2021.6.8.)

금융회사는 해당 유형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시한 정책서민금융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은행권은 햇살론뱅크, 카드사는 햇살론 카드를 취급), 상품의 지속적 신설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고자 이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는 ① 민간과 정부재원을 모두 투입하던 '근로자햇살론'과 민간재원을 투입하던 '햇살론뱅크'를 합쳐 민간재원만을 투입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으로 통합하고, ② 민간과 정부재원을 모두 투입하던 '햇살론 15'와 정부재원을 투입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를 합쳐 정부재원만을 투입하는 '햇살론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하며, ③ 정부재원을 투입하던 '햇살론 유스'와 민간재원을 투입하던 '햇살론 카드'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재정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을 출연받아 ①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039억원), ② 햇살론 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 461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 예산안은 햇살론 특례보증에 투입하기 위한 1,0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3,500억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복권기금의 정책금융상품 관련 출연금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재정이 전액 보증하는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6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의 이유로 종전에는 금융업권별로 정책서민금융 취급상품이 상이하였으나, 상품체계를 간소화하여 상품 유사성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금융업권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함.

실제로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업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도 시중은행 방문 시 은행권에서는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를 신청하거나,[32] 신용평점 하위 10%를 초과

32) 근로자햇살론은 대출금리가 11.5% 이하이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이 2.5%로 최대 14%를 부담하는 반

하는 국민의 경우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되어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바 있음.

햇살론의 정책목적이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적 금융에 지속적으로 편입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통폐합 및 전 업권에서의 금융상품 취급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보다 용이하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개편을 반영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정책금융상품 관련 출연금이 크게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역할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2025년 예산은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관련 925억원, 햇살론 15 관련 90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으로 근로자햇살론 관련 1,750억원과 햇살론 유스 관련 456억원이 편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었음.

이와 달리 2026년 예산안은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관련 1,000억원이 편성되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관련 3,039억원과 햇살론 유스 관련 461억원이 편성됨.

즉 2025년 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을 비교할 때, 일반회계 사업은 1,82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복권기금 사업은 2,206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4,031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음.

면, 햇살론 15는 대출금리가 6%로 낮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이 9.9%로 15.9%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햇살론이 햇살론 15보다 유리한 상품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 회계	925	900	-	-	1,825	1,000	-	1,000
복권 기금	-	-	1,750	456	2,206	3,039	461	3,500
정부재정	925	900	1,750	456	4,031	4,039	461	4,500
공급규모	2,800	6,500 (10,500)[1)]	11,000 (33,300)[2)]	3,000	23,300	23,300	3,000	26,300

주 1)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4,000억원) 합산 시 햇살론 15의 총 공금규모는 10,500억원임
2)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조 2,300억원) 합산 시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금규모는 3조 3,300억원임
3) 2025년 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560억원→925억원), 햇살론유스(306억원→456억원) 증액을 반영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예대마진차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33)] 정부재정 투입의 확대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기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4. 상반기 (A)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025. 상반기 잠정 (B)	1/4 분기	2/4 분기 잠정	증 감 (B-A)	증감률
국내은행	18.5	21.2	22.2	12.6	5.3	7.2	6.2	3.4	14.9	6.9	8.0	2.3	18.4
일반은행	13.2	13.6	14.8	7.8	3.4	4.3	4.9	2.2	9.4	4.2	5.3	1.6	21.9
시중은행[주)]	12.0	12.2	13.0	6.7	2.9	3.8	4.4	2.0	8.4	3.8	4.7	1.7	26.0
지방은행	1.2	1.1	1.2	0.7	0.4	0.4	0.4	0.1	0.6	0.3	0.4	△0.1	△11.8
인터넷은행	0.08	0.4	0.6	0.3	0.2	0.2	0.2	0.1	0.4	0.2	0.2	0.1	13.7
특수은행	5.3	7.7	7.4	4.8	1.9	2.9	1.3	1.2	5.4	2.7	2.7	0.6	12.7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5.8.22.

33) 뉴시스, “4대 금융”, ‘역대 최대’ 실적 행진... 상반기 10조 순익, 2025.7.26.
아시아경제, “구조조정 통했다...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2,570억 흑자전환”, 2025.8.29.

햇살론 상품의 당초 취지는 제도권 금융사의 여신 행위로부터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역시 예대마진차 등을 통한 이익 확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이 필요함.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는 햇살론 15 상품의 경우 당초에는 민간 재원을 기초로 한 신용회복기금 및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되었다가[34] 2024~2025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부재정이 한시적으로 투입되었는데, 이번 서민금융상품 통·폐합(햇살론 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햇살론 특례보증)에 따라 정부재정이 영구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물론 은행권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방안」(2024.1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별출연금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정 출연금 전환을 통해 상시적인 재원을 마련하여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35][36]

---

34) 금융위원회는 2008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초과회수에 의한 금융회사 배분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신용회복기금(21개 금융기관 출자금, 총 6,970억원)과 2013년 이를 이어받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 사업에 대해 기금재원 소진을 이유로 2024년과 2025년에 연이어 정부출연금 900억원을 편성·집행하였음.

35) 참고로 2024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이 개정되어 은행권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 출연금 하한이 0.06%로 신설되어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향후 필요한 경우 법정 출연금 하한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편 2026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의 개편 시 해당 상품의 공급규모가 2025년 1조 3,300억원(민간출연금 공급분 4,000억원 포함)에서 2026년 2조 3,300억원으로 1조원(75.2%)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정부재정의 부담 심화 및 향후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는 햇살론 15 공급액 1조 500억원(민간재원분 4,000억원 포함) 및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공급액 2,800억원을 합하여 1조 3,30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두 사업을 통합한 햇살론 특례보증을 2조 3,300억원 공급할 계획임.

현행 햇살론 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2단계 구조를 통해 대출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바, 특히 당초 사업 설계 시에는 민간 재원을 기초로 한 햇살론 15에서도 지원 받기 어려운 자에 한정하여 정부재정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① (햇살론 15) 국민행복기금(민간 재원) 및 한시적(2024·2025년)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하고, ②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전액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하고 있음.

이와 달리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전액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2단계 구조 하에서 정부재정은 햇살론 15로도 구제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한정하여 소액의 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투입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햇살론 특례보증에서는 정부재정만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지원이 수행되어 정부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고,

햇살론 특례보증은 대출액에 대해 1년 거치(선택) 후 3년 또는 5년 이내 분할 상환한다는 점에서 거치기간동안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거치기간이 종료된 2027년부터 대위변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 및 햇살론 특례보증 비교]

구분	현 행		변 경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목적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자금이용 기회 제공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당초 1,400만원이나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최대 1,000만원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1년 거치(선택)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연 단위 선택)
보증 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 금리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이내*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보증 재원	(2025년 기준) 대출공급액(10,500억원) × 사업손실률(13.7%) × 보증비율(100%) = 1,448억원	(2025년 기준) 대출공급액(2,800억원) × 사업손실률(33%) × 보증비율(100%) = 925억원	(2026년 기준) 대출공급액(23,300억원) × 사업손실률(17.3%) × 보증비율(100%) = 4,039억원
예산	(2025년 기준) 1,448억원 (일반회계 900억원 + 금융회사 출연금 548억원)	(2025년 기준) 925억원 일반회계 925억원	(2026년 기준) 4,039억원 (일반회계 3,039억원 + 복권기금 1,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5.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펀드 결성·투자 촉진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4년 및 2025년과 동일하게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37]

[2026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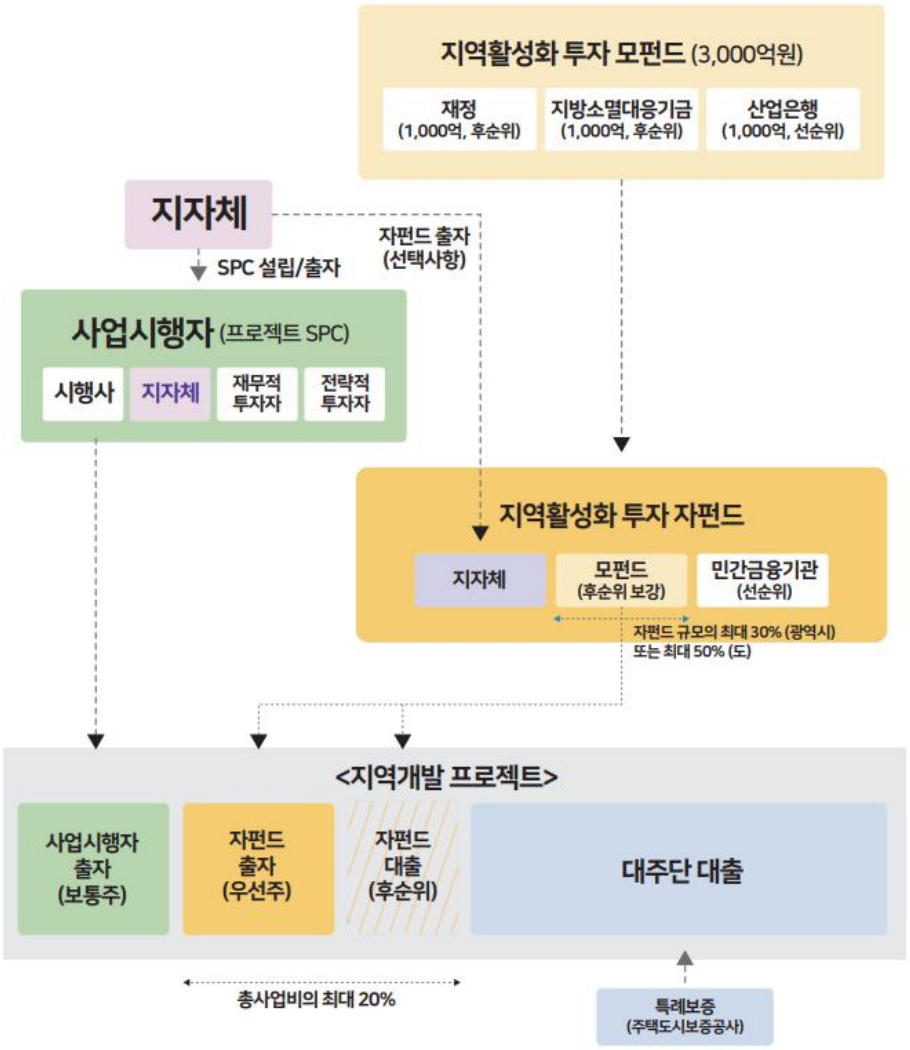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펀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매년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매년 3,000억원(3년간 9,000억원)으로 조성하고 있고,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3조원(3년간 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됨.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하고,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 우선주 등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규모는 제한이 없음.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의 제외 사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하고 있음.[38]

37)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18)(금융정책국)

38)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분쟁 중인 사업,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단, 분양수익이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 공공시설 개발재원으로 활용 시 예외 적용),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외사업에 해당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운용사에게 프로젝트 펀드 출자 심사를 신청한 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10개월(4개월+3개월+3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여야 모펀드로부터 자펀드에 자금이 납입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특히, 펀드 결성시한과 관련하여 투자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개요]

<table>
<tr><th>항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위탁운용금액</td><td>총 3,000억원 이내(프로젝트 펀드에 한함)</td></tr>
<tr><td>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td><td>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
자펀드별 모펀드 출자액은 투자대상사업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table>
<tr><th>투자대상사업 소재지</th><th>모펀드 출자비율</th></tr>
<tr><td>광역도</td><td>자펀드 결성총액의 최대 50%</td></tr>
<tr><td>광역도 외</td><td>자펀드 결성총액의 최대 30%</td></tr>
</table></td></tr>
<tr><td>펀드 결성시한</td><td>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장 6개월 연장 검토 가능</td></tr>
</table>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2025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실제 자펀드 구성과 관련해서는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승인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SPC 지분 투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예산편성 및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한 후에야 민간 투자자의 투자 참여 확정과 함께 자펀드 결성이 가능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업무흐름도]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나. 검토의견

2024~2025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기존 펀드의 투자 여력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신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조속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처음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를 선정하였다고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나,[39] 2025년 8월 기준으로 선정된 5건의 프로젝트 중 2건에 대해서만 자펀드가 실제 결성되었고 투자집행은 58억원에 불과함. 참고로 2024년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결성목표 6,000억원 중 1,112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자펀드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임.

단양·구미·여수·경주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자펀드 결성시한을 계속 연장하였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단양·경주·서산 프로젝트의 경우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았고 투자집행 실적으로는 여수 프로젝트 펀드 1건만 투자금 58억원이 집행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양 및 구미 프로젝트 펀드는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실시(단양 1회, 구미 2회)하여 결성시한이 신규로 부여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변경사항이 자펀드 운용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운용사 페널티 없이 재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여수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1차례, 경주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협의를 통해 2차례 자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한 상황이고, 서산 프로젝트의 경우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 재심사할 예정임. 이 중 여수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58억원의 투자금만 집행되었음.

39)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 개최,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투자 본격화”, 2024.3.26.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2024.9.12.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2024.11.28.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 선정”, 2024.12.26.

[2024~2025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집행 현황]

(단위: 억원, 2025.8. 기준)

차수	프로젝트 펀드명	조성현황			선정연월[3]	결성연월[4]	투자액[5]	미투자 잔액[6]	비고
		모펀드	민간	합계[1]					
2024년	충북단양 ○○신탁	68	68	136	2024.2.	-	-	-	투자계약서 체결전
	경북구미 ○○신탁	39	39	78	2024.2.	2025.8.	-	-	투자계약서 체결완료
	전남여수 ○○신탁	1,435.5	1,436.5	2,872	2024.8.	2025.2.	58	2,814	투자계약서 체결완료
	경북경주 ○○신탁	771.57	771.57	1,543.14	2024.11.	-	-	-	투자계약서 체결전
	미정[2] [충남서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130	130	260	2024.12.	-	-	-	2025년 하반기 재심사 예정
	미정	555.93	555.93	1,111.86	-	-	-	-	-
	프로젝트 펀드 소계	3,000	3,000	6,000			58	2,814	
2025년	미정	3,000	3,000	6,000	-	-	-	-	-
	프로젝트 펀드 소계	3,000	3,000	6,000	-	-	-	-	-

주 1) 조성현황 합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충남 서산 프로젝트는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 재심사 추진중이며, 상기 표의 내용은 2024.12월말 기준 제안철회 이전 현황으로 총사업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재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최초 선정연월 기준이며, 재심사를 진행한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연월은 충북 단양의 경우 2024.11, 경북 구미의 경우 2025.1임

4) 투자계약서 체결 기준

5) 자펀드가 프로젝트로 투자한 금액을 의미함

6) 자펀드가 결성되고 투자집행이 개시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미투자잔액을 기재함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2025. 8. 31. 기준)

지역	모펀드 약정총액	심사일	1차 연장기간	2차 연장기간	결성일	투자금액 집행액
단양	(1차) 113억원 (2차) 68억원	(1차) 2024.2.16. (2차) 2024.11.26.	2024.6.16. ~9.19. 2025.3.28.~6.27.	2024.9.19.~12.19. 2025.6.28.~9.29.	-	-
구미	(1차) 89억원 (2차) 89억원 (3차) 39억원	(1차) 2024.2.22. (2차) 2024.11.26. (3차) 2025.1.23.	2024.6.22.~9.24. 2025.3.28.~6.27. 2025.5.27.~8.25.	2024.9.24.~12.24. 2025.6.28.~9.29..	2025. 8.21.	-
여수	1,435억 5,000만원	2024.8.29.	2025.1.3.~4.2.	-	2025. 2.28.	58억원
경주	771억 5,700만원	2024.11.26.	2025.3.28.~6.27.	2025.6.28.~9.29.	-	-
서산	130억원	2024.12.24.	-	-	-	-

주 1) 자펀드 결성시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 심사 이후 내부결재 등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과 선정통보일이 일부 상이
3) 서산 프로젝트 펀드는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신규 운용사가 2025년 하반기 중 재심사 예정임
4) 투자금액 집행액은 자펀드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2025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모펀드 운용사는 2025년 4월 30일 선정되었으나,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5월 30일에 게시한 이후 8월 말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결국 최근 2년 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재원 2,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목표하였던 지역개발 및 지방소멸 대응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입한 재원이 모펀드 운용사에 유보되어 정부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40]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프로젝트별로 결성지연 및 투자부진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존 펀드의 상당한 규모의 투자여력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조속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40) 2024~2025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아직 7,112억원 규모(2024년 1,112억원, 2025년 6,000억원)의 프로젝트 자펀드를 선정할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미 선정된 5건의 자펀드 중 2건에 대해서만 결성이 완료되고 58억원만 집행된 상황으로 자펀드 선정, 결성 및 투자집행 모두 부진한 상황임.

6. 국민성장펀드 사업(신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

가. 개 요

‘국민성장펀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 등에 대해 직접 지분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 투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100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 민간재원 50조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조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1)]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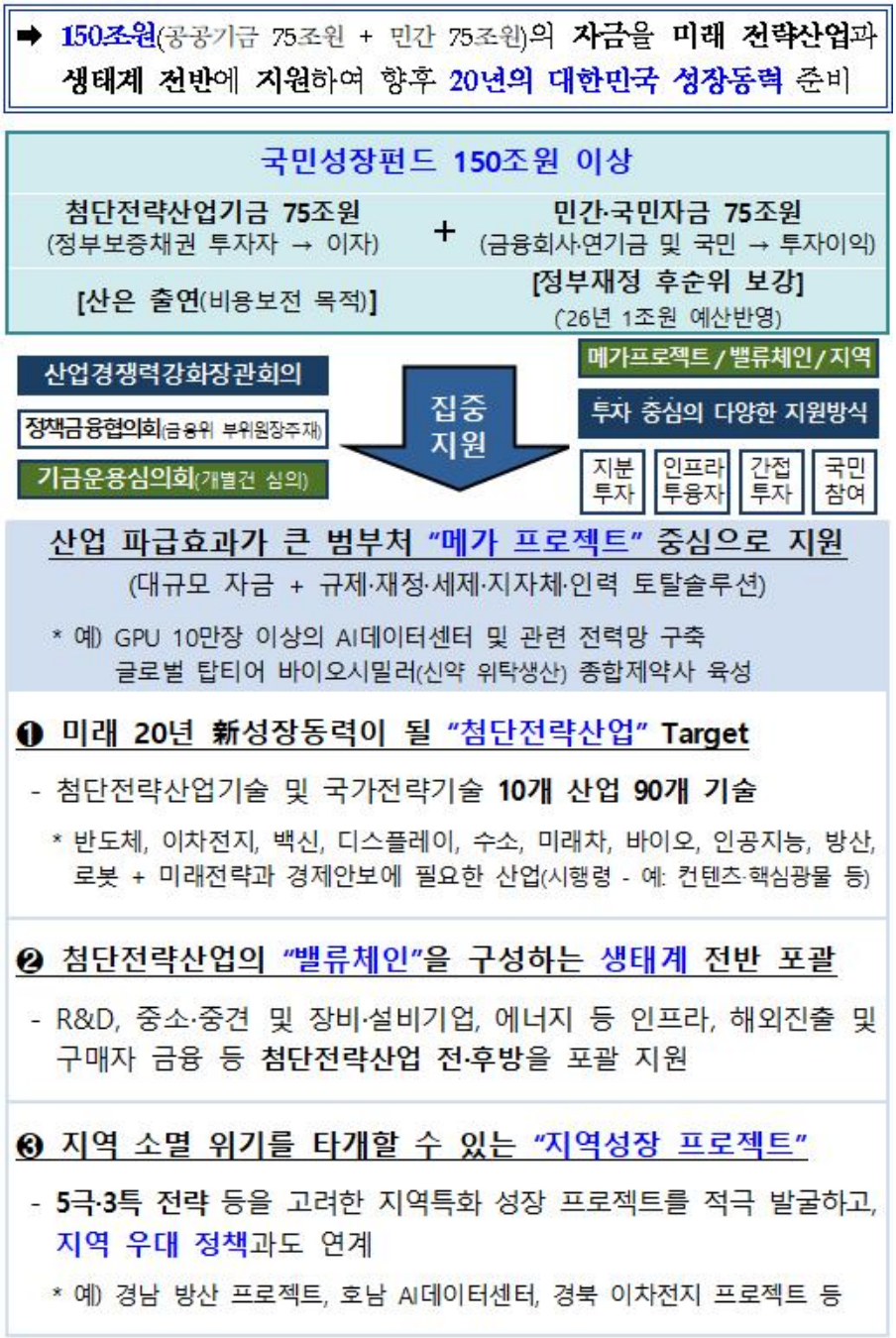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민성장펀드	-	-	1,000,000	1,000,000	순증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이 심화되어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중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10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9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재원 75조원)으로 확대하여 발표하였음.

41) 일반회계-국민성장펀드(2414-326)(금융정책국)

[국민성장펀드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에 제공하여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42)]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이며,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의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국민성장펀드 조성규모인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됨.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2026년 예산안 1조원)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국민성장펀드의 연도별 자금 조성·집행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소계
조성	첨단전략산업기금	15	15	15	15	15	75
	민간자금	15	15	15	15	15	75
	재정	1	2027년 이후 재정투입금액 미정				
소 계 (기금+ 민간)		30	30	30	30	30	150
집행 (기금+ 민간 기준)	직접지분투자	3	3	3	3	3	15
	간접지분투자	7	7	7	7	7	35
	인프라투융자	10	10	10	10	10	50
	저리대출	10	10	10	10	10	50
소 계		30	30	30	30	30	150

주 1) 금융위원회는 집행액은 예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산업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2026년도 재정 1조원을 포함한 재정투입액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구성하지 않고, 민간·연기금·국민자금 등의 후순위 보강을 통한 위험선분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자료: 금융위원회

42)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9.10.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국민성장펀드는 ① 직접지분투자, ② 간접지분투자, ③ 인프라 투·융자 및 ④ 초저리(국고채 수준) 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됨.

구체적으로는 ① (직접지분투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국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함.[43] ② (간접지분투자)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데, 과거 정책성 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할 계획임.[44] ③ (인프라 투·융자)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임.[45] ④ (초저리 대출 지원)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에 대한 자금으로 2%대 국고채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함.[46]

---

43) 금융위원회는 직접지분투자를 15조원 규모로 예시하며, 기업-첨단전력산업기금 간 합작법인으로 첨단 제조공장, 선박수리공장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기술기업의 인수합병 시 기금이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수자로 참여할 계획이라 밝힘.

44) 금융위원회는 간접지분투자를 35조원 규모로 예시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펀드 및 초장기기술투자 펀드도 별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ㅇ (국민참여형펀드) 펀드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 + 세제혜택 추진 → 성장과실 공유 * 2021년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1,688억원 모집, 재정 20% 후순위 보강) 선례
ㅇ (초장기기술투자)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술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지분투자 → 기금 마중물 + 민간자금 매칭* * 초장기 투자에는 민간참여가 어려운만큼 공공주도 기금의 적극출자 필수

45) 금융위원회는 인프라 투·융자 규모를 50조원으로 예시하며,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PF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임.

46) 금융위원회는 초저리대출 규모를 50조원으로 예시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연구개발 등의 자금을 지원하되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차입금 상환복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고 설명함.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전략산업 및 생태계 지원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바, 펀드의 재원·투자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다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운용 방향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 로봇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단순한 산업분야가 아니라 국가경제 및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 및 리스크 감내가 필요하여 세계 주요국은 직접 보조금 지원 및 고율 관세부과 등으로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47)]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 및 AI 전환 등의 투자수요 500조원[48)] 중 30%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투자를 전제로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계획한 대로 첨단전략산업 및 그 가치사슬에 대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비수도권 등을 고려하는 경우 신성장동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7) 미국은 칩스법, IRA법을 통해 총 70조원 보조금 지급안을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병행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562조원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400조원대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8)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기준 첨단전략산업의 자금투입 필요규모는 약 400조원이고, 산업계 전반의 AI 전환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를 500조원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전체 투자수요 500조원 중 국민성장펀드로 충당하는 150조원에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를 반영하면 약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자금 배분으로, ① (분야)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인공지능에 30조원 이상 공급하여 투자확대 필요성을 반영하고, ② (지역) 5극·3특 전략[49]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에 40% 이상 지원되도록 노력하며, ③ (중소·중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50]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안(예시)]

(단위: 조원)

구분	투자중심 지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합계
	직접지분	간접투자			
AI	4.0	6.0	10.0	10.0	30.0
반도체	1.6	4.3	40.0주)	15.0	20.9
이차전지	1.3	4.1		2.5	7.9
디스플레이	0.5	1.1		1.0	2.6
바이오・백신	1.4	2.7		7.5	11.6
수소・연료전지	0.8	1.3		1.0	3.1
항공우주・방산	1.1	1.5		1.0	3.6
모빌리티	0.9	4.5		10.0	15.4
원자력・핵융합	1.4	0.8		0.5	2.7
미디어・콘텐츠	1.4	2.7		1.0	5.1
로봇	0.6	1.0		0.5	2.1
합 계	15.0	35.0주) (국민참여포함)	50.0	50.0	150.0
(재원)	기금 25(마중물) + 민간 75 + 재정 5조원(뒷받침)			기금 50조원	150조원

주 1) 산업별 배분안은 산업은행의 산업별 공급실적을 기반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인공지능 분야 설비투자 확대 동향을 반영하여 일부 산업에 대해 상향 조정할 계획임
2) 국민참여형펀드는 산업별 배분없이 운영하고, 인프라 투·융자 전체 50조원 중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가 명확한 인공지능 분야 10조원 외 40조원은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다만, 국민성장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9) 5극 3특 전략은 국가균형성장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에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50)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첫째, 금융위원회는 민간재원 간의 구축(crowding-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형 정책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우선, 은행·연기금 등의 민간 재원의 경우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재원조성을 구축하지 않고 국민성장펀드에 신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시중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동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15%→20%)하는 한편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을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으로 하향하고, 위험가중치 기준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51)]

이와 같은 은행 자본규제 개선은 은행권 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펀드 등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성장펀드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예산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52)] 민간 펀딩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은행권의 투자재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로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민간 투자재원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민간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 재원의 경우 과거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예금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는 유념할 필요가 있음.[53)]

---

51) 금융위원회,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2025.9.19.

52)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관련 예산은 2025년 본예산 9,496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1조 9,4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53) 2021년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디지털·그린 등 뉴딜 사업, 혁신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모이도록 하고 그 수익을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12월 두차례에 걸쳐 조성되었고, 손실이 발생해도 최대 21.5%까지는 개인투자자 손실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뉴딜펀드는 안정적인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음.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수익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子)펀드 10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클래스 A 펀드 4개의 수익률은 전날 기준 5.88~6.36%에 그쳤으며 클래스 C 4개 펀드는 4.86~5.40% 수준임. 고액 자산가형 I 클래스 수익률은 7.31%임.(뉴시스, “잊혀진 정책형 뉴딜펀드 4년 수익률 5%대... 부진한 수익률로 마무리”, 2025.3.25.)

둘째, 정책금융 사업의 중복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한 사업 간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인프라 투자, 지역균형 발전 등을 지원할 목적인바,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및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목적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에는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 펀드' 관련 예산안 5,5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목적 출자 분야인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54]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첨단전략산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경우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업종 고도화, 창업·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셋째, 국민성장펀드는 2025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다수의 정책금융 출자사업이 사실상 흡수·통합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사업 통폐합 이후에도 정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전적·사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에는 신산업 및 주력산업(반도체, 원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및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을 위한 예산이 5개 사업 7,912억원 편성되었는데,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이와 같은 예산은 국민성장펀드에 통합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① 신산업·전략산업 및 성장 중·후기 단계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1,762억원,[55] ②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분야의

54) 중소기업모태조합 "Next Unicorn Project" 출자분야별 투자 대상 기업

출자 분야	투자 대상
인공지능(AI) 융합	인공지능(AI) 분야 기업, AI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포함
딥테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 기업

자료: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5.7.11.

55) 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1,238억원을 합하여 3,000억원이 조성될 예정임.

집중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원, ③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업은행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4,500억원(본예산 2,500억원,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 ④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350억원, ⑤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1,000억원이 대상임.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되는 산업은행 출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	추경	
1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240,000	176,200	176,200	-
2	산업은행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	30,000	30,000	-
3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	250,000	450,000	-
4	산업은행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	35,000	35,000	-
5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	100,000	-

자료: 금융위원회

이들 정책펀드 및 대출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지금까지 각 사업별 심사가 가능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총액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정부 내부에서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및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개별 건을 심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계획 및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국회에 보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해당 펀드의 연도별 재원조성방안, 출자계획, 산업(분야)별 지원규모 등에 대한 계획과 과거 펀드 출자분 및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관리 성과 및 회수재원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로부터 매년 사전적·사후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24년, 2025년 산업은행출자(혁신산업펀드) 사업 예산안 심사 시 산업은행 내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추계하여 이를 반영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추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출자 방식으로 편성된 성장지원펀드(2018~2020), 소부장펀드(2020~2021), 뉴딜펀드(2021~2022), 혁신성장펀드(2023~2025) 사업 등의 재정출자분에 대해서는 그 회수재원을 재정모펀드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56] 2024년에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600억원, 2025년에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1,238억원을 반영하여

56)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개요]

○ 성장지원펀드(2018~2020)
- (사업배경) 2017.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및 2018.1월「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발표
- (사업성과) 목표 7.3조 대비 총 9.9조원 조성, 9.3조원 투자

○ 소재·부품·장비펀드(2020~2021)
- (사업배경)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 등 근본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성과) 목표 0.9조 대비 총 1.3조원 조성, 1.2조원 투자

○ 기업구조혁신펀드 2,3호(2020~2021)
- (사업배경)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시장 유동성 공급 및 자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부터는 산업은행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정 경유출자 받아 진행
- (사업성과) 목표 2조원 대비 3.4조원 조성, 3.1조원 투자

○ 뉴딜펀드(2021~2022)
- (사업배경)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사업성과) 목표 8조원 대비 11.8조원 펀드 결성, 8.5조원 투자

○ 혁신성장펀드(2023~2027)
- (사업배경)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험자금 공급
- (사업성과) 2023~2024년도 목표 6조원 대비 9.3조원 조성, 1.7조원 투자, 2025년도 사업은 5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하여 연내 결성 예정

○ 지역활성화투자펀드(2024~)
- (사업배경)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사회를 활성화
- (사업성과) 총 5건의 프로젝트 선정, 총 사업비 2조 4,934억원, 모펀드 약정액 2,444억원

○ 반도체생태계펀드(2025~2027)
- (사업배경)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성과) 2025.6. 자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하여 연내 펀드 결성 예정

○ 원전산업성장펀드(2025)
- (사업배경)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및 원전 산업 대외 경쟁력 확보
- (사업성과) 2025.6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하여 연내 펀드 결성 예정

주) 사업성과는 2025년 7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 예산을 조정한 바 있음.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액 3,614억원 중 재투자된 재원 1,838억원을 제외한 1,776억원이 아직 미활용된 회수재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 연말까지 490억원의 회수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기존 정기배당액에 더하여 특별배당 형태로 정부로 환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57] 산업은행의 배당은 산업은행의 영업활동을 통한 당기순이익이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회수재원이 특별배당 형태로 배당되더라도 각 부처의 차년도 정부출자수입(52-521) 세입으로 계상될 뿐임.

그러나 종전과 같이 산업은행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을 차년도 산업은행 출자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산업은행 출자사업의 회수재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펀드 출자금의 원금 및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성장펀드로 출자할 때 회수재원의 출자대상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종전의 혁신성장펀드 예산안 심사 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추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7) 2025년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91.99%), 국토교통부(5.05%), 산업통상자원부(1.62%), 해양수산부(0.46%), 기후대응기금(0.88%)로 사실상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액 등의 현황 및 예상내역]

(단위: 억원)

펀드명	연도	재정 출자액	펀드 총결성액 ('25.7월말 기준)	회수액(재정모펀드 기준)			
				~2025.8. 회수액	2024~2025년 재투자분[주]	2025.9.~12. 회수예상액	2026년 회수예상액
성장지원펀드	2018	1,700	29,351	928	1,089	41	123
성장지원펀드	2019	1,000	32,034	345		24	72
성장지원펀드	2020	500	37,649	112		12	36
구조혁신펀드	2020	750	14,482	90	-	-	-
구조혁신펀드	2021	675	16,588	140	-	-	-
소부장펀드	2020	2,000	7,809	624	584	264	847
소부장펀드	2021	2,400	5,261	355		4	583
뉴딜펀드	2021	5,100	64,437	843	165	57	253
뉴딜펀드	2022	4,500	45,329	130		72	91
뉴딜펀드	2022	1,500	8,556	41	-	11	121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3	2,000	20,827	4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3	1,000	18,600	2	-	5	-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4	2,000	17,900	-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4	1,000	35,299	-	-	-	-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5	2,000	-	-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5	1,000	-	-	-	-	-
지역활성화펀드	2024	1,000	2,872	-	-	-	-
지역활성화펀드	2025	1,000	-	-	-	-	-
원전산업성장펀드	2025	350	-	-	-	-	-
반도체생태계펀드	2025	300	-	-	-	-	-
합 계		31,775	356,994	3,614	1,838	490	2,126

주) 성장지원펀드와 소부장펀드, 뉴딜펀드는 단일 모펀드로, 재투자 재원을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7.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미 간 관세협상(2025.7.31.)에 따라 대미 통상 관련 금융패키지 등에 대해 통상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통해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8)]

[2026년도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	-	630,000	630,000	순증

2025년 7월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25%)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당초 부과하기로 하였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미 조선협력 펀드(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펀드) 1,500억 달러를 조성하고 조선 분야 이외의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59)]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한·미 조선협력펀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투자·대

58) 일반회계-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2414-327)(금융정책국)

59)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우리 조선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대통령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7.31.)

출·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발표함.[60]

[한·미 통상 협의 관련 진행경과]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2025.4.2.)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및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 ㅇ 美 정부의 관세 발효 유예(2025.8.1.일까지, 90일간) 및 국가간 관세협상 진행(2025.4.~2025.7.) - 우리나라도 관세율 인하 및 최혜국 대우 보장을 위한 협상 지속 ㅇ 관세협상 타결(2025.7.31.) - 상호관세(25%→15%),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 및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 -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선협력 펀드 $1,500억 조성 및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및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 투자·대출·보증 제공을 위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 조성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등 비관세장벽 완화 및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구매 약속 ㅇ 한·미 정상회담(2025.8.26.) -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또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후속 협의 예정 -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려는 공감대 형성 ㅇ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지속(2025.9.~10.) - 관세 협상 세부협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내 한국인근로자 구금 문제 이후 비자 협의 등 ㅇ 한·미 정상회담(2025.10.29.) 및 관세협상의 세부내용 합의 - 대미투자펀드 $2,000억은 연간 납입한도 $200억으로 설정, 2029년 1월까지 투자약정 - 조선협력펀드 $1,500억은 한국 기업의 FDI로 추진 - 상호관세율은 15%로 설정, 자동차·부품 15%로 인하, 의약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

자료: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및 대통령실 브리핑자료 등을 재가공

60)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대통령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10.29.)

참고로, 이 사업은 산업은행이 대미 통상 관련 금융패키지 등에 대해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통상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조성 재원으로서 6,3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을 반영한 통상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나. 검토의견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통상 관련 금융패키지가 운영될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이 사업 예산안을 6,300억원 편성하였으나, 금융패키지의 내용에 따른 통상대응 프로그램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은 2025년 10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지원규모도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밝힘. 또한 향후 미국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세부 투자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처 및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함.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및 조선협력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인바, 특히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납입한도(200억 달러) 내 자금조달 방식,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위한 대출·보증 등의 지원내용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

<수 입>

8.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허용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는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의 매각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439억 4,200만원(△10.4%)이 감액된 3,79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61)]

[2026년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23,939	423,939	379,997	△43,942	△10.4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계획안은 종전과 같이 여유자금 등의 운용 시 발생하는 금융채매각대, 통화안정증권매각대, 회사채매각대 및 기타유가증권매각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2025년 4월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에 대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채권 매각수입은 반영되지 않았음.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계획안 세부내역]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3,799억 9,700만원

- 금융채매각대(1,099억 9,100만원) + 통화안정증권매각대(335억 3,300만원) + 회사채매각대(1,332억 6,400만원) + 기타유가증권(1,032억 9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61) 신용보증기금-기타유가증권매각대(84-843)(금융정책국)

참고로, 종전까지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발행 회사채의 유동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만 가능하였으나, 2025년 4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회사채의 유동화를 명시하고 신용보증기금 내에 유동화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유동화증권(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62][63]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절감 및 특수채 지위 인정 등으로 인해 기업당 50bp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62) P-CBO(Primary Collaberalized Bond Obligation)란,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방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지칭하며, 통상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거쳐 발행됨.

63)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유동화보증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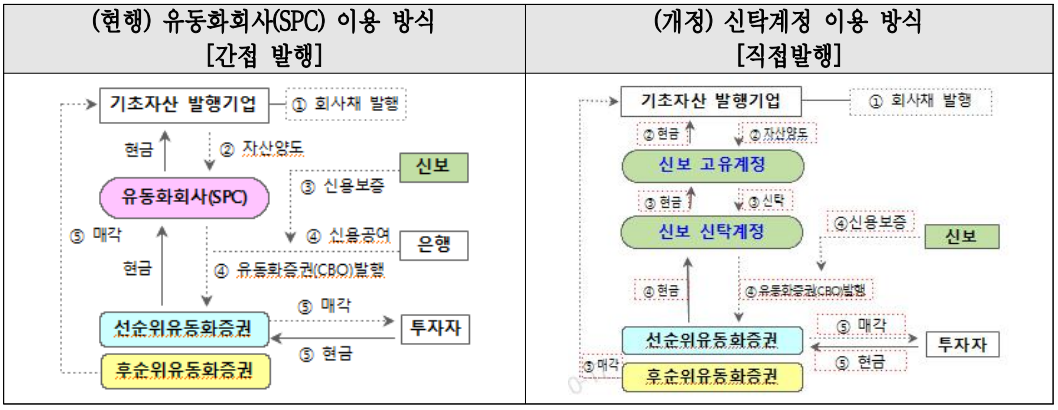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방식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2025.3.13.

나. 검토의견

2025년 4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이를 위한 수입·지출과목이 편성되지 않아 직접발행을 통한 비용 경감(약 △50bp) 혜택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유동화회사 직접발행 여부 및 규모를 논의하고 필요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종전까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인 유동화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유동화회사보증)를 수행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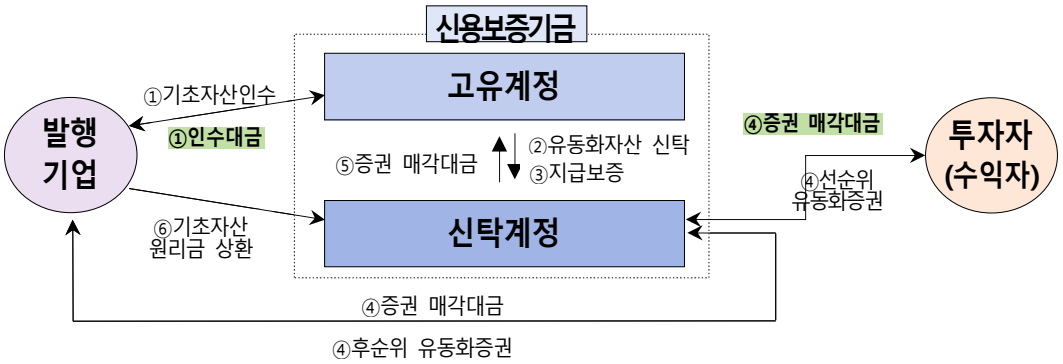
현재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인 특수채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특수채증권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2025년 4월 종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유동화회사보증)[64]

6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자산유동화 행위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방식(유동화보증)[65]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었음.

[유동화수익증권 발행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각종 회사채 발행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고유계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수하고 발행기업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며, ② 신용보증기금은 인수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신탁계정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고, ③ 신탁계정은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고유계정에서 해당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며, ④ 신탁계정에서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매각하고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공동 부담 차원에서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 매각대금을 수취하며, ⑤ 신탁계정은 투자자 및 발행기업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고유계정에 지급하고, ⑥ 회사채 발행기업은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을 신탁계정에 상환하게 됨.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내 지출항목에는 ① 발행기업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사업 편성이 필요하고, 수입항목에는 ④ 투자자 및 발행기업에 유동화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계상하기 위한 수입사업의 편성이 필요함.[66]

65)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자산 유동화 행위를 의미함

66)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이 기존 재원으로 회사채를 매입하여 신탁계정에 위탁하고, 신탁계정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취하기까지 1영업일만 소요되어, 신용보증기금은 사실상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 외에도 지출항목에서는 투자자 및 발행기업으로의 유동화 수익증권 이자지출 및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편성하여야 하고, 수입항목에서는 발행기업의 회사채 이자 수취 등을 기타재산이자수입에 계상하여야 함.

그러나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종전 방식인 유동화회사보증으로 5조원의 회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소요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나, 유동화보증 직접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입과 지출 항목에 관련 계획액이 편성되지 않아 2026년 내 유동화보증 직접발행 방식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으로 인해,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을 통해 발행기업의 이자비용을 경감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 것임.[67]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기금이면서도 스스로 기금관리주체로서 모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야 하고,[68][69] 유동화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채 인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매각대금 역시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의 유동화보증 사업 관련 계획안은 해당 사업 수행 시에 수입과 지출을 각각 회계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실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채의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과정에서 자금의 도관(conduit)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유동화회사 직접발행 여부 및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67) 금융위원회는 유동화보증 방식이 종전의 유동화회사보증 방식에 비해 직접 발행을 통해 P-CBO 발행업무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여 기업의 금리인하 재원으로 사용(19~21bp)되고,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P-CBO 발행 금리가 인하(26bp)될 것으로 예상함.

68) 「국가재정법」
[별표 3] 금융성 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69) 일반적으로 기금과 기금관리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금(fund)과 사업조직체로서의 기관이 구분되고 공사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공사 계정에 귀속되는 수입·지출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계획 승인을 통해 사업·예산을 운용하게 됨.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과 유이(唯二)하게 금융성기금이자 기금관리주체인 특수한 경우로서, 사업조직체로서의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부 포함되어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됨.

[유동화증권 7,500억원(예시) 발행 시 신용보증기금 수입 및 지출 편성]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금 액	내 용	예산과목	금 액	내 용
[52-521] 정부출자수입	1,065	SPC 출자금 (SPC→신보 고유계정)	[2431-301]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438,446	선순위 유동화증권 상환 부족분 대위변제 (신보 고유계정→금융기관)
[59-596] 기타경상 이전수입	57,219	유동화회사보증 구상채권 회수 (부실편입기업→신보 고유계정)	*[2431-320] (신설)유동화증권 직접발행 ([470목]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750,000*	*기초자산(회사채) 매입 (신보 고유계정→편입기업)*
	95,703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 주식 회수 (부실편입기업 등→신보 고유계정)			
[65-651] 면허료 및 수수료	101,993	유동화회사보증 신용보증료 (SPC→신보 고유계정)	*[2431-320] (신설)유동화증권 직접발행 ([510목] 상환지출)*	*5,969*	*유동화 수익증권 이자 (신보 신탁계정→투자자 등)*
	159	유동화회사보증 신용조사수수료 (SPC→신보 고유계정)			
	4,265	SPC 자산관리 수수료 (SPC→신보 고유계정)	*[2431-320] (신설)유동화증권 직접발행 ([210목]운영비) ([220목]여비) ([240목]업무추진비)*	*2,045*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각종 수수료, 기타운영비 등 (신보 신탁계정→참여기관 등)*
[84-843]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750,000*	*유동화 수익증권 매각 (투자자 등→신보 신탁계정)*			
[54-546] 기타재산 이자수입	*7,974*	*기초자산(회사채) 이자 (편입기업→신보 신탁계정)*			

주 1)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종전 방식인 유동화회사보증으로 5조원의 회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계획안이 편성되었으나, 해당 도표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7,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유동화회사보증을 4조 2,500억원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임

2) 유동화보증 7,500억원 신규 편성 시, P-CBO 만기 도래 이후 현금흐름인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정부출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P-CBO 발행 방식의 차이와 무관하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면허료 및 수수료는 정부안 대비 36억 6,100만원 감액조정이, 기타유가증권매각대는 7,500억원 증액, 기타재산이자수입은 79억 7,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며,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세부사업 신설 시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액 7,500억원, 유동화증권 상환지출 59억 6,900만원, 운영비 등 20억 4,500만원의 계획액이 신규 편성되어야 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지 출>

9. 업무용 건물 사업: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및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개 요

‘업무용 건물’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자가점포 개설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업무용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82억 3,900만원(57.6%)이 증액된 225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70]

[2026년도 업무용 건물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업무용 건물	14,294	14,294	22,533	8,239	57.6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구체적으로는 대구지점 대수선 관련 1차년도 소요분 40억원, 자가점포 취득비용 168억 800만원 및 지방점포 직원합숙소 취득비용 17억 2,500만원이 편성됨.

[업무용 건물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비 40억원(총공사비 162억 8,400만원 중 1차연도 소요분)**
- 기본조사설계비 7,400만원, 실시설계비 9억 2,600만원, 공사비 30억원

○ 자가점포 취득: 168억 800만원

○ 지방점포 직원합숙소 취득: 17억 2,5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은 1980년 준공되어 44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골조를 제외한 건물의 주요 부분을 일괄 대수선하려는 것임.

70) 신용보증기금-업무용건물(2431-305)(금융정책국)

[대구지점 현황 및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개요]

○ 대구지점 건물 현황
- 대구 중구 동문동 경상감영길 221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444평)
- 현재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및 기업은행 대구지점이 입점 중으로 100여명이 근무 중임

○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개요
- (배경) 현 건물은 1980년 12월 준공되어 44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내부 배관의 노후화 및 균열에 따른 누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전기·기계·소방 등 필수설비의 계속사용이 한계에 이른 상황
- (주요내용)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골조를 제외한 건물 주요부분을 일괄 대수선
  · 각종 배관을 교체하여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필수 기능 설비(전기 · 기계 · 소방) 전면 교체
  ·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고려하여 건물 기둥, 보 등 구조체 보강
  · 과거 미흡한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진 현 건물의 구조와 기능을 현행 법규에 부합하도록 변경

○ 소요 예산

구 분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공사비	143억 2,400만원	연면적 4,774.73㎡ × 3백만원/㎡
실시설계비	10억 7,400만원	공사비 × 5%(설계대가요율) × 1.5배(리모델링)
기본조사설계비	8,600만원	실시설계비 × 8%
감리 및 부대비	8억원	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 예상액
합 계	162억 8,400만원	-

○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공사비	30억원	36억 1,500만원	77억 900만원
실시설계비	9억 2,600만원	1억 4,800만원	-
기본조사설계비	7,400만원	1,200만원	-
감리 및 부대비	-	3억원	5억원
합 계	40억원	40억 7,500만원	82억 900만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검토의견

신용보증기금의 대구지점은 준공 후 44년이 지나 대수선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달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대구지점은 준공 후 44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외벽 및 화장실에 약식 수선만 실시한 상황으로, 누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주요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대수선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구지점의 대수선 공사는 필수 기능 설비(전기 · 기계 · 소방)를 교체하고 구조체를 보강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한편, 배관 교체 및 방수 시공을 통해 현재 문제되는 배관 누수를 해결하고 감전 등 전기 관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강화된 현행 법규에 부합하도록 비상 대피로 등 건물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대수선 공사의 1차년도(2026년) 계획안에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비를 모두 편성하였는데,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의 조달절차, 계약체결 절차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26년 내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 역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취득과정이 2026년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2027년 2월까지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27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로 2026년 내 대수선공사를 실제 착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뿐만 아니라 감리 및 부대비도 함께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사비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비 예산이 계약절차를 위한 선금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반증함.

[대구지점 대수선공사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기본계획 수립	■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공간계획 수립 및 및 공사비 추정	2026.1.~2026.3. (3개월)
설계공모	■ 설계 공모(조달청 나라장터) ■ 당선작 선정 및 계약	2026.4.~2026.6. (3개월)
설계용역 / 인·허가	■ 계획·중간·실시설계 및 공사내역 산출 ■ 각종 인증 및 공사 인·허가	2026.7.~2026.12. (6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 입찰 ■ 선정 시공사와 계약 체결	2026.12.~2027.2. (3개월)
착공 및 준공	■ 공종별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폐) ■ 사용 승인 및 세금 납부	2027.3.~2028.12. (1년 10개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2026년 대구지점 대수선공사 월별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조사 설계	■	■	■									
실시 설계				■	■	■	■	■	■	■	■	■
공사·감리												■

자료: 신용보증기금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2024년 결산 심사 시,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가 공사내용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심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 사업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초 계획에 따라 구축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71]

71)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노후화된 광진지점을 일부 증축하고, 기존 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내용으로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내용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심의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사업 계획액 60억원의 10.6%인 6억 3,7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3억 6,3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안전 관련 필수 공사 규모 및 범위 증가, 지자체 각종 심의 등의 일정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기존 계획단계 대비 철거과정에서 확인된 건물 노후화 진행정도가 높아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공사(스프링클러 증설, 방화구획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보강 등) 범위가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1권, 2025.8., p.402.)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실제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024.1월	2023.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심사위)	2024.1월	2024.2월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2024.2월 ~ 4월**	**2024. 8월**
인·허가	▪ 인·허가(경관심의 포함)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024.5월	2024.10월
착공	▪ 착공신고 및 구조물 철거	2024.5월	2024.11월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폐)	2024.5월 ~ 2024.12월	2024.11월 ~2025.11월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024.12월	2025.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 입>

10. 재고자산매각대: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매각 병행을 통한 조기상환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재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보채상환기금”)이 보유한 출자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수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조 2,931억 8,400만원(246.2%)이 증액된 1조 8,18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72][73]

[2026년도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재고자산매각대	525,330	525,330	1,818,514	1,293,184	246.2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예보채상환기금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출자·출연한 이후 보유한 주식등의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 예보채상환기금의 출자금융회사는 서울보증보험·한화생명보험 및 수협중앙회(만기보유증권) 등임.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2024년 기업공개를 추진하여 2025년 3월 상반기 소수지분(10%)에 대한 기업공개 및 구주매출에 성공하였음.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공모가격(26,000원)을 기준으로 우리사주 및 일반투자자 청약을 실시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보유 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6,982,160주)를

7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재고자산매각대(73-731)(금융정책국)

7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보채상환기금의 설치 등)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매각하여 1,815억원을 회수하였음.[74]

금융위원회는 2026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서울보증보험 잔여지분 83.85% 중 33.85%(23,635,946주)를 매각하고자 하고, 예상 매각대금 1조 3,042억 2,900만원을 2026년 재고자산매각대에 편성하였음.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지원 (A)	2025.8. 기준			2026년 말 기준(예산안 반영 시)		
	회 수(B)		미회수 (B-A)	회 수(B)		미회수 (B-A)
출자	유상감자 및 상환우선주 상환	17,251	△50,917	유상감자 및 상환우선주 상환	17,251	△35,944
	지분매각	1,815		지분매각	14,857	
	배당금	32,517		배당금	34,448	
102,500	51,583(회수율: 50.3%)			66,556(회수율: 64.9%)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예보채상환기금의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10.0%(86,857,001주)를 매각하고자 하고, 예상 매각대금 4,342억 8,500만원을 2026년 재고자산매각대에 편성하였음.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지원 (A)	2025.8. 기준			2026년 말 기준(예산안 반영 시)		
	회 수(B)		미회수 (B-A)	회 수(B)		미회수 (B-A)
출자	유상감자 및 상환우선주 상환	0	△10,299	유상감자 및 상환우선주 상환	0	△5,934
	지분매각	22,273		지분매각	26,616	
	배당금	2,928		배당금	2,950	
35,500	25,201(회수율 : 71.0%)			29,566(회수율 : 83.3%)		

자료: 금융위원회

74) [IPO를 통한 서울보증보험 지원 및 회수액 변동 현황]

지원액	회수액			회수율
	상장 이전	상장 구주매출	합계	
10조 2,500억원	4조 8,091억원	1,815억원	4조 9,906억원	48.7% (기존 46.9% 대비 1.8%p↑)

수협중앙회의 경우, 2022년 9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미상환잔액(7,574억원) 상환을 위해 수협으로부터 국채를 수령하였고 2027년까지 연도별 국채 만기 시마다 현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800억원의 현금을 회수할 예정임.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지원 (A)	2025.8. 기준		미회수 (B-A)	2026년 말 기준(예산안 반영 시)		미회수 (B-A)
	회 수(B)			회 수(B)		
출자	수협중앙회 우선출자증권 매입 및 소각	4,007	△5,974	수협중앙회 우선출자증권 매입 및 소각	4,007	△4,374
	지분매각	0		지분매각	0	
	국채 만기	1,600		국채 만기	3,200	
11,581	5,607*(회수율 : 48.4%)			7,207(회수율 : 62.2%)		

자료: 금융위원회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 세부내역]

○ 서울보증보험: 1조 3,042억 2,900만원
- 23,635,946주(33.85%) × 55,180원
○ 한화생명보험: 4,342억 8,500만원
- 86,857,001주(10%) × 5,000원
○ 수협중앙회: 800억원
- 2026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에 서울보증보험의 잔여지분 83.85% 중 소수지분인 33.85%을 매각하고 경영권 지분(50%+1주 이상)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나,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시까지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지분과 경영권 지분 매각을 2026년부터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여 2025년 3월 상장을 완료

(10% 지분 구주매출)하였고, 2026년에는 의무보호예수 해제(2026.3월) 이후 소수지분 33.85%를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추가 매각할 계획임.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

방식	IPO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시기	2025년 상반기 이내	상장 완료 이후~상환기금 청산시점(2027년 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1주 이상

주1)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2) 의무보호예수 기간(1년) 설정에 따라,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2026.3.14. 이후 매각 추진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지분에 대해서는 소수지분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경영권 지분 매각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경영권 지분 매각 방안은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 범위 등[75]을 고려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그러나 예보채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으로 소수지분 매각 이후 청산시점에 임박해서야 경영권 지분 매각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매각 검토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 오히려 신중한 매각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이후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예보채상환기금이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금융지주 및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경영권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 소수지분을 입찰 또는 블록세일의 방법으로 매각한 바 있음.[76]

75)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보증보험회사로서 2024년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전체 보증보험 시장 점유율(보증잔액기준)은 24%, 민간 보증보험 시장 점유율은 55% 수준임.

76)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02년 IPO 이후 소수지분 블록세일(4회) 등을 통해 2010년 까지 보유지분을 50%대로 축소시킨 후 경영권 지분 매각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2014년 경영권 지분 매각이 최종 무산된 후 과점주주에 대한 분산매각, 블록세일 등을 통해 잔여지분을 매각하였음(2024년 완료).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2025.3. 기준)

지원액 (A)	회수액 (B)				미회수액 (B-A)
출자	지분 매각	한화컨소시엄 매각 (2002.12월, 2,275원)	8,236억원	(51%)	△1조 299억원
		콜옵션 행사 (2008.9월, 2,275원)	2,584억원	(16%)	
		상장공모시 구주매출 (2010.3월, 8,200원)	1,586억원	(2.7%)	
		1차 블록세일 (2015.3월, 7,680원)	1,334억원	(2.0%)	
		2차 블록세일 (2015.10월, 7,987원)	5,203억원	(7.5%)	
		3차 블록세일 (2017.8월, 7,280원)	1,739억원	(2.8%)	
		4차 블록세일 (2017.11월, 7,330원)	1,591억원	(2.5%)	
		소 계	2조 2,273억원	-	
	배 당 금		2,928억원		
3조 5,500억원	2조 5,201억원(회수율: 71.0%)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서울보증보험 잔여지분 매각이 경영권 지분을 포함하여 조속히 이루어지는 경우 예보채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예수이자를 줄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스케줄]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	2025년	2026년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내역(~2025)	7.1	7.0	8.9	9.3	4.3	-	-	-
원리금 상환계획 (2025~2027)	-	-	-	-		6.4*	7.4*	7.5*
잔액(원금)	38.6	32.2	28.0	20.6		14.6(추정)	7.4*	-

주) 2025~2027년은 확정금액이 아닌 계획액으로, 실제 예산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보채상환기금의 서울보증보험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대상과 매각시기를 논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둘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채상환기금의 보유주식 매각 시 매각의 용이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극대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도 유의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① 한화생명보험 보유주식 지분 10% 중 절반인 5%를 1주당 2,915원에 매각하여 1,265억 9,400만원을 회수하고, ②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 중 10%를 IPO를 통해 1주당 4만 5,650원에 매각하여 3,187억 3,600만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음.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정근거
한화생명 보험	126,594	①43,428,501주 × ②2,915원 = 1,265억 9,400만원
		① 2025년 매각예상 수량(5%) ② 최근 12개월(2023.4월~2024.3월) 거래량가중평균 주가
서울보증 보험	318,736	①6,982,160주 × ②45,650원 = 3,187억 3,600만원
		① 2025년 매각예상 수량(10%) ② 서울보증보험 증권신고서 공모희망가액 39,500원~51,800원 중간값
수협 중앙회	80,000	2025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 2022.6월 개정 상환합의서에 따라 공사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만기가액
합계	525,330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2025년 10월까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주식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안 편성 후 주식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가격의 57%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임.

2025년 10월 현재까지 한화생명보험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한화생명보험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2025년 한화생명보험 보유주식의 매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1주당 매각대금을 2023년 서울보증보험 IPO 추진 시 공모희망가액(39,500~51,800원)의 중간값인 4만 5,65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25년 실제 서울보증보험의 IPO 추진 시에는 1주당 매각대금을 공모희망가액(26,000~31,800원)의 최저값인 2만 6,000원으로 확정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바 있음.

참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가격은 2025년 3월 14일 IPO 추진 이후 공모가격(2만 6,000원) 이하로 하락한 바 없고, IPO 이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5만원대 이상에서 보합인 상황임.

[2025년 서울보증보험 IPO(2025.3.14.) 이후 주가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IPO를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보유주식의 IPO 공모가격을 희망공모가밴드의 최저값으로 낮게 책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공모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 서울보증보험 및 한화생명보험의 잔여 보유주식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 극대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도 유의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8.5억원으로, 전년 대비 0.6억원(△6.4%) 감소함.[1)]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9.1	9.1	8.5	△0.6	△6.4
총수입	9.1	9.1	8.5	△0.6	△6.4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0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0.8%) 증가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50.9	1,050.9	1,058.9	8.0	0.8
총지출	1,050.9	1,050.9	1,058.9	8.0	0.8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8.5억원으로 전년 대비 0.6억원(△6.4%) 감소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1	9.1	8.5	△0.6	△6.4
합 계	9.1	9.1	8.5	△0.6	△6.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0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0.8%) 증가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50.9	1,050.9	1,058.9	8.0	0.8
합 계	1,050.9	1,050.9	1,058.9	8.0	0.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30억 9,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1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1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74
2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1,822
총지출		3,096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사업 중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민원 처리 분야 예산이 지속 확대되었다는 점임. 20개 세부사업 중 15개 사업이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액되었으나, 민원 처리 분야에 속하는 4개 세부사업[3]은 전년 대비 22억원(10.5%)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용률이 저조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담사의 중도퇴직을 최소화하고 콜센터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110콜센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 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도입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종합상담창구운영, 고충민원조사활동 등 4개 사업(2026년도 예산안: 총 212억 5,600만원)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이용률 제고 노력 필요 등

가. 개 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고를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별 근거 법률조항 및 도입일자]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	근거 법률조항 (도입일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2018. 10.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2022. 6. 8.)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1항 (2022. 7. 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2024. 9. 2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의 자문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 내 5개 세부사업에서도 해당 분야별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자문료를 편성하였음. 상기한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 중 부패신고의 경우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에 자문료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4개 신고유형의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관련 세부사업에 각각 편성되었음.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별 자문료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	자문료 편성 세부사업(사업코드)	2026예산안
공익신고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	8
부패신고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8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4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1136-366)	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 2. 6.)[4]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자문료 지급 범위가 기존 법률상담,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까지 확대됨을 고려하여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료는 전년 대비 1,000만원(71.4%) 증액된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률이 저조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이후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154건, 2024년 150건, 2025년 8월말 기준 94건 등 매년 200건 미만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전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의 비율도 2023년 1.8%, 2024년 1.5%, 2025년 8월말 기준 1.1% 등 매년 2.0% 미만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2023년 이후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체 신고 접수 건수(A)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B)	비율(=B/A)
2023	8,577	154	1.8
2024	10,130	150	1.5
2025. 8.	8,209	94	1.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이후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별 자문료 예산의 집행 실적 또한 2023년 58.3%, 2024년 60.3%, 2025년 8월말 기준 35.1%로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에서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2023년 이후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별 자문료 예산액·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	2023			2024			2025. 8.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공익신고	12,600	12,050	95.6	12,600	9,500	75.4	14,000	5,800	4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8,000	3,400	42.5	8,000	3,600	45.0	8,000	1,800	22.5
부패신고	8,050	3,550	44.1	8,050	2,300	28.6	8,050	4,900	60.9
행동강령 위반 신고	4,000	3,100	77.5	4,000	5,500	137.5	4,000	1,300	32.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7,000	1,000	14.3	7,000	3,000	42.9	7,000	600	8.6
계	39,650	23,100	58.3	39,650	23,900	60.3	41,050	14,400	35.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변호사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 실적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5],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단위 변호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에 대해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입장이나 2025년 8월말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실적이 부진함.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신고 유형 중 부패신고의 경우 관련 사업이

5) 정무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p.110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에 자문료가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관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기본경비 사업이 아닌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기본경비의 예시를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 등과 같이 기관 전체 또는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비로 제시하고 있을 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관련 자문료와 같이 특정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까지 기본경비의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기본경비 항목의 성격 및 세부사업 간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을 각종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등이 통합 편성된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민원 전화번호 110 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콜센터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가. 개 요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범정부 대표콜센터(110)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7.9%)이 증액된 10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종합상담창구운영	9,526	9,526	10,283	757	7.9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196	196	196	-	-
국민콜110운영	9,330	9,330	10,087	757	8.1

내역사업인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사업은 국민들이 각종 행정·생활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민원·국민제안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콜110운영’** 사업은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110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8.1%)이 증액된 10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6) 일반회계-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정부합동민원센터)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1억 9,600만원 - 센터 운영비(3,200만원), **민원상담 수당(1억 3,300만원), 고용부담금(810만원)** 등 ○ 국민콜110운영: 100억 8,700만원 - 110센터 운영 기본경비(4,000만원),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100억 700만원)**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담사의 중도퇴직을 최소화하고 콜센터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110콜센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다수의 행정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전화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110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단 구성 및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음.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청사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0 통합 추진 방안은 2025년 8월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697개의 기관별 대표번호 및 콜센터 번호(중앙행정기관 126개, 공공기관 571개)를 110으로 통합하거나 번호 안내·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중앙행정기관 번호 126개의 경우 2027년까지 126개 중 기관 대표번호 32개를 추가로 통합하고, 남은 94개의 전문상담 콜센터 번호에 대해서는 번호 안내·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10 통합 추진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대표번호 및 콜센터 번호 현황]

구분	번호 유형	번호 성격	번호 수(개)
중앙행정기관 (126개)	기관 대표번호	교환(부서 연결)	9
		일반 문의 및 상담	23
	콜센터 번호	전문상담콜센터	94
공공기관 (571개)	기관 대표번호	교환(부서 연결)	34
		일반 문의 및 상담	114
	콜센터 번호	전문상담콜센터	423

주) 현재 110 번호에 통합 완료된 6개 기관(국조실, 총리비서실, 농림부, 해수부, 인사처, 권익위)은 제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통합추진단 구성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준비하고, 통합추진단 구성에 필요한 별도정원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통합 사업 시범운영 및 업무재설계 등 사업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의 중심이 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는 연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는 상담사 중도퇴직 문제를, 외부에서는 낮은 인지도 문제를 겪고 있어 통합의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먼저 상담사 중도퇴직 문제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매년 10명 이상이 중도퇴직하여 인건비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국민콜110 상담사 중도퇴직 인원 수 및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중도퇴직 인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2022	18	245,188
2023	10	195,719
2024	24	435,848
2025. 8.	10	198,45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다음으로 인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콜110은 국민신문고와 달리 매년 50.0% 미만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도별 국민콜110 및 국민신문고 인지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콜110	39.1	44.3	38.6	39.0	45.2
국민신문고	81.2	83.2	84.3	85.0	91.8

주) 2024년 조사 미실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진 중인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담사의 중도퇴직을 최소화하고 콜센터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110콜센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민원상담위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근무의 대가 지급 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민원상담위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7]에 따라 위촉되는 명예직으로서, 2025년 기준 6명의 퇴직공무원 출신 민원상담위원이 1일 7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교대근무 형식으로 근무 중임.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위원 관련 현황]

구분	내용
위촉 대상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임기 및 인원	임기 1년(총 5년, 연임 가능), 6명(서울 4명, 세종 2명)
근무 형태	교대근무(월 10일, 주 2~3일, 1일 8시간)
수당	실비 사례금 1일 7만원(일반수용비), 3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고용부담금)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상담위원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민원상담위원에게 3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면서 관련 보험료 지출을 위해 고용부담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민원상담위원의 고용부담금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담금(320-09)은 기타직(110-02), 상용직(110-03) 및 일용직(110-04)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촉직인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들에게 고용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근무의 대가 지급방식이 부합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위원을 일용직 등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00만원(80.2%)이 증액된 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600	1,600	1,899	299	18.7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31	131	236	105	80.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9)]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원처분 부서와 민원인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수용성을 증대시키

8) 일반회계-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는 한편 사법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컨설팅, 기획조사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② 회의장 등의 임차료, ③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용역비, ④ 컨설팅 등 출장에 필요한 국내여비, ⑤ 위원회 설치 협조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비, ⑥ 기획조사 지원 용역 관련 일반연구비 등이 포함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3,600만원 - 일반수용비 7,300만원, 임차료 3,600만원, 일반용역비 2,000만원(신규), 국내여비 1,400만원, 사업추진비 1,300만원, 일반연구비 8,000만원(신규)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도입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는 2005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5년 8월말 기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중 100개(41.2%)에 불과하고, 여전히 143개 지방자치단체(58.8%)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음.

[연도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연도	설치 기관 수			미설치 기관 수		
	전체	광역	기초	전체	광역	기초
2022	70	9	61	173	8	165
2023	80	10	70	163	7	156
2024	94	11	83	149	6	143
2025. 8.	100	12	88	143	5	13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말 기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구분	지방자치단체
광역(12)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기초(88)	경기(25), 서울(22), 전남(6), 충남(6), 대전(5), 인천(5), 광주(4), 울산(4), 대구(3), 충북(3), 강원(1), 경남(1), 경북(1), 부산(1), 전북(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말 기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미설치 현황]

(단위: 개)

구분	지방자치단체
광역(5)	부산, 인천, 대전, 경북, 경남
기초(138)	경북(21), 강원(17), 전남(16), 경남(17), 부산(15), 전북(13), 충남(9), 충북(8), 경기(6), 대구(6), 인천(5), 서울(3), 광주(1), 울산(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우선적으로 예산 및 인력을 지원받기 어려워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입장임.

그러나 제도 도입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매년 설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반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이 사업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 이상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27.1%) 증가함.[1)]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10	410	521	111	27.1
총수입	410	410	521	111	27.1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원(9.1%) 증가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45	658	704	59	9.1
총지출	645	658	704	59	9.1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27.1%) 증가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10	410	521	111	27.1
합 계	410	410	521	111	27.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원(9.1%) 증가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45	658	704	59	9.1
합 계	645	658	704	59	9.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3개(106억 2,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표준화 기반을 구축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1033-307)	6,138
2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R&D)(1033-308)	1,482
3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1033-309)	3,000
총지출		10,62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위원회 송무지원’으로 총 3개임.[3)]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1032-302)	3,564	6,456	2,892	81.1
2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1033-305)	1,500	2,660	1,160	77.3
3	위원회 송무지원(2034-303)	420	800	380	90.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간,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 관련 신규과제를 다수 편성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확대하고 클라우드·연계허브를 도입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음.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징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과징금 부과처분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향후 실효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 사업은 공모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클라우드 전환의 경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저조한 이용실적과 지정기관의 데이터 외부 제공 불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3개년에 걸친 연구개발과제의 2차년도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차년도 사업 예산 대비 연간 과제 단가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과제 증액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여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은 연구과제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종전의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표준의 국제표준 등재 및 기존 로드맵과의 연속성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과징금 부과처분을 고려한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과징금’ 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억 900만원(28.6%) 증가한 499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과징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과징금	38,800	38,800	49,909	11,109	2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2025년 평균 과징금 수납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도 과징금 예산안을 499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

[과징금 예산안 세부내역]

○ 과징금 499억 900만원
- 4개년(2021~2024) 수납실적 및 2025년도 예상 수납실적의 평균
= [(2021)13,799 + (2022)1,530 + (2023)120,940 + (2024)29,768 + (2025)83,510] / 5 = 499억 900만원
* 2025년 예상수납실적은 2025년 7월 기준 수납액을 역산하여 산정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일반회계-과징금(56-565)(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최근 통신사·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과징금 예산액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의 범위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징수 및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대규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수납시점에 따라 수납액의 편차가 있으나 2023년 1,209억 4,000만원, 2024년 297억 6,800만원, 2025년 7월 45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징수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730	2,730	2,730	14,936	13,799	505.5	92.4	1,137	-
2022	1,583	1,583	1,583	102,604	1,530	96.7	1.5	101,074	-
2023	2,204	2,204	2,204	122,570	120,940	5,487.3	98.7	1,630	-
2024	38,800	38,800	38,800	53,843	29,768	76.7	55.3	24,075	-
2025.7.	38,800	38,800	38,800	48,863	45,491	117.2	93.1	3,331	41
2026(안)	49,909	-	-	-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과징금 수납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과징금 규모를 산출하였으나,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2025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하여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6] 참고로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최대규모임.

2025년 9월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고객의 개인정보(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소액결제 피해 및 서버 침해 정황 등을 발표하였고,[7] 2025년 10월 경찰 수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등이 진행 중으로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2025년 9월 18일 롯데카드는 297만명의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연계정보(CI)·주민등록번호·CVC·가상결제코드·내부식별번호·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는데, 정보 유출용량은 200기가바이트로 SK텔레콤(9.82기가바이트)의 20배가 넘는 수준임.

2025년 10월 23일 LG유플러스는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참고로 해외 보안 전문 매체에서 해커 집단이 LG 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의 서버정보, 42,256개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국

---

6)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4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SK 텔레콤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7) KT는 18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KT는 지난 11일 1차 브리핑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 2267만 건을 전수 조사했다.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결합해 특정 시간대에 결제가 몰리거나, 오류 응답 로그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 유형을 집중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기지국 ID가 검출됐으며, 기존 2개 외에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로그 상 확인된 ID일 뿐 실제 하드웨어 개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당초 1만9000여명에서 2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도 추가 확인됐다. 기존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상품권 결제가 중심이던 피해 유형에 교통카드 등 다른 결제 피해 사례가 추가됐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도 넓어졌다. 당초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만 털린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KT는 유출 대상과 범위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불법 펨토셀 접속자 1만 9000명 중 5561명의 IMSI가 유출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2만 명 전체가 IMSI · IMEI ·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뉴시스, "KT 소액경제 해킹 폰번호·IMEI도 털렸다... ARS결제는 여전히 미스테리", 2025.9.18.)

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7월 이와 같은 유출 의혹을 LG 유플러스에 전달하였으나, LG 유플러스는 자체점검을 벌인 후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바 있었음.[8)]

이와 같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통신사 및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밝혀진 상황에서, 앞으로 통신사·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산액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단순한 금전 납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9)]

---

8) 연합뉴스, “LG 유플러스도 해킹 정황 신고... 통신 3사 모두 뚫렸다”, 2025.10.23.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단순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징금이 실효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1~2025년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건수는 451건으로 총 8,854만 3,63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877억 2,732만원과 과태료 24억 9,88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과태료 부과금액은 1,019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10)]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유출사고 처분건수	개인정보 유출건수	과징금	과태료	건당 부과액(원)
2021년	61	49,812	1,525,486	498,100	40.6
2022년	83	10,382	1,581,480	495,500	200.0
2023년	139	14,636	14,819,842	742,900	1,063.2
2024년	109	5,927	48,656,278	547,500	8,302.2
2025년 7월	59	77,787	21,144,238	214,800	2,742.9
합계	451	88,544	87,727,324	2,498,800	1,019.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을 실효적인 수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10) 노컷뉴스, “개인정보 유출 5년간 9천만 건... 건당 과징금 고작 천원”, 2025.9.22.

<세 출>

2.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 사업: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활성화 및 협업체계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은 가명정보 처리 지원 및 안전성 검증, 가명정보 전문인력의 공급 지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각종 시설 및 분석도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2,800만원(159.3%) 증액된 5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사업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구축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클라우드 전환 및 연계 허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9,200만원(357.0%) 증액된 3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564	3,564	6,456	2,892	81.1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2,214	2,214	5,742	3,528	159.3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	810	810	3,702	2,892	357.0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기반으로[12] 데이터 활용을 위해 안전성을 강화한 환경을 갖춘 장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증하고 지정하는 한편, 해당 장소에서 강화된 안전성에 비례해 연구자·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 가명

11) 일반회계-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개인정보정책국)

12)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 검증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정보 재사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실증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참고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2024년까지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추진되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데이터 안심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2025년부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명명하고 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제도 개요]

○ 개 요
-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안전성을 강화한 환경을 갖춘 장소를 개인정보위가 검증하고 지정
- 강화된 안전성에 비례해 연구자・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기능
-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유연한 활용 지원
  ・(가명처리 수준 완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여 가명처리 후 분석 가능
  ・(비정형데이터 활용) 비정형(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빅데이터에 대해 전문심의위*가 검증한 가명처리 SW 적용 및 샘플링 검사 후 활용 가능
  ・(가명정보 재사용) AI 연구개발 등 지속적・반복적인 연구목적이 인정될 시 가명정보의 처리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 가능
  ・(가명정보 장기보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 보관・활용되는 가명정보에 대해 제3자가 재사용* 신청하여 활용 가능

  *기존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또는 제3자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 보관・활용되고 있는 가명정보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 내로 제공받아 다른 목적 등으로 다시 사용
-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실증 지원
  ・(PET 실증) 기존 제도적용이 모호한 PET의 경우 전문심의위가 실증계획을 사전 검증하여 해당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 가능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개인정보 침해를 엄격히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암호화·익명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부터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까지 포함하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과 관련하여, 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지원) 1개소 신규 구축 3억 7,000만원 및 기존 2개소 운영비용 4억 4,000만원을 합하여 8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②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2개소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6억 400만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22억 8,800만원을 합하여 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지원: 8억 1,000만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1개소 신규 구축·운영: 3억 7,000만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2개소 운영 지원: 4억 4,000만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설 운영, 운영심사 등 지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 28억 9,200만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2개소 클라우드 전환 지원: 6억 400만원 · 연계 허브 구축: 22억 8,800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공모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외에 데이터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 협력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지정기관 공모, 2024년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 공모 등을 통해 지정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을 갖추도록 국비지원 및 자체구축한 후 현장실사를 거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고 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舊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현황]

사업연도	공모기간	지정 기관	유형	지정일	운영 개시일
2023 (시범운영)	2023.11.1.~11.30.	국립암센터	국비지원	2023.12.27.	2024.7.12.
		국가데이터처 (舊 통계청)	자체구축	2023.12.27.	2023.3.28.
2024	2024.4.23.~5.3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체구축	2024.7.2.	2024.12.17.
		더존비즈온	자체구축	2024.7.2.	2024.12.31.
		한국도로공사	국비지원	2024.7.2.	2025.3.10.
2025	2025.9.17.~10.17.	미정	-	-	-

주) 2023년 사업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사업으로, 2024년 사업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25년 사업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런데 2025년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공모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하여 아직 지정기관이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각종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 개시일은 2026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공모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지원 확대 등의 기대효과 역시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공모절차 또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기관 공모 시 ①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② 데이터 안심구역 및 ③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경우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2025년 9월 현재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기관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뿐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기관 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 항목	세부 내용	배점
지정요건 심사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담당조직 및 정책	· 4인 이상의 담당조직 구성 (관리책임자, 보안·운영·행정인력) ·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교육계획 수립 등	P/F
	공간·시설·시스템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시스템 구축	P/F
	보호조치	· 시스템, 인증, 이용환경, 데이터 관리 등 보호조치 수행	P/F
기관역량 심사 (정성 평가)	사업계획 구체성(30)	· 사업 추진목표 및 업무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10
		· 사업 추진체계, 기존 데이터 활용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20
	참여기관 적정성(60)	· 참여인력의 전문성, 시설·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20
		· 수요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활용 수요자의 접근성 등	20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중장기 발전 방안 등	20
	기대효과(10)	· 해당 분야 데이터 산업 발전 효과 및 기여도	10
	전문성(10) (가점)	·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 데이터안심구역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1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 계획”, 2025.9.17.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및 운영 현황]

(2025.8. 기준)

구분	1차 지정(2023년)		2차 지정(2024년)		
	국립암센터	국가데이터처 (舊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유형	국비지원형	자체구축형	국비지원형	자체구축형	자체구축형
지정일	2023.12.27.	2023.12.27.	2024.07.02.	2024.07.02.	2024.07.02.
운영일	2024.07.12.	2024.03.28.	2025.3.10.	2024.12.17.	2024.12.31.
중점분야	보건의료	국가통계	국토교통	사회복지	정밀의료
위치	경기 고양	대전 서구	경북 김천	서울 광진	강원 춘천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0	0	0	0	0
데이터 안심구역	×	×	×	×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과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가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데이터 안심구역(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지원하고 있음.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기관 현황]

(2025.8. 기준)

안심구역 지정기관	제공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기관	제공 데이터
K-DATA(서울·대전)	금융, 의료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성남)	헬스케어데이터 등
한국전력공사(서울·나주)	전력데이터	한국도로공사(성남·온라인)	국토교통데이터
농수산교육문화정보원(온라인)	농식품데이터	강원도(춘천)	의료데이터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전주)	사업장정보 등	건양대병원(대전)	의료데이터
경북대 첨단기술원(대구)	교통, 에너지데이터 등	기술보증기금(부산)	기업재무데이터
한국국토정보공사(서울)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지정 현황]

(2025.8. 기준)

구분	운영기관	위치	구축현황	지정현황
강원	강원TP	원주 지식산업센터 2층	가명처리실 4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공용공간	2021.7.28. (국비지원)
부산	부산TP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 CENTAP 5층	가명처리실 4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2022.8.29. (국비지원)
대전	대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유성구 충남대학교 정보화교육관 2층	가명처리실 3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2023.11.28. (국비지원)
인천	인천TP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지하1층	가명처리실 3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2023.7.18. (자체구축)
대구	대구디지털 혁신진흥원	수성구 SW융합테크 비즈센터(DNEX) 2층	가명처리실 2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2024.7.18. (자체구축)
전북	전북TP	덕진구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가명처리실 2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2024.11.26. (자체구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협력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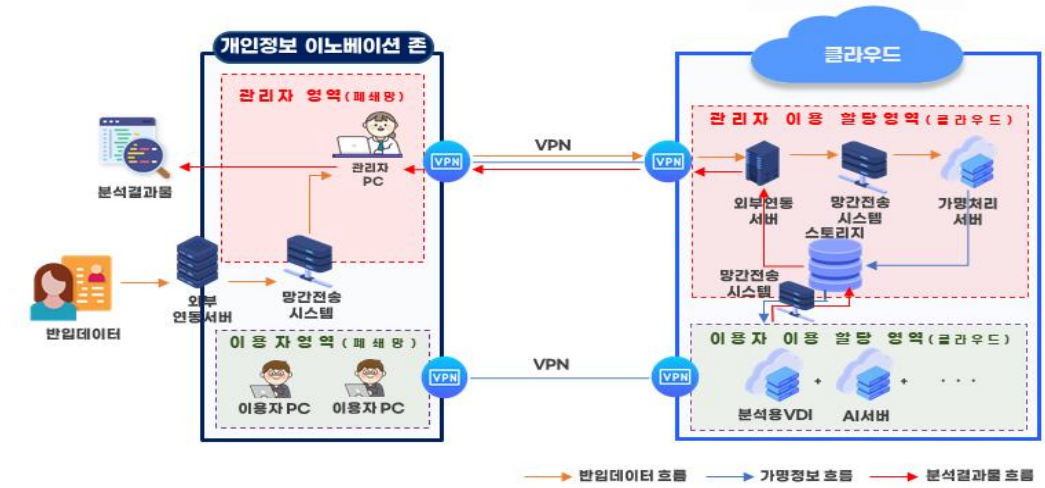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각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기관 내에 구축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하여 연계 허브 등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는 한편, 지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부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지정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계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6년 예산안에 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개별적·폐쇄적 활용 환경으로 구축되어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접근성이 낮은 상황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의 효율성, 이용자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및 탄력적 인프라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함.[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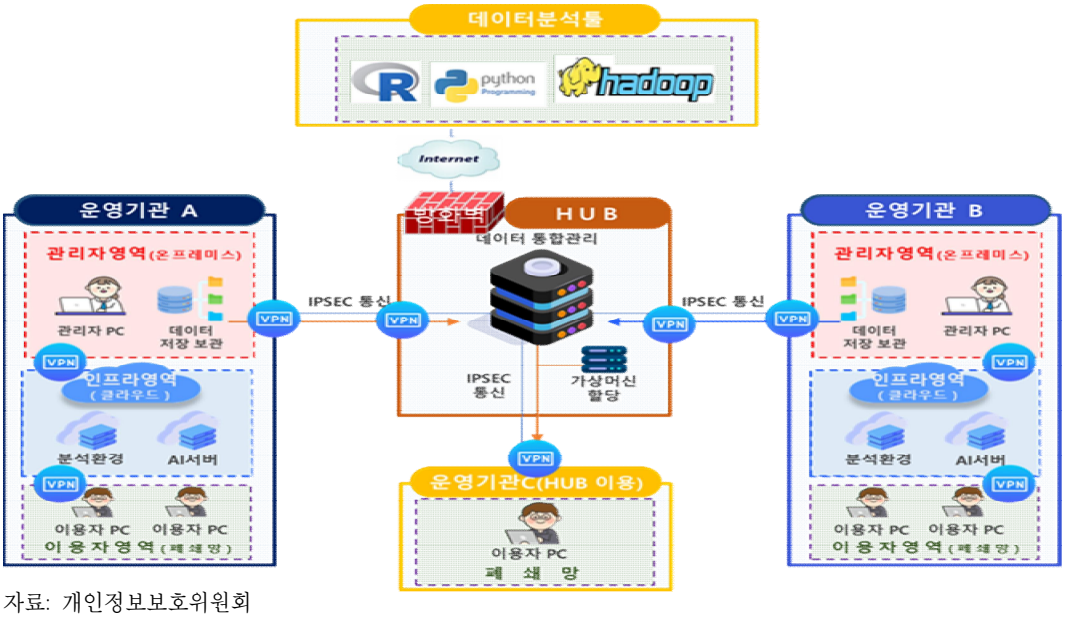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키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도입 개요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허브 구축 개요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허브를 운영·관리하겠다고 설명함.

이 경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안의 데이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관리하는 연계허브 내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타 지정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지정기관의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사업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부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형태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정기관 내에 폐쇄적 환경으로 구축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 지정기관의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지정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를 클라우드 및 연계허브에 제공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동 클라우드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원 없이 자체구축 형태로 추진된 국가데이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더존비즈온의 경우 데이터의 외부 전송을 강제할 수 없고 설득을 통해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임. 국비지원형인 국립암센터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당초 공모 당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데이터 외부 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

이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기관의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 시에도 공공기관·민간기업이 기관 내에 보유 중인 데이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연계허브 및 클라우드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 계획에 관련 요건을 갖추는 한편, 기존 지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부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로 제공하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마칠 필요가 있음.

3.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증액에 상응하는 추가적 과제내용 구체화 및 과제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개발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6,000만원(77.3%) 증액된 2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1,500	1,500	2,660	1,160	7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과제 2개의 연간 과제 단가를 9억 6,0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연구개발활동비 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음.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AI 대응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 15억원 - 신규과제 2개 × 9억 6,000만원 × 9/12개월 = 14억 4,000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6,000만원	○ AI 대응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 26억 6,000만원 - 계속과제 2개 × 12억 8,000만원 × 12/12개월 = 25억 6,000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1억원

14) 일반회계-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1033-305)(개인정보정책국)

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개년에 걸친 연구개발과제의 2차년도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차년도 사업 예산 대비 연간 과제 단가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증액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여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R&D 전문기관)은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면서,[15] ① 생성형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보호수준 진단 기술 개발 및 ② 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하여 각각 2025년 7억 2,000만원, 2026년 9억 6,000만원, 2027년 9억 6,000만원씩 총 26억 4,000만원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음.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공고서 상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순번	과제명	총 수행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공모 방식	연구 단계	주관 연구개발 기관	보안 과제 여부
				2025	2026	2027	총액				
AI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개발	1	생성형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보호 수준 진단 기술 개발	3년	720	(960)	(960)	(2,640)	지정 공모	응용 (3~6)	제한 없음	×
	2	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 과제	3년	720	(960)	(960)	(2,640)	지정 공모	응용 (4~7)	제한 없음	×

주 1) 20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5.4.~12.(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5년만 확정이고,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 변경이 가능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서도 당초 공고한 바와 같이 연차별 연구개발비가 2025년 7억 2,000만원, 2026년 9억 6,000만원, 2027년 9억 6,0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음. 이는 중앙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사업에 대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원 하에 추진하는 내용에 동의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의미함.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5-7호,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1.22.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표준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단위: 백만원)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5.4.1.~2027.12.31.(33개월)					
		단계	1		2025.4.1.~2025.12.31.(9개월)					
		단계	2		2026.1.1.~2027.12.31.(24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2,640	79.2	712.8	-	-	2,719.2	712.8	3,432	-
1 단계	1년차 (2025.4.~2025.12.)	720	21.6	194.4	-	-	741.6	194.4	936	-
2 단계	1년차 (2026.1.~2026.12.)	960	28.8	259.2	-	-	988.8	259.2	1,248	-
	2년차 (2027.1.~2027.12.)	960	28.8	259.2	-	-	988.8	259.2	1,248	-

주) 각 과제별 표준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계속과제 2건의 연간 단가를 상향(9억 6,000만원→12억 8,000만원)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2024년 예산요구안 제출시의 연간 단가 대비 적게 편성되어 2026년도 예산안의 과제 단가는 기존 기획단계에서 산정했던 과제 단가 및 연차별 증액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함.[16]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업은 상용화 솔루션 개발 및 민간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여 2차년도의 시제품 개발, 테스트 등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연구인력의 투입 정도, 성과목표 설정, 나아가 개발기술(제품)의 최종 수준을 좌우하게 되므로 2026년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기획한 성과를 낼 수

16) 2025년도 예산요구안 제출 시 연도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소요예산(안)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보호 수준 진단 기술	960 (1,280×3/4분기)	1,480	1,480	3,920
2	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추적 및 삭제 기술	960 (1,280×3/4분기)	1,480	1,480	3,9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을 것이라 주장함.

그러나 2025년 3월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체결 당시 2025년 7억 2,000만원, 2026년 9억 6,000만원, 2027년 9억 6,000만원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는 댓가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의 연구개발과제를 3년간 수행하고 연구개발기간 내에 이에 상응하는 산출물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연구개발기관이 상호 동의하에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임.

즉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서 상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제안요청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 산출물을 연구개발기간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도 당초 제안요청서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구개발기관이 기간 내 연구부정행위 없이 산출물을 제출하는지 여부와 산출물이 당초 제안요청서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연구개발비 잔금 지급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서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협약서 상의 금액(9억 6,000만원) 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협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사항 또는 당초 제안요청서 및 협약서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과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협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과제 단가 인상에 부응하는 추가적인 과업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반영한 전략계획서 재작성 및 재협약 등 철저한 과제 관리가 필요함.

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신규): 개인정보보호 기술표준의 조속한 국제 인증 확보 노력 필요

가. 개 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표준화 기반을 구축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4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	-	1,482	1,482	순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18)] 2023년 1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표준 12개 항목을 도출한 바 있음.[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정보 기술 표준개발 지원(R&D)’ 사업을 통해 4종(블록체인·메타버스·자율주행·인공지능)의 개인정보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을 통해 2종(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기술 표준을 신규 개발하는 한편 표준화 기반을 구축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17) 일반회계-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1033-308)(개인정보정책국)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 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 국제표준 선점 필요성, ② 기업·시장의 수요, ③ 국민생활 및 산업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단계별 보호 강화, 안전한 활용) 12개 핵심표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12개 핵심표준]

중분류	핵심표준	비고
①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구조	-
	②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신원인증 정보관리 방법	2023~2025
② 처리 단계별 보호 강화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PbD 적용	**2025~2027**
	④ 개인정보 파기	-
	⑤ 클라우드(자원공유) 컴퓨팅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
③ 안전한 활용	⑥ 가명정보 처리 지침(가이드라인)	-
	⑦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요구사항	-
	⑧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형식 기술 표준	**2025~2027**
	⑨ 메타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	2023~2025
	⑩ 생체 의료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
	⑪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2023~2025
	⑫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2023~202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 2023.1.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PbD) 관련 표준개발’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주체 권리 및 통제권 보장을 위한 표준개발’ 과제 2건에 대해 각각 9개월분의 연구개발활동비 3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개인정보 표준화 기반 구축 및 표준확산 지원’ 과제 1건에 대해 9개월분의 연구개발활동비 6억 7,500만원을 편성함. 또한 3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로 5,700만원을 편성함.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 세부과제]

	연구과제	기대효과	수요처	2026년 예산안
1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PbD 관련 표준개발	- 로봇청소기, 가정용 CCTV 등 기기·서비스별 PbD(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관련 표준개발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자율로봇, 가정용 CCTV 등 소비자 밀접형 기기 및 서비스 제공 기업	3억 7,500만원 (5억원 ×9/12개월)
2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주체 권리 및 통제권 보장을 위한 표준개발	- 정보주체 권리 보장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금융·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의료·공공 분야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관	3억 7,500만원 (5억원 ×9/12개월)
3	개인정보 표준화 기반 구축 및 표준확산 지원	- PET 포럼을 통한 기술 연구 및 표준화 활동 연계 강화 - 국내외 개인정보 표준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로 산업경제적 효과 달성	개인정보 분야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기관, 개인정보 기술 개발 기업 등	6억 7,500만원 (9억원 ×9/12개월)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종전의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표준의 국제표준 등재 및 기존 로드맵과의 연속성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국내 기업에 개인정보 표준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등재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주요국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는 신규 표준 개발 및 채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20]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표준에 대한 신규 소위원회가 신설되는 상황에서[21]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개인정보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2025년까지 3년 간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을 통해 ①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표준, ②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표준, ③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실시간 개인정보보호 표준, ④ AI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개발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과제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개발 중에 있음.[22]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을 통한 소비자 권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주체 권리 및 통제권 보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그치지

---

20) 미국은 2025년 4월 「대량의 미국인 개인민감정보 및 미국연방정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특정국가들의 접근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고, 유럽은 2026년부터 AI 시스템에 대한 차등 규제, 생성형 AI 및 기반 모델에 대한 규정 강화, 기업의 AI 개발 투명성 및 책임 강화하는 내용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를 적용할 계획임. 참고로, 우리나라도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음.

21) ISO/IEC JTC1에서는 기존 SC27(정보보호), SC37(생체인식) 분야만 소위원회가 존재했으나, 2025년부터 SC44(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및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in the field of privacy by design)가 신설되었음.

22) 2024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TC307) 총회에서는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신원인증 정보관리 방법(Privacy protection when involving trust anchors in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개발 중이고, 또한 2025년 7월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합동기술위원회(JTC1)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소위원회(SC27)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유저 아바타와 시스템 아바타 상호작용의 개인정보 보호(Privacy protection of user avatar and system avatar interactions in the metaverse)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개발 중임.

않고, 해당 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과제가 단순히 PET(개인정보강화기술) 포럼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를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의 국제표준화 성공률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1월에 수립·공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과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기술발전 및 개인정보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조기 개정할 계획임.

종전의 기술표준화 로드맵(2023~2027)의 12개 핵심표준 중 나머지 6개 표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드맵의 개정 시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표준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